

목 차

1. 서면질문·답변서	484
【 제1차 본회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92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94
【 제2차 본회의 】	
4. 군정에관한질문(질문요지서)	496
【 제3차 본회의 】	
5. 군정에관한질문(질문요지서)	502
【 제4차 본회의 】	
6. 정부의소규모교육청 통·폐합철회촉구건의안	508
7. 19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14
8.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528
9.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47
10.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53
11.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58
12.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62
13.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565
14.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75
15.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83
1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98
17.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606
18. '96 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및 결과·처리계획	609

서면질문 · 답변서

질문	우 강 호 의 원	답 변	평 장 군 수(건설과장)
회의			
<p data-bbox="193 466 413 515">< 질문요지 ></p> <p data-bbox="221 574 1211 662">1. 진부면 마평2리 세월교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data-bbox="263 687 1229 776">가. 당초예산 편성경위와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변경 요구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p> <p data-bbox="263 801 1229 889">나. 당초계획 수립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책정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 ?</p> <p data-bbox="263 915 791 944">다. 전 각항과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p> <p data-bbox="333 976 1071 1005">1) '96 당초예산 요구시 설계도면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p> <p data-bbox="333 1030 1239 1119">2) '96. 제1회 추경예산 요구시 변경된 설계도면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관계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답 변)

진부면 마평2리 세월교는 '95. 10. 24 지역주민 전영록외 13인으로부터 진부면장을 경유하여 세월교가설을 하여줄 것을 희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기 현지확인 결과

본지역은 나전과 진부를 연결하는 지방도와 오대천이 마을 중앙을 지나면서 오대천과 지방도를 중심으로 부락이 양쪽으로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 하천 양편에 있는 주민들은 80년도 초반에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마평교만으로 농산물 출하 및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은 하천양편에 농경지가 서로 있음에도 현교량으로부터 2 km이상 떨어져 있어 영농은 물론 주민생활 및 학생들 통학에 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세월교가설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되어 공사비를 추정한 바 150,000 천원이 소요되나

'95. 10. 24 이면 '96 당초예산(안) 마무리 시기임으로 재원이 여의치 않아 주민들이 건의 요구하였던 60,000 천원을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95. 12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고 그후 사업발주과정에서 현지측량 및 설계결과 130,000 천원이 소요되게 됨에 따라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70,000 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시에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부서로부터 인력부족등으로 인하여 사전 설계치 못하고 평균소요사업비를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의 경우 현지여건등의 사유로 측량 및 설계시 사업비의 변경이 따를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하다} 요구하신 설계도서 등 참고자료를 불임과 같이 첨부하여 ~~답변을~~ ^{제출합니다} 마치고드립니다.

진 부 면

232-940 강원 평창 진부 하진부리 251-1/전화(0374)35-7004. 7301/(행)전송607/담당:최종수

문서번호 진부 16000 - 3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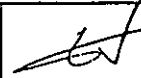


시행일자 1995. 10. 24

(경 유)

발음 평 창 군 수

참조 기 획 실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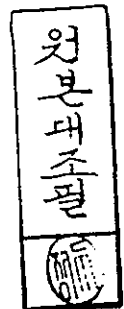
건 설 과 장

선결	과장		지	마평2리 주민숙원사업	
시	일자	1995. 10. 24	결		
수	번호	P625	재	계장	
처	리	건설과	공		
담	당		람		

제목 마평2리 주민숙원사업 건의서 전달

95. 10. 23일 마평2리 주민들로부터 주민숙원사업건의서가 접수되었기에 전달하오니 선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평2리 주민숙원사업 건의서 1부 끝.



진 부 면



마평2리주민숙원사업건의서

면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면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평2리 주민숙원사업인 교량가설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주민불편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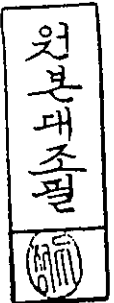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다음과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되어 영농 및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어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X. **최인섭** 이장

면장	부면장
380	

1. 당초 정선,진부간 국도개설시 마평2리 본동 마을가운데로 도로를 개설토록
 요구하였으나, 현행대로 도로를 개설하여 겨울이면 얼음빙판으로 변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필요로 하며,
2.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영농시 2km 이상 우회하여 경작하게 되는 불편으로
 교량가설시 농업 노동력절감 및 시간절약등의 효과를 보게 되며,
3.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효과도 아울러 보게 됩니다.
4. 사업내용은 세월교 100m 약 6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해결되리라 예상됩니다.
5. 농촌의 농업노동력고령화등을 감안하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어 빠른시일내 해결되도록하여주시면 더욱정진하여
 우리농촌지키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1996

건 명 : 마평 세월교 가설공사

공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노우비		재료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마평리 세월교 가설공사											
토공		1	식	11,031,993	8,468,467	8,468,467	687,146	687,146	1,876,380	1,876,380	
교량공		1	식	48,039,630	38,790,289	38,790,289	9,240,707	9,240,707	8,634	8,634	
부대공사		1	식	7,045,030	4,116,934	4,116,934	2,111,698	2,111,698	816,398	816,398	
관급자재대		1	식	26,391,893			26,391,893	26,391,893			
순공사비		1	식	66,116,653		51,375,690		12,039,551		2,701,412	
간접노우비(직노의)	14.0 %	1	식	576,370						576,370	
안전관리비	2.48 %	1	식	2,227,216						2,227,216	
기타경비	5.10 %	1	식	3,263,572						3,263,572	
소계		1	식	72,183,811						72,183,811	
일반관리비	순공사비의 6 %	1	식	4,331,028						4,331,028	
신재보합료(직, 간노우비)	2.80 %	1	식	1,454,857						1,454,857	
이윤(순공사비-재료비+일권)	15.00%	1	식	9,670,504						9,670,5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74
----------	----

발의년월일 : 1996년 5 월

발 의 자 : 김 두 경 의원

의 6 인

□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기간은 199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중 5일간으로 한다.

□ 제안이유

1.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편성의 합법성·적합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건전 재정운영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심 사 계 획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목적
 - . 심도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
 - . 신속한 의사 진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
3. 활동기간

1996년 5월 27일 ~ 1996년 6월 10일중 (5일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 7인이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고
'96.5.27	제1차예결특위	. 위원장, 간사선임	
'96.5.31	제2차예결특위	.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개요설명, 검토보고, 소관별심사)	
'96.6.1	제3차예결특위	.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계속)	
'96.6.3	제4차예결특위	.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계수조정)	
'96.6.10	제5차예결특위	" (심사보고서 채택)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76
----------	----

발의년월일 : 1996년 5월 일

발 의 자 : 우강호의원 외 6인

(주 문)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대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위해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 한다.

가. 출석요구일자 : 1996년 6월4일과 6월7일 (2일간)

나. 출 석 대 상 : 평창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사업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제안이유)

-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회의 대집행부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함임.

출 석 요 구 서

출 석 일 시	출 석 대 상 공 무 원	출 석 이 유
'96. 6. 4. (화) 10:00	○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환경 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축산 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14명)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96. 6. 7. (금) 10:00	○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 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 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사업 과장, 농촌지도소장 (19명)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이 경 진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 대상자	평 창 군 수	소요시간	20 분
1. '95. 11. 16일 본 의원 군정질문 및 '95행정사무감사 내용중 미이행 사항에			
대해 계속 사업 추진과정, 문제점과 이유,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			
(해당 실적소별 답변)			
2. 평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 계획은?			
3. 삼방산(중부)개발 추진내용과 군청진입도로에서 지도소 위치까지의 중부교 신설			
계획은?			
4. 군수공약사항중 노인복지 문제 경로당 특별 관리 계획 및 경로당 숫자 늘리기			
대책은 무엇인지?			
5. 경영소득사업으로 (마지)지구 골재채취 계획은 있는지?			
6. 평창, 미탄, 방림, 대화등 교통사각지는 산업과에서 특별한 관심으로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개발여건이 활발해서 자력개발이 가능한 북부지역에			
비해 투자가 부족한데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아울러 담당읍면을 맡은			
실과장들은 이장회의등에 참석해서 군정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7. 보광 관련 우기를 맞이해서 토사유출(골프장)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8. 용평리조트 불법농지전용 처리에 대하여			
9. 주진~방림간 군도 3호선 개설관련 조기 착공의지는?			

질문요지서

성명	유돈문	소속	평창군의회
질문 대상자	평창군수	소요시간	20분
1.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가. 천연기념물(260호)수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 폐광지역 개발특별법안 지정에 관하여			
가. 미탄면이 폐광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나. 개발특별법안에 포함 되도록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실천의지는?			
다. '95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시 미탄면이 '97년부터 폐광지역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답변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변함이 없는지?			
3. 영·평·정 행정협의회 발족과 관련하여			
가. 도로망 확충사업에 있어 미탄면이 본군 계획에 빠져있고 정선군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인지?(3.22 영·평·정 행정협의회)			
4. 42번 국도 확포장 관련 편입토지 보상에 관하여			
가.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의 미보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미동기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5. 미탄면 송어양식장 관련하여			
가. 오·폐수 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대책은 무엇인지?			
6. 미탄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정에 관하여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이 수 현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 대상자	평 창 군 수	소요시간	20 분
1. 취임후 밝혔던 군정목표 5가지에 관하여			
가. 취임초기의 의욕적인 자세는 상실된것이 아닌가?			
나. 군수와 집행부의 전 직원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일사분란한 군정을 펼칠 수 있는 대책은?			
다. 남은 임기동안 군수의 소신있는 군정운영 방향은?			
2. 31번 국도 4차선 확장계획에 관하여			
가.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책은 무엇인지?			
3. 군도 4호선의 2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가. 평창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투자순위를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나. 준비만으로 부담스럽다면 지방도로 승격시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4. 평창군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가. 경로당은 인근 정선, 영월군과 비교하여 회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소수와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96년도 및 향후 신축계획은?, 아울러 경로			
당 운영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어린이집, 복지회관별)			

5.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관하여
가. 사업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영농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6. 대화면 상안미 3리 미날교의 공사계획은?
7. 대화면 신2리 대화산업개발의 규석광산을 재허가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가. '95년도 부터 허가용도외에 골재로 반출 및 판매되어 온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었다면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도로포장, 주식회사 보광, 심지어는 레미콘 회사에 까지 골재로 반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책임 한계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 규석의 골재반출에 따른 지방세 징수계획과 산림법 위반에 따른 재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라. 향후 원상복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8.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하여
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활용계획은?
나. 평창장학회 정관의 자격 개정을 통한 공무원 충원 연계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다. 우수대학과의 자매결연등을 통한 다각적 특채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9. 공동급수시설 개선에 관하여
가. 지표수의 음용수 활용에서 지하 생수로 개선,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은 없는지?
나. 평창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조정할 용의는?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 두 경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 대상자	평 창 군 수	소요시간	20 분
1. 건축물 대장 정비에 관하여			
가. 건축물 대장상에 무번지 및 번지 오류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는바 이에 대한 일제조사 재정비 대책은?			
2. 측량신청 절차의 개선에 관하여			
가. 측량신청 절차 간소화 및 주민편의 위주의 측량민원 해결 방안은?			
3. 봉평문화마을 육성 발전에 대한 군정시책에 관하여			
가. 향후 육성 방안 및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은?			
나. 문화마을 환경 보존에 따른 군조례 개정은?			
4. 봉평면 도읍정비 사업에 관하여			
가. 사업 추진 촉구 및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 미철거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우 강 호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 대상자	평 창 군 수	소요시간	20 분
1. 평창군수(김용욱)의 군정수행에 관하여			
가. 민선군수로서의 1년여 가까운 재임 기간동안 군정수행 성과는 무엇이며			
아울러 선거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 결과는 무엇인지 실행 할것과 못 할것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이행치 못할 공약 사항에 대하여 잔여 임기중 공약의			
타당성과 실천 의지는 무엇인지?			
나.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대부분의 시군이 직제 개편안을 마련 주민편의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직제개편에 관한 군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다. 평창군 인사관계(승진,전보) 및 직위해제에 관해서 밝혀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라. 평창군 장학회 기금 5억원을 지금까지 군 농협에 예치 관리해 오다가 최근			
평창축협으로 이전 예치하게된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인지?			
마. 평창군 전체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행정편의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안을 개정할 의지는?			

2. 공무원의 승진, 전보, 처벌등에 관한 인사상별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축산과장(정의수) 직위해제 문제로 인한 인사위원장의 견해는?
3. 진부광역상수도 부도업체【(주)명일】관리감독 및 부분 준공이 늦어진데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4. '96년도 제1회추경(안)에 계상된 내용중 주택건설과 주택관리에 3,500만원의
보수비 책정 당위성은 무엇인지?
5. 진부시가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진척을 및 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6.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7. 솔잎혹파리 방제 및 임도시설 피해복구에 관하여
가. 도로변 수간주사 실시로 인한 예산낭비 및 사후대책은?
나. 현재까지 임도시설 피해복구 추진사업 미진 및 우기시 이에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8.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축산물 등급판정 기반시설이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9. 상수원 절대보호구역의 상수원에 수질오염 심각업소 및 건축물등에 대한 오수 정화시설 및 폐기물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10. 용평리조트 불법농지전용 및 대체농지 조성비등 적법성 여부는 무엇이며, 이에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11. 비료, 계분, 농약등 불법유통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산업폐기물등이 섞인 계분 및 돈분 유입에 대한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12.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자, 중증 장애인등 중점 관리 대상인들에 대한 전세금 및 자립금 용자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13. 비지정 관광지 부분 지정일수 변경에 관하여 외지인 산나물 마구 채취로 인한 주민소득 저해요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산불조심 기간인 5월1일 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14. 진부면 마평1리 청심대의 지방문화재 지정 의지는?
15. 물품구매시 조달물가 금액과 현지구입물가 금액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현지 물품을 구입 할 용의는 없는지?
16. 공사업체중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시 제외규정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업체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17. 국유림내 광산 허가시 지역경제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는지?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 종 영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 대상자	평 창 군 수	소요시간	20 분
1. 6. 27 지방선거로 인하여 완전지방자치 실시이후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민원발생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2. 솔잎혹파리 산림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와 대책은 무엇인지?			
3. 황계5리 국제트렌스 산림복구 지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4. 식용 생감자 수입에 대한 대처방안과 향후 대책은 ?			
5. 도암면 청사 신축공사 관련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사후 방지 방안은?			
6. 고기 소값 하락과 기타 물가 인상에 대한 안정대책은?			
7. 황계 시가지 생활 오수가 하천유입에 따른 군의 조치와 향후 계획은?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 철회 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80
----------	----

발의년월일 : 1996년 6월

발 의 자 : 이수현 의원

외 3인

1. 주 문

작은 정부를 통한 국가재정의 절약과 국가기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정서와 전통,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알량한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근시안적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대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장학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교육 행정은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이므로, 최일선 교육행정기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하며,

교통이 불편한 산간 벽지나 오지 등에 산재해 있는 학교는 학생이나 학교수에 관계없이 인접지역에 교육청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장학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음에도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인적·물적 기준만으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한다는 발상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둘째,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원인이 된다.

통합교육청의 위치선정 문제로 지역간 갈등과 혼란이 전국적인 문제로 심화 될 것이며, 자녀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도시로의 이농 현상이 더욱 확산되어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위배된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군단위의 교육청은 크고 작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실천 할 수 있어야 하며, 통·폐합에서 오는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이원적 조직의 교육청 운영은 지방 자치의 근본이념은 물론 세계화로의 추구에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러한 제반 문제를 고려치 않고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지역이기주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소규모 지역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퇴보시키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바라는 열화와 같은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 제안이유

최근 정부에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여 절약한 예산을 도시지역의 교육청 확충에 충당하겠다는 탁상공론식의 방침을 정한것은 교육의 장래에 대해 한치앞도 못내다 보는 근시안적인 계획으로써,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현들은 수천번에 걸친 외적의 침략하에서도 결코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제 36년 치하에서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굴하지 않은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로 서게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의 문제를 충분한 민의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소규모교육청을 통·폐합하려는 행위는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 무시한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 하려는 것임.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

작은 정부를 통한 국가재정의 절약과 국가기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정서와 전통,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알량한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근시안적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대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장학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교육 행정은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이므로, 최일선 교육행정기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하며,

교통이 불편한 산간 벽지나 오지 등에 산재해 있는 학교는 학생이나 학교수에 관계없이 인접지역에 교육청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장학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음에도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인적·물적 기준만으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한다는 발상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둘째,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원인이 된다.

통합교육청의 위치선정 문제로 지역간 갈등과 혼란이 전국적인 문제로 심화될 것이며, 자녀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도시로의 이농 현상이 더욱 확산되어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위배된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군단위의 교육청은 크고 작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실천 할 수 있어야 하며, 통·폐합에서 오는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이원적 조직의 교육청 운영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물론 세계화로의 추구에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러한 제반 문제를 고려치 않고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지역이기주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소규모 지역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퇴보시키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바라는 열화와 같은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1996년 6월 10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19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서

19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 합니다.

○ 회계명 : 일반회계

< 취득 및 처분 >

(단위:m',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2	12,631	703,200	
	토 지	1	12,109	3,200	교환취득
	건 물	1	522	700,000	
처 분	계	1	8,132	2,500	
	토 지	1	8,132	2,500	교환처분

붙임 : 1. 총괄표(7-1) 1부.

2. 1996년도 취득 및 처분재산목록 각 1부. 끝.

'96.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77
----------	----

제출년월일 : '9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등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원도로 부터 시달 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을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함.

2. 주요골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입안한 '96.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의 내역은 취득 1건, 교환취득 1건, 교환처분 1건 등 총 3건으로 취득재산 1건은 평창군의회 청사 증축 522㎡이며, 교환취득 1건은 군유림집단화를 위하여 사유림 취득 3필지 12,109㎡와 교환처분 1건은 사유림 취득에 대한 교환처분 1필지 8,132㎡ 임.

3. 관계법규 및 지침

-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등법시행령 제84조
- 나. 평창군공유재산조례 제37조 및 등시행규칙 제29조
- 다. 1996 공유재산 관리 작성기준

총괄표 (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 천원)

구분			합계			'96. 당초			'96. 1차 변경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계	토지	2	28,016	272,293	1	15,907	269,093	1	12,109	3,200
		건물	3	4,887	2,322,235	2	4,365	1,622,235	1	522	700,000
		기타									
득	1) 매입	토지	1	15,907	269,093	1	15,907	269,093			
		건물	3	4,887	2,322,235	2	4,365	1,622,235	1	522	700,000
		기타									
취	2) 교환	토지	1	12,109	3,200				1	12,109	3,200
		건물									
		기타									
취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	계	토지	1	8,132	2,500				1	8,132	2,500
		건물									
		기타									
분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 교환	토지	1	8,132	2,500				1	8,132	2,500
		건물									
		기타									
대부	토건기	지물타									

'96.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 부표

1. 관계법규 (초) _____ 1
2. '96. 1회 추경 예산안 _____ 2 ~ 3
3. 취득재산별 위치도 _____ 4 ~ 7

1. 관계법규 (초)

○ 지방자치법

第35條 (地方議会の議決事項) ①地方議회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6. 重要財産의 취득·處分
7. 公共施設의 設置·管理 및 處分

○ 지방재정법

(법)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의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管理 및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地方議회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경)

제81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대대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1996년도 (1회추경)

의결일 : 1996. 6.

평의회 : 제 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부 :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농 공 지 구 조 성 및 관 리 사 업 특 별 회 계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주 차 장 설 치 및 관 리 특 별 회 계

평 창 군

항: (1000) 일반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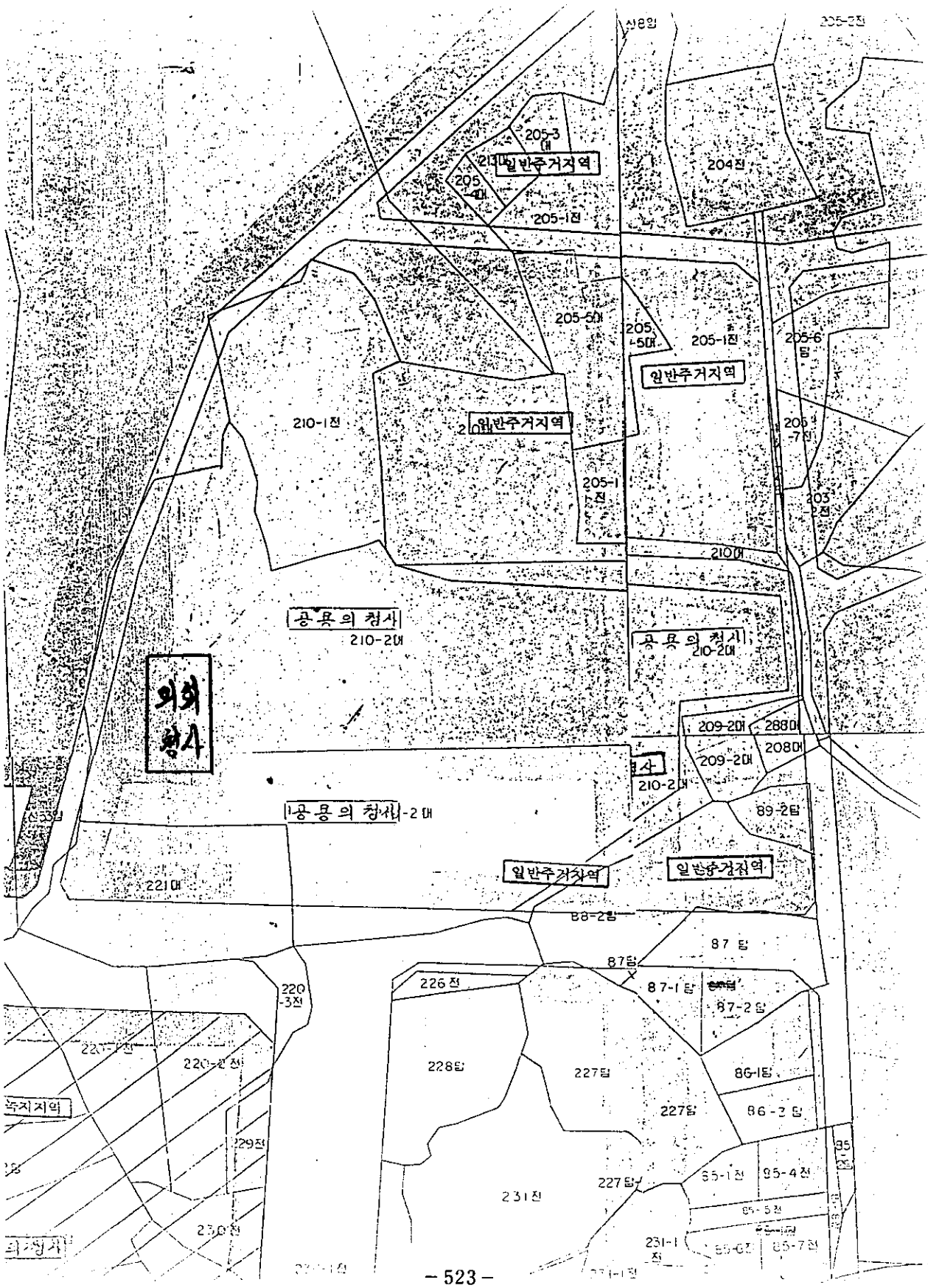
관: (1100) 입법및선거관계

항: (1120) 지방의회운영

세항: (1121) 의시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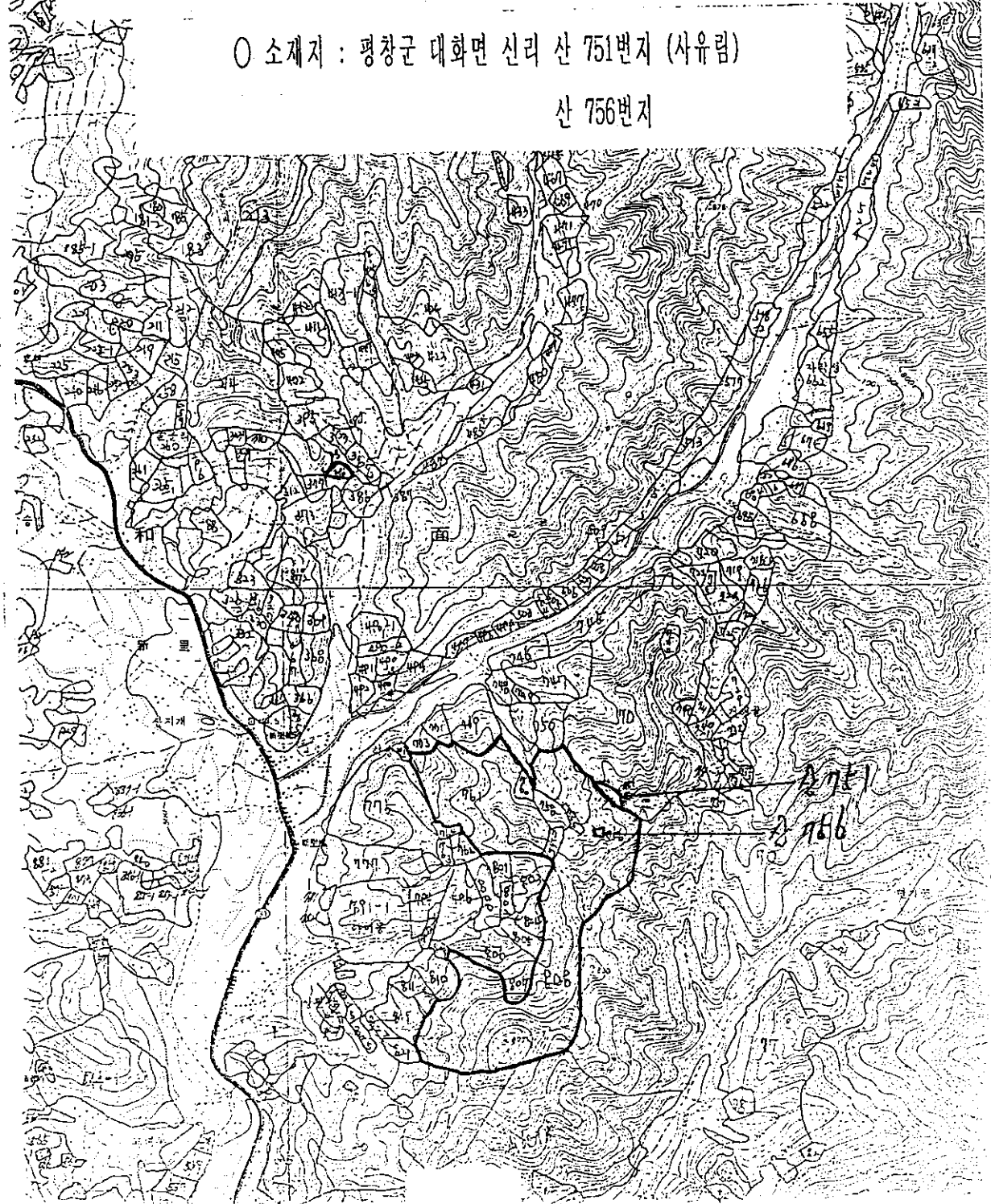
세세항: (200) 시원에산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정,관,항,세항,세세항	목				
	401 시설비등	753,800	54,016	699,784	
		0	576	△576	01 기본조사설계비 ○ 의회청사 방수공사 = △576
		25,300	1,454	23,846	02 실시설계비 ○ 의회청사 증축공사 정정(25,300,000원)-기정(1,454,000원) = 23,846
		706,500	51,500	655,000	04 시설비 ○ 의회청사증축 정정(700,000,000원)-기정(45,000,000원) = 655,000
		1,000	486	514	05 시설부대비 ○ 의회청사증축공사 정정(1,000,000원)-기정(486,000원) = 514
		21,000	0	21,000	06 감리비 ○ 의회청사증축공사 = 21,000
	1122 의정활동	153,200	128,000	25,200	
	100 정상예산	153,200	128,000	25,200	
	120 기준경비	153,200	128,000	25,200	
	206 의회비	153,200	128,000	25,200	



공, 사유림 교환 신청지 위치도 (사유림)

○ 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 751번지 (사유림)
산 75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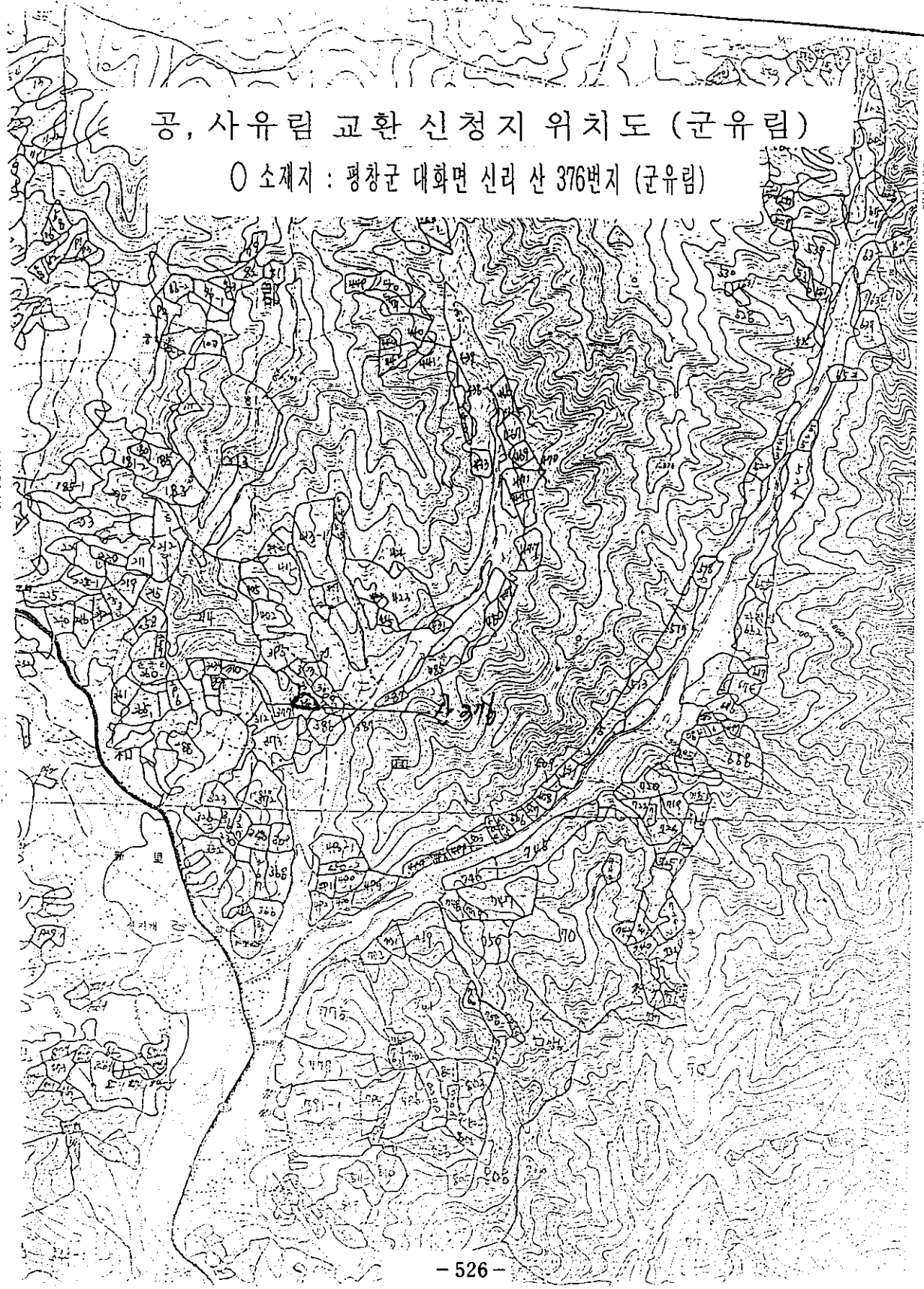
공, 사유림 교환 신청지 위치도 (사유림)

○ 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 278번지 (사유림)



공, 사유림 교환 신청지 위치도 (군유림)

○ 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 376번지 (군유림)



'96지방채발행계획동의서

회계별 : 상수도특별회계

○ 사업명 : 진부상수도시설확장사업

○ 기채규모 : 금일십억원(₩1,000,000,000)

○ 기채선 : 강원도지역개발기금

○ 기채종류 : 증서차입

○ 발행시기 : '96. 6월이후

○ 이 율 : 년리 7%

○ 상환기간 :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상환재원 : 군비

'9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65
----------	----

제안년월일 : 1996. 5.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사유

급수구역내 개발에따른 물 수요충족 및 농촌지역의 급수량 증대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진부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소요될 부족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동의 요구함.

2. 주요골자

지방채 차입계획

<특별회계>

- 사업명 : 진부상수도시설확장사업
- 기채 규모 : 일십억원 (₩1,000,000,000)
- 기채 선 : 강원도지역개발기금
- 기채 종류 : 증서차입
- 발행 시기 : '96. 5
- 이 율 : 7%
- 상환 기간 :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상환 자원 : 군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5조(지방채무및채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부상수도시설확장사업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급수구역내 개발에따른 물 수요충족 및 맑은물 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진부면 일원 (상진부, 하진부, 송정리)
- 총사업량 : Q = 9,500톤/일 ('96계획량 : 침전지, 여과지 1지)
- 총사업비 : 7,230백만원 ('96투자액 : 1,500백만원)
- 총사업기간 : '95 ~ '97. 12

□ 사업추진 계획

- 추진현황 ('95까지)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주 요 공 사	사 업 비
계	○ 취수시설 9,500T/D, ○ 정수시설 4,800T/D	2,500
토목. 건축	○ 취수시설 집수매거, 접합정, 취수펌프장 ○ 도수관로 400m/m 강관 762m ○ 정수시설 여과지 2지(4,800T/D) ○ 송수시설 펌프실 1동 ○ 부대시설 경비실, 염소투입실 각1동	2,346
전기시설	○ 취.정수장 전기시설 1식	87
용지보상	○ 취.정수장 부지매입 40,393㎡	67

- '96 추진계획

- . 침 전 지 1 지
- . 여 과 지 1 지

- 지방채 상환재원 : 군 비

□ 년도별 투자 및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 자		'96 계 획		'97 이 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30		2,500		1,500		3,230	
국 비	9,500 T/D	3,000	취.정 수시설 1 식	2,500	침전. 여과지 각 1지		정.배 수시설 1 식	500	*지역 개발기 금 : 1,000
군 비		1,230				500		730	
지방채		3,000				1,000		2,000	

□ 년도별 공종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 자		'96 계 획		'97 이 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30		2,500		1,500		3,230	
공사비	9,500 T/D	7,163	취.정 수시설 1 식	2,433	침전. 여과지 각 1지	1,500	정.배 수시설 1 식	3,230	
보상비	용지보 상 : 40,393 ㎡	67	용지보 상 : 40,393 ㎡	67					

□ 사업효과

- 물 수요충족 및 맑은물 공급으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 주민 보건위생 기여

강 원 도

우 200 - 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산 15번지 / 전화(0361) 57~5054 / 담당자 배 만 길

문서번호 예산 13320 ~ 578
 시행일자 95. 11. 7 (3년)
 받 음 : 받는곳참조
 참 조 : 기획담당관, 기획(감사)실장

선결	배우	신용우	지		
접	일자		시		
	시간		결		배우 박상만
수	번호	11434	재		김영진
처	리	과	공		배우
담	당	자	람		

제 목 : '96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1. 귀 시군및 실과에서 신청한 '96지방채 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채발행과 '96.예산에 편성하고 자금의 차입과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앞으로 지방채 사업에 적정한 추진과 자금관리의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시 현지점검할 계획이오니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96지방채 발행계획 집행지침 1부
 2) '96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명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받는곳: 거(29), 더(1~8, 10~12, 14) 11434

'96 地方債 發行計劃 執行指針

I '96 豫算編成

- '96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내용을 반영

II '96年度中 地方債 管理

- 모든 지방채사업은 집행결정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상환능력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집행토록하고, 자금조달 계획등을 정밀분석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
- 중앙부처 관리자금중 '96년도 자치단체별 세부집행계획이 미확정된 자금의 지방채발행은 관계부처의 확정통지에 따라 추가발행 승인을 얻은후 발행
- 연도중 추가신청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97년도 정기계획에 반영 추진
- 지방채발행 차입자금은 목적이외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당해 사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투자적 지방채사업에 대하여는 상환조건에 불구하고 수입금으로 조기 상환토록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등 채무액의 증가액의 증가억제로 건전재정 유지

지방채발행승인명세

작업일자 5/10/30

(단위: 백만원) Page =

단체명

명	기채규모	기 채 선	자 금 중 류	발행방법	이 율 (%)	상환기간 (거치)	상	사항
		이자지급방법	상 환 재 원	채권형식	발행시기	수수료 (%)	참고사항	(신규구
상	(1 건)	4,000						
특별	(1 건)	4,000						
신부상수	설 확장공사	1,000	강원도 년지급	지역개발기금 실수요자부담	중서차입 196/05/ ~ 7.00 %	12 (2)	균등상환	(계

1996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審 查 報 告 書

1996年 6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6년 5월 16일 (평창군수)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5월 27일
- 다. 상 정 일 자 :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6. 5. 31 상정)
 -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6. 6. 3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가. 제안이유

- '95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내시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996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요구액은 총 194억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9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9,600만원임.

· 세입예산중

- 일반회계는 지방세 5억 2,600만원, 세외수입 94억6,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5억6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8,800만원, 보조금 18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사업외수입 24억2,400만원, 보조금 6,500만원, 지방채 10억원 증액 되었음.

· 세출예산중

- 일반회계 편성은 인건비 2억 5,100만원, 물건비 7억7,900만원, 이전경비 6억4,700만원, 자본지출133억9,4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8억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7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물건비 3,300만원, 이전경비 6,100만원, 자본지출 31억5,200만원, 보전재원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고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당초대비 23.5%의 급격한 신장율을 나타내게 된 원인은 '95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다액발생, 부담금의 증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한 증가가 주요인임.

가. 일반회계

1) 세 입

- 주요증가요인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 불용액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44억 8,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 (주) 보광과 태아개발의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증가로 인하여 징수교부금 10억6,8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부담금으로는 봉평쓰레기매립장 23억원과 보광진입로 지방도 이설에 따른 7억원등 총30억2,200만원이 (주)보광의 부담금으로 계상이 되었음.
-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편성당시 미확정 되었다가 '95년도말에 확정내시되어 군도의 4개부문에 총36억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보다 76%가 증가 하였음.
-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 9%증가한 18억1,20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음.

2) 세 출

- 경비별 세출예산에서 투자사업비가 145억7,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32.6%가 신장되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됨.
- 보조사업중 감자원종장 진입로 사업에 15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96당초예산에서 6,500만원만 부담되고, 14억3,500만원이 미부담되고 있으며, 추후 재원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공설묘지조성사업이 총30억1,600만원이고, '96년부액으로 '96 제1회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계속비는 그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이 미리 정해지게 되는 특성상 예정 재원 확보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추후 재원(국·도비 포함)확보대책의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업임.
- 대규모 현안사업중 연차별로 계속 투자가 되는 사업은 도암면 청사신축등 5개사업에 총 95억3,100만원으로, 이중 33억1,8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96년도 제1회 추경에 13억6,5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으나, 향후 사업마무리에 소요되는 48억 4,800만원이 미확보되어 지방재정운영의 압박 요인으로 예상되고 있는등 계속되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 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나.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총7개사업에 34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 관련 사업이 대부분임.

1) 상수도특별회계

- 총 32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1%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봉평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주) 보광 부담금 10억, 진부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지방채 10억원, 간이상수도신설 및 보수에 6억500만원, 평창 상수도취수원 이전 공사에 4억2,000만원, 누수 지점 긴급수리에 5,000만원등이 증가하게 된 요인임.

다. 이상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 일부사업은 당초사업 추진결과 하자발생으로 준비가 일부 부담되고 있으며, '96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착공전에 사업 물량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준비가 추가로 투자되는 등의 사항은 사업의 추진시 또는 예산편성당시 보다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들임.
- 또한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심의 결과 삭감 처리된 항목들을 특별한 여건변동 없이 추경에 다시 계상 요구 한것은 의회의 의결기능에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 추경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현안사업등에 모든 가용재원이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하나, 중기지방채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무계획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들은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 판단 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는 양면성이 있고 예금의 규모로 보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 임용후보자 장학제도가 7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후 85년도에 평창군 규칙에 명시된 후 지금까지 운영이 안된 사유는? ○ 주민복지 관련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시 군비가 투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지역주민들에게는 타 단체 주관 사업으로 오인되는 경향에 대한 대책은? ○ '96년도 컴퓨터 구입수량에 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의 경우 가입즉시 자금의 전부가 중앙으로 송금이 되고, 정기예금의 경우는 전부 지역경제에 환원이 되고 있어 지역경기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이율에서 CD가 2.5%의 실차익이 발생하므로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CD로 예금을 하였으나 현재는 실차익이 1% 내외이므로 이율의 변동추이를 검토하여 기간 만료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임. ○ 지금까지 기술직 관련 특정분야의 경우도 공채를 통하여 정원을 확보해 왔으나 현 실정은 낮은보수,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극심하여 결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시행을 하려는 것임. ○ 각종 행사시 지역적인 여건상 타 단체의 회의실등 시설물을 이용하는데서 오도가 발생하는바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조달수수료는 국가 차관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하자 발생시에도 조달청에서 책임을 지고 구입기관은 문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추진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부지매입(잔여분)으로 1억6,000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는데 경찰청과 평창군과 대지 교환문제는 정립이 되었는가? ○ 마평2리 세월교가설공사는 당초예산에 6,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 돌배나무 식재 장소와 묘목의 확보 방법은 ? ○ 규석광산에서 생산되는 폐석을 골재로 무단 반출을 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측에서 조속히 교환하자고 종용을 하고 있으나 잔여분을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을 마치고 부지 전체를 평창군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후에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7년중순경 교환을 추진할 계획임. ○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세월교를 가설하는 계획으로 6,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던 것을 현지 실정에 맞게 완벽한 시공을 기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임. ○ 군청 진입로와 중부교에서 보건의료원 구간에 식재할 계획이며 묘목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자생하는 10년생 묘목을 캐어올 것임. ○ 관련법규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무단 반출된 골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추징세입조치 하겠음.

5. 討論要旨

【 없음 】

6. 審査結果

○ 수정의결(수정내역 불임)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

8. 其他 必要한事項

【 없음 】

불임 : 1.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1부.

2. 계속비사업조서 1부. 끝.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수 정 의 결 내 역

1. 예산총칙 수정

- 제1조 ~ 제6조 : 변동사항 없음.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2,104천원으로 한다.

2. 회계별 예산 수정의결 내역

가. 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방자치 단체계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합 계	91,310,410	176,540	176,540	91,310,410	
일 반 회 계	83,986,001	126,540	126,540	83,986,001	
특 별 회 계	7,324,409	50,000	50,000	7,324,409	

나. 일반회계세출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 단체계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계			83,986,001	126,540	126,540	83,986,001	
(본 청)			73,691,567	126,540	126,540	73,691,567	
1000 일 반 행 정			15,112,955	24,600	-	15,088,355	
1200 일반행정비			13,811,046	24,600	-	13,786,446	
	1220	공보관리	214,537	9,600	-	204,937	
		1221 공보 관리	214,537	9,600	-	204,937	○ 주민계도용신문구 독 증양지 △ 9,600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1240	내무행정	4,207,835	15,000	-	4,192,835	
		1241 사무 관리	1,926,402	15,000	-	1,911,402	○ 군상정용품제작 △ 15,000
2000	사 회 개 발		22,536,391	25,480	-	22,510,911	
2100	교 육 및 문 화		3,996,117	23,480	-	3,972,637	
	2120	체육진흥관리	1,388,677	23,480	-	1,365,197	
		2121 체육 진흥	1,388,677	23,480	-	1,365,197	○ 도민체육출전비 △ 23,480
2300	사 회 보 장		3,233,648	2,000	-	3,231,648	
	2330	가정복지	1,598,922	2,000	-	1,596,922	
		2332 부녀 복지	38,172	2,000	-	36,172	○ 주부환경파수꾼 활동복제작 △ 2,000
3000	경 제 개 발		34,130,776	76,460	-	34,054,316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18,907,911	76,460	-	18,831,451	
	3310	산림자원개발	5,904,205	6,460	-	5,897,745	
		3311 산림 관리	2,897,782	6,460	-	2,891,322	○ 들배나무식재 △ 6,460
	3320	치수및재해대책	1,662,643	70,000	-	1,592,643	
		3321 하천 관리	727,224	70,000	-	657,224	○ 마평2리 세월교가 설 공사시설비 △ 70,000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 단체재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5000 지원및기타경비			1,708,519	-	126,540	1,835,059	
5400 예비비			875,564	-	126,540	1,002,104	
	5410 예비비		875,564	-	126,540	1,002,104	
		5411 예비비	875,564	-	126,540	1,002,104	○ 예비비 중 126,540

다. 특별회계세출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 단체재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및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계			7,324,409	50,000	50,000	7,324,409	
1000 상수도특별회계			5,205,634	50,000	50,000	5,205,634	
1200 사업비			4,658,180	50,000	-	4,608,180	
	1210 상수도사업		4,658,180	50,000	-	4,608,180	
		1211 상수도 사업	4,658,180	50,000	-	4,608,180	○ 누수지점 긴급수리 △ 50,000
1400 예비비			0	-	50,000	50,000	
	1410 예비비		0	-	50,000	50,000	
		1411 예비비	0	-	50,000	50,000	○ 예비비 중 50,000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 년 도			당해년도 계 획 액	년도별계획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공설묘지조성사업	당초	3,016	438	438	-	500	600	300	405	511	262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73
----------	----

제출년월일 : '96.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19,48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993백만원, 특별회계는 3,496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지방세 526백만원, 세외수입 9,461백만원, 지방교부세 506백만원, 지방양여금 3,688백만원, 보조금 1,81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 3백만원, 사업외수입 2,434백만원, 보조금 65백만원, 지방채 1,000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251백만원, 물건비 775백만원, 이전경비 317백만원, 자본지출 13,728백만원, 내부거래 855백만원, 예비비및기타 6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33백만원, 이전경비 61백만원, 자본지출 3,152백만원, 보전재원 253백만원, 예비비및기타 △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96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 세출 예산

평 창 군

예 산 총 직

1996 년도 [1회추경]

* 제1조 :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총 계	91,310,410	2,739,312
일 반 회 계	83,986,001	2,519,580
특 별 회 계	7,324,409	219,732
상수도특별회계	5,205,634	156,169
주택사업특별회계	720,001	21,6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4,314	19,329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66,679	17,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5,395	1,6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866	1,255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90,520	2,715

-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 제3조 :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 제4조 :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739 백만원으로 한다.
- * 제5조 :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 제6조 :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75,564천원으로한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중 Δ 감
계	91,310,410	71,821,147	19,489,263
일 반 회 계	83,986,001	67,993,329	15,992,672
특 별 회 계	7,324,409	3,827,818	3,496,591
상 수 도	5,205,634	1,993,824	3,211,810
주 택 사 업	720,001	719,438	563
의 료 보 호 기 금	644,314	617,301	27,013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566,679	313,755	252,92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55,395	50,000	5,3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866	40,000	1,866
주 차 장 설 치 및 관 리	90,520	93,500	-2,980
	0	0	0
	0	0	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경제성결별>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예산액	구성 비율 (%)				예산액	구성 비율 (%)		
세	계	91,310,410	100%	71,821,147	100%	19,489,263	83,986,001	100%	67,993,329	100%	15,992,672	7,324,409	100%	3,827,818	100%	3,496,591
입	지방세	8,949,672	10%	8,424,046	12%	525,626	8,949,672	11%	8,424,046	12%	525,626	0	0%	0	0%	0
	세외수입	21,695,163	24%	9,802,644	14%	11,892,519	16,299,566	19%	6,838,119	10%	9,461,447	5,395,597	74%	2,964,525	77%	2,431,072
	경상직세의수입	7,816,725	9%	6,051,848	8%	1,764,877	6,603,343	8%	4,835,771	7%	1,767,572	1,213,382	17%	1,216,077	32%	-2,695
	임시직세의수입	13,878,438	15%	3,750,796	5%	10,127,642	9,696,223	12%	2,002,348	3%	7,693,875	4,182,215	57%	1,748,448	46%	2,433,767
	지방교부세	29,023,000	32%	28,517,000	40%	506,000	29,023,000	35%	28,517,000	42%	506,000	0	0%	0	0%	0
	지방양여금	8,506,514	9%	4,819,000	7%	3,687,514	8,506,514	10%	4,819,000	7%	3,687,514	0	0%	0	0%	0
	보조금	22,136,061	24%	20,258,457	28%	1,877,604	21,207,249	25%	19,395,164	29%	1,812,085	928,812	13%	863,293	23%	65,519
	국교보조금	11,197,408	12%	10,513,264	15%	684,144	10,701,245	13%	9,779,516	14%	921,729	496,163	7%	733,748	19%	-237,585
	도비보조금	10,938,653	12%	9,745,193	14%	1,193,460	10,506,004	13%	9,615,648	14%	890,356	432,649	6%	129,545	3%	303,104
	지방채	1,000,000	1%	0	0%	1,000,000	0	0%	0	0%	0	1,000,000	14%	0	0%	1,000,000
세	계	91,310,410	100%	71,821,147	100%	19,489,263	83,986,001	100%	67,993,329	100%	15,992,672	7,324,409	100%	3,827,818	100%	3,496,591
출	인건비	11,390,673	12%	11,139,686	16%	250,987	11,376,325	14%	11,125,338	16%	250,987	14,348	0%	14,348	0%	0
	물건비	10,299,283	11%	9,492,033	13%	807,250	9,437,763	11%	8,663,372	13%	774,391	861,520	12%	828,661	22%	32,859
	이전경비	6,599,541	7%	6,220,624	9%	378,917	5,859,712	7%	5,542,428	8%	317,284	739,829	10%	678,196	18%	61,633
	자본지출	58,602,947	64%	41,722,508	58%	16,880,439	53,818,851	64%	40,090,628	59%	13,728,223	4,784,096	65%	1,631,880	43%	3,152,216
	융자및출자	571,053	1%	318,129	0%	252,924	0	0%	0	0%	0	571,053	8%	318,129	8%	252,924
	보건지원	833,455	1%	833,455	1%	0	527,051	1%	527,051	1%	0	306,404	4%	306,404	8%	0
출	내부거래	2,024,195	2%	1,169,695	2%	854,500	2,024,195	2%	1,169,695	2%	854,500	0	0%	0	0%	0
	예비비및기타	989,263	1%	925,017	1%	64,246	942,104	1%	874,817	1%	67,287	47,159	1%	50,200	1%	-3,041

평창군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연월일 : 1996.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강원도 포상조례 개정 및 상훈법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평창군포상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포상심의 위원회 조정(안 제9조제2항)

○ 평창군인사위원회 →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나.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지정 (안 제9조제3항)

○ 위 원 수 : 위원장을 포함한 8인

○ 위원지정 :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내무과장,
위원 기획실장·사회·산업·산림·
건설과장, 간사 서무계장

3. 개정근거 법령

강원도포상조례 제12조 및 제13조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평창군인사위원회"를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로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동조 "제3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으로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으로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내무과장, 위원은 기획실장·사회·산업·산림·건설과장, 간사는 서무계장이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p>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포상은 <u>평창군인사위원회</u>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u>인사위원회의</u>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u><신설></u></p> <p>③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제2항 규정의</p>	<p>제9조(포상절차) ①-----</p> <p>-----</p> <p>-----</p> <p>-----</p> <p>-----</p> <p>-----</p> <p>-----</p> <p>②----- <u>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u> -----</p> <p>-----</p> <p>----- <u>공적심사위원회</u> -----</p> <p>-----</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내무과장, 위원은 기획실장·사회·산업·산림·건설과장,간사는 서무계장이 되고,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④-----</p> <p>-----</p> <p>-----</p> <p>-----</p> <p>⑤제4항의 규정 -----</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수상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p>	<p>-----</p> <p>-----</p> <p>⑥ 제5항의 규정-----</p> <p>-----</p> <p>-----</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상훈법시행령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개정 70. 6. 13 >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략)

【 강원도포상조례 】

제12조(포상절차) ①(생략)

②포상은 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
------	----

제출년월일 : 199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조례도 부과·징수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조례 제6조 제1항)이 「내부위임규정」에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되어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명에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담배소비세 제외)"를 신설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 중 제41호 다음에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군세의 부과징수사무(담배소비세 제외)	지방세법 제4조 및 평창군세조례 제6조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위임사무명</u>			[별표] <u>위임사무명</u>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 41.	(생략)		1.~ 41.	(현행과 같음)	
42.	<u><신설></u>		42.	<u>군세의 부과징수 사무(담배소비세 제외)</u>	<u>지방세법 제 4조 및 평창 군세조례 제 6조</u>

“살맛나는강원건설”

강 원 도

우 200-700/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 (0361) 54-2011(교) 2311 / 담당 김태영

문서번호 세정 13400 ~ 165
 시행일자 1996. 3. 15. (3년)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세무·재무과장

서결	과장		지	
접	일자 시각	1996. 3. 15.	시	
수	번호	1080	결	계장
처	리과	재무과	재	
담	당자	김태영	공	
			람	

제 목 시군세개정조례중 추가 정비사항통보

1. 세정 13400-153('96.3.8)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통보된 시군세조례 정비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통보하니 조례개정시 착오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아 래

해당조항	~ 올	~ 으로	사 유
제6조제1항	시(군)사무위임규칙 으로	시(군)사무위임조례 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 를 위임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끝.

강 원 도 지

세 정 과 장 전 결



수신처 : 더(01~18)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199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청소수수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주인의 식 고취 및 자연환경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역주민이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3호)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이 평창군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본문생략) 1 ~ 3(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11조(본문생략) 1. 2(생략)</p> <p><u><신설></u></p>	<p>제2조(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p> <p>4. <u>"지역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이 평창군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 를 말한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11조(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p> <p>3. <u>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 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50%를 경감 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년월일 : 199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군세조례중 개정할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세무비리사건 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법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채납액 증가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통령령 및 내무부령의 개정(95.12.30)으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함.(안 제6조의2)
- 나.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로 정함(안 제6조의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평창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를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①시행규칙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시행규칙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개인 : 1,800원(군지역은 1,000원)"를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법제196조의5를 준용한다.

제49조제1항중 "법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제266조 제3항에서"로 하고 "부동산"을 "토지"로 한다.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제238조의2의 규정에"를 "법제238조의2·법제279조 및 법제290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오지등 지역(제6조의2제1항 관련)

읍·면 명	지 역 명
미 탄 면	회동2리, 평안2리, 한탄리, 기화리, 마하리, 수청리
방 립 면	방립4리, 운교3리, 계촌2리
대 화 면	개수1·2리
봉 평 면	창동4리, 유포1·2·3리, 진조리, 면은1리, 무이1·2리, 흥정리, 덕거1·2리
용 평 면	이목정2리, 속사2리, 노동리, 도사리, 재산2리
진 부 면	마평2리, 수항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
도 암 면	병내리, 유천3리, 수하리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①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u>평창군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u></p> <p><신 설></p> <hr/> <p>제15조(세율)①군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 : 1,800원(군지역은 1,000원)</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①</p> <p>.....</p> <p>.....</p> <p>.....</p> <p>.....</p> <p>.....</p> <p>.....</p> <p>..... <u>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u></p> <hr/> <p>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①시행규칙</p> <hr/> <p>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u>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u></p> <hr/> <p>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u>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u></p> <hr/> <p>제15조(세율)①</p> <p>.....</p> <p>1. 개인</p> <hr/> <p><u>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u></p>

현행	개정안
<p>2.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4. (생략)</p> <p>② (생략)</p> <p>제21조(과세표준)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제80조의 규정에 의한 <u>과세시가표준액</u>으로 한다.</p> <p>제28조(신고의무)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p> <p><u>50,000원</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①법 제266조제3항에서</p> <p>.....</p> <p>.....</p> <p>.....</p> <p>.....</p> <p>.....</p> <p>1.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과세표준)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시가표준액</u>으로 ...</p> <p>.....</p> <p>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자동차세의 세율은 법제196조의5를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p> <p>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기 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 원</p> <p>3. 정차장</p> <p>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p> <p>5. 취득가격</p> <p>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p> <p>7. 기타 참고사항</p>	
<p>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p> <p>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 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4.(생략)</p> <p>②(생략)</p>	<p>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p> <p>①법 제266조제3항에서</p> <p>.....</p> <p>..... 토지</p> <p>.....</p> <p>1.~4.(생략)</p> <p>②(생략)</p>
<p>제51조(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는 도시계 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 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p>	<p>제51조(납세의무자)</p> <p>..... 건설교통부장관이 ..</p> <p>.....</p> <p>.....</p>

현행	개정안
<p>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p> <p>제54조(공용·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p> <p>.....</p> <p>.....</p> <p>제54조(공용·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①법 제238조의2·법 제279조 및 법 제290조의 규정에</p> <p>.....</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시행령제9조제2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1995.8.21 신설)

□ 지방세법시행규칙제7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영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995.12.30신설)

1. 지방세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지방세법제176조제1항제1호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1995.12.6개정)

1. 개인
 - 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구 분	세 액
인구 500만 이상의 시	4,5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 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3,000원
기 타 시	1,800원
군	1,000원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
----------	----

제출년월일 : 199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군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안 제10조)
- 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안 제22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1조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 <u>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 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자</u> ② (생략) <u>< 신설 ></u> <u>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p>	<p> <u>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 ② (현행과 같음) <u>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동일한 과세대상 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 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u> <u>제23조(시행규칙)</u> </p>

관세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95.12.6신설)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연월일 : 1996.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우리군을 찾는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투기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므로써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95년 8월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95. 8. 4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변경된 용어정리(안 제3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용어정리 : “일반폐기물” →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일반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일반폐기물배출자” → “생활폐기물배출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등

나.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 부과(안 제2조 제4항, 제5항, 안 별표1)

- 특별관리지역 :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등

- 일반관리지역 :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특별관리지역은 상향된 과태료 부과 적용

3. 개 정 근 거 범 령

폐기물관리법 개정('95. 8. 4)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②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③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④ “특별관리지역”이라 함은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을 말한다.
- ⑤ “일반관리지역”이라 함은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말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제14조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으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14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일반관리 지 역	특별관리 지 역
1. 폐기물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일반 폐기물을 투기한자(법 제7조)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 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 톤 미만 - 1 톤 이상				25	50
				100	300
				100	400
				200 300	500 1,000
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자의 경우 나. 다량배출자이외의 생활폐기물 배출 자의 경우	300	600	1,000		
	10	30	50		
3. 생활폐기물을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법 제16조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자의 경우 나. 다량배출자이외에 생활폐기물 배출 자의 경우	300	600	1,000		
	20	5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일반관리 지 역	특별관리 지 역
4.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폐기물처리업자	400	700	1,000		
5.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20조제3항)	1,000	-	-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300	500	1,000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1,000	-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라 함은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와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된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p> <p>②“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라 함은 다량의 일반 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p> <p>③“처리”라 함은 일반폐기물의 소각·파쇄·매립 등에 의한 중간, 최종처리를 말한다.</p> <p>④“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파쇄·매립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⑤“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정의).....</p> <p>.....</p> <p>①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p> <p>②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③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④ “특별관리지역”이라 함은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을 말한다.</p> <p>⑤ “일반관리지역”이라 함은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일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p> <p>.....생활폐기물</p> <p>.....</p> <p>생활폐기물</p>
<p>제4조(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제4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p> <p>.....생활폐기물</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①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①.....</p> <p>.....생활폐기물관리구역</p> <p>.....</p> <p>1. (현행과 같음)</p> <p>2.생활폐기물</p> <p>②.....</p> <p>.....</p> <p>.....생활폐기물관리구역</p> <p>③..... 생활폐기물관리구역</p> <p>.....</p>

현행	개정(안)
<p>제6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군수는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규정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생활폐기물관리구역 생활폐기물</p> <p>②.....생활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자</p>
<p>제7조(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300kg 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 생활폐기물</p> <p>..... 폐기물 수집·운반업체</p>
<p>1~3.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집방법과 작업여건 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② 생활폐기물</p> <p>③..... 생활폐기물</p> <p>④..... 생활폐기물</p>

현행	개정 (안)
<p>제8조(일반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조(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 생활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자</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생활폐기물</p> <p>④.....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p> <p>⑤..... 생활폐기물</p>
<p>제9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일반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소각·매립 등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②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관리구역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배출자”.....).....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배출자 생활폐기물</p>

현행	개정 (안)
<p>③ (생략)</p> <p>제10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5. (생략)</p> <p>③제1항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가~다. (생략)</p> <p>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 일반폐기물, 가연성 일반폐기물 및 불연성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다만, 군의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구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 생활폐기물</p> <p>.....</p> <p>②.....생활폐기물</p> <p>.....</p> <p>1~5.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생활폐기물</p> <p>.....</p> <p>1. 생활폐기물</p> <p>.....</p> <p>가~다. (현행과 같음)</p> <p>라.생활폐기물.....</p> <p>.....</p> <p>2.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p> <p>.....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p> <p>.....</p> <p>.....</p> <p>.....</p>

현행	개정 (안)
<p>④ (생략)</p> <p>제3장 <u>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등</u></p> <p>제11조(<u>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u>)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u>를 받고자 하는 자는 <u>군의 관할구역내에</u>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p> <p>②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u>를 함에 있어서는 <u>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u></p> <p>③군수는 <u>일반폐기물 처리업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12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1.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장 <u>폐기물처리업 허가등</u></p> <p>제11조(<u>폐기물 처리업 허가</u>) ①..... <u>폐기물 처리업</u></p> <p>②..... <u>생활폐기물</u><u>생활폐기물</u> <u>폐기물처리업자</u>..<u>폐기물 처리업</u></p> <p>③..... <u>생활폐기물</u><u>폐기물 수집·운반업체</u><u>생활폐기물</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u>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u> <u>생활폐기물</u></p> <p>.....</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p>2.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p> <p>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p> <p>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p> <p>제1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p>	<p>2. 생활폐기물</p> <p>3. 폐기물 처리시설</p> <p>4.생활폐기물</p> <p>제14조(행정위탁) 생활폐기물</p> <p>.....</p> <p>.....</p>

【별표1】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일반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
1. 폐기물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일반 폐기물을 투기한자(법 제7조)				1.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배회마다 25	-	-	가.				25	5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나.				100	3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다.				100	4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라.					
				- 1톤 미만				200	500
				- 1톤 이상				300	1,0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기물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제외)	500	700	1,000	(삭제)					
2. 일반폐기물을 종류, 색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2. 생활폐기물					
가. (생략)	300	600	1,000	가. (현행과 같음)	300	600	1,0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 (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 (천원)				
	1차위만	2차위만	3차위만 (이후)		1차위만	2차위만	3차위만 (이후)	일반관리 지역	특별관리 지역
나. 다량배출자 이외의 <u>일반폐기물 배출자</u> 의 경우 3. <u>일반폐기물</u> 을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법 제16조제2항) 가. (생략)	10	30	50	나. <u>생활폐기물 배출자</u> 3. <u>생활폐기물</u> 가. (현행과 같음)	10	30	50		
나. 다량배출자 이외에 <u>일반폐기물</u> 배출자의 경우 4.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u>일반폐기물처리업자</u> 5. <u>일반폐기물처리시설</u> 사용개시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20조제3항) 6. (생략)	20	50	100	나. <u>생활폐기물</u> 4. 5. <u>폐기물처리시설</u> 6. (현행과 같음)	20	50	100		
7. <u>폐기물처리시설</u> 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 <u>일반폐기물처리시설</u> 의 경우	400	700	1,000	7. - <u>폐기물처리시설</u>	400	700	1,000		
	1,000	-	-		1,000	-	-		
	300	500	1,000		300	500	1,000		
	1,000	-	-		1,000	-	-		

(주) 1 ~ 3 (생 략)

(주) 1 ~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누구든지 상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항만·어항·하수도·하천·호소·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 또는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등(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등)을 기록하되, 그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1.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 2.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 3.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 4.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년월일 : 1996. 5. .

제출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현행 상수도 요금은 톤당 323원으로 총괄 생산원가 696원에 훨씬 못미침으로써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부채 또한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며,
- 맑은물 공급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추세에 비추어 볼때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개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반면, 낮은 수도요금과 군재정력 빈곤으로 대부분의 투자비를 부채로 충당하므로써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 투자빈곤으로 인한 급수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을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려는것임.

□ 주요골자

- 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때 115.6%를 인상하여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용가의 물가부담을 고려하여 금회에는 평균 30%를 인상하고 [안 별표2]
- 나. "물"소비량이 가장많은 「가정용」의 사용구간과 누진율을 중점개선하고[안 별표2]
- 다. 「공공용」을 다른 유사업종과 통폐합하여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고자함 [안 별표3]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별표2]를 별지1과 같이 하고, 제27조제1항중 [별표3]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구분		월 기본료		초과요금		비고
		용량	금액(원)	용량	금액(원)	
가정용		0-10㎡	1,460	11-20	㎡당 260	
				21-30	320	
				31-40	390	
				41-50	420	
				51㎡이상	620	
업무용		0-20㎡	7,750	21-50	㎡당 560	
				51-100	690	
				101-300	800	
				301㎡이상	850	
영업용		0-30㎡	13,780	31-50	㎡당 680	
				51-100	840	
				101㎡이상	1,080	
목탕용	1층	0-200㎡	71,920	201-300	㎡당 770	
				301-500	910	
				501㎡이상	1,230	
	2층	0-200㎡	118,180	201-300	㎡당 1,170	
				301-500	1,640	
				501㎡이상	2,150	
전용공업용		㎡당	300			

[별표3]

업종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 담배, 연탄, 양곡, 지물, 철물등의 소매점, 10㎡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 ○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업소 ○ 사설 소화전 ○ 관공서,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영업용		<p>1.식품점객업 2.공연장 3.숙박업(여인숙 제외) 4.유기장, 노래방 5.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6.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7.예식장 8.사설학원 9.사진현상소 10.양조업 11.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12.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13.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일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15.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16.정육점</p>
목탕용	1종	○ 일반 목욕장업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욕장업 ○ 목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전용 공업용		○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관계법령 발췌서

수 도 법

제23조 (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업종별요율표

현행			개정				
업종별	용량	금액 (원)	업종별	용량	금액 (원)		
가정용	0-10㎡	<u>1,270</u>	가정용	0-10㎡	<u>1,460</u>		
	<u>11-30</u>	㎡당 <u>220</u>		<u>11-20</u>	㎡당 <u>260</u>		
	<u>31-50</u>	<u>240</u>		<u>21-30</u>	<u>320</u>		
	<u>51㎡이상</u>	<u>330</u>		<u>31-40</u>	<u>390</u>		
					<u>41-50</u>	<u>420</u>	
			<u>51㎡이상</u>	<u>620</u>			
영업용	1종	0-20㎡	<u>6,680</u>	업무용	0-20㎡	<u>7,750</u>	
		21-50	㎡당 <u>480</u>		21-50	㎡당 <u>560</u>	
		51-100	<u>580</u>		51-100	<u>690</u>	
		101-300	<u>650</u>		101-300	<u>800</u>	
		301㎡이상	<u>660</u>		301㎡이상	<u>850</u>	
	2종	0-30㎡	<u>12,100</u>	영업용	0-30㎡	<u>13,780</u>	
		31-50	㎡당 <u>560</u>		31-50	㎡당 <u>680</u>	
		51-100	<u>670</u>		51-100	<u>840</u>	
		101㎡이상	<u>830</u>		101㎡이상	<u>1,080</u>	
목탕용	1종	0-200㎡	<u>62,540</u>	목탕용	1종	0-200㎡	<u>71,920</u>
		201-300	㎡당 <u>610</u>			201-300	㎡당 <u>770</u>
		301-500	<u>700</u>			301-500	<u>910</u>
		501㎡이상	<u>860</u>			501㎡이상	<u>1,230</u>
	2종	0-200㎡	<u>107,440</u>		2종	0-200㎡	<u>118,180</u>
		201-300	㎡당 <u>1,170</u>			201-300	㎡당 <u>1,170</u>
		301-500	<u>1,640</u>			301-500	<u>1,640</u>
		501㎡이상	<u>2,150</u>			501㎡이상	<u>2,150</u>
전용공업용	㎡당	<u>280</u>	전용공업용	㎡당	<u>300</u>		
공공용	0-30㎡	<u>8,230</u>	<삭제>				
	31㎡이상	㎡당 <u>470</u>					

신 구조문 대비표

[별표 3]

현		행		개		정	
업종별	구분	내용		업종별	구분	내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철물등의 소매점, 10㎡미만사의 보던방, 인장업, 행정서사,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신 설>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철물등의 소매점, 10㎡미만사의 보던방, 인장업, 행정서사,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영업용	1종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타업소에 속하지 않는 업종 ○사설 소화전 <신 설>		업무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타업소에 속하지 않는 업종 ○사설 소화전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단체 (생산 및 제조업주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시무사, 정당, 사회단체 (사회단체 등에는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단체)	
	2종	1. 식품접객업 (여인숙 제외) 2. 공연장 3. 숙박업 (여인숙 제외) 4. 유품점, 노점 5. 백화점, 도매점, 대우점 6. 자동차정비업, 주유점 7. 예식장 8. 사설학원 9. 사진현상소 10. 양조업 11.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제조업 12. 체육시설업 (체육경기장, 체육관, 체육회 등) 13. 단기수업 (수업기간이 1년 이하인 것) 14. 별도 급수도에 의한 파손에 의한 15. 수도관 파손에 의한 16. 정유점		영업용		1. 식품접객업 (여인숙 제외) 2. 공연장 3. 숙박업 (여인숙 제외) 4. 유품점, 노점 5. 백화점, 도매점, 대우점 6. 자동차정비업, 주유점 7. 예식장 8. 사설학원 9. 사진현상소 10. 양조업 11.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제조업 12. 체육시설업 (체육경기장, 체육관, 체육회 등) 13. 단기수업 (수업기간이 1년 이하인 것) 14. 별도 급수도에 의한 파손에 의한 15. 수도관 파손에 의한 16. 정유점	

현		행	개		정	
업종별		구	본	내	용	
업종별		구	본	내	용	
목탕용	1 K0	○일반 목욕장업		목탕용	1 K0	○일반 목욕장업
	2 K0	○특수 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2 K0	○특수 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전용공업용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 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전용공업용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 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공공용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 및 제조용주 체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전 담, 사회단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를 사회복지시설		<삭 제>	<삭 제>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안 번호	71
----------	----

제출연월일 : 199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를 자문·개선코자 실천협의회 구성.

2. 주요골자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제2조)

-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전문가, 관련공무원, 주민대표들중 10명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제3조)

- 주민건강증진과 관련한 세부계획수립·시행과 건강증진사업 및 제도에 관한 군수의 자문

다.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제5조)

라.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가족보건계장,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함.(안 제8조)

3. 관련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1995. 5. 1. 제정)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에서 “주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회의)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 ②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9조(운영세칙)기타 협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및 결과·처리계획
(기간 : '96.5.27 ~ 5.30. 4일간)

'9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및 결과

평 창 군 의 회

-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확 인 계 획

○ 연중 계획된 군정주요 투자사업이 군민편의 위주로 일관성 있고 효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보완 토록 하므로써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함.

□ 기본 계획

1. 기 간 : '96. 5. 27 ~ 5. 30 (4일간)
※ 1일 2읍면 실시 (2개반 편성운영)
2. 대 상 사 업
 - 가. '96 주요투자사업중
 - 여론화사업, 고액투자사업, 환경관련 시책사업등
 - 나. 주민 건의·진정등 집단민원 관련사항
 - 다. '95 하반기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이행 실태
 - 라. 기타 군정주요사업 및 '95수해복구 사업
3. 확 인 자 : 의장외 7인
4. 확 인 반 : 2개반 운영
 - 가. 반편성

제 1 반			제 2 반		
반 장	반 원	대 상 지 역	반 장	반 원	대 상 지 역
부의장	이경진 의원 유돈문 의원 이수현 의원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의 장	김두경 의원 우강호 의원 김종영 의원	봉평, 용평 진부, 도암
사무보조	신교선, 변상득		사무보조	함경호, 이정균	

□ 세부시행 계획

1. 확인일정 및 시간계획

가. 읍면별 확인일정

구분	일정	5. 27(월)	5. 28(화)	5. 29(수)	5. 30(목)	비 고
제 1 반		미 탄	평 창	방 립	대 화	
제 2 반		봉 평	도 압	진 부	용 평	

나. 일일 시간계획

일자별	시 간			활 동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1일차 (5. 27)	-	13:00	-	· 읍·면 도착	
	13:00	13:10	10	· 휴 식	
	13:10	14:10	60	· 사업별 현황 청취	
	14:10	14:20	10	· 휴 식	
	14:20	17:20	180	· 현지확인	
	17:20	18:00	40	· 결산 및 익일계획 협의	
	18:00	-	-	· 귀 가	
2~4일차 (5.28 ~ 5.30)	-	10:00	-	· 읍·면 도착	
	10:00	10:20	20	· 휴 식	
	10:20	12:00	100	· 사업별 현황 청취	
	12:00	13:30	90	· 중식 및 휴식	
	13:30	17:00	210	· 현지확인	
	17:00	17:40	40	· 결산 및 익일계획 협의	
	17:40	-	-	· 귀 가	

2. 현지활동계획

- 가. 계획에 의한 정실시공 실태
- 나.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여론청취
- 다. 사업장 마무리 및 사후관리 실태 ('95사업)
- 라.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분석

3. 행정사항

가. 현지활동 자료준비

- 대상사업 : 사업목록에 의한 전사업(별첨3)
- 자료제공 : 집행부 대상사업별 추진상황 제공
- 자료제공일 : '96. 5. 23한
- ※ 현지확인시 해당사업 설계도 지참(사업담당 부서)

나. 현지이동 차량 대책

- 읍면도착 및 귀가 : 개별
- 현지활동 : 승용차 2대(의회)
 - 승용차 운행이 곤란한 지역은 집행기관 협조 지프차 이용

다. 현지활동경비대책 : 의원공통경비(목 206-04)에서 집행

라. 기타사항

- 활동상황별 기록유지
- 보조자료 수집 및 확인순서 읍면별 적의성 있게 조정

□ 집행기관 협조사항

1. 사업추진상황 제출 : 서식 별첨 2

가. 대 상 사 업 : 별첨목록의 전사업(서식 임의조정 가능)

나. 작성 기준일 : '96. 5. 20 현재

다. 제 출 기 한 : '96. 5. 23(목)한

라. 규 격 : A4복사용지 상철(워드프로세서 작성)

마. 편 철 : 읍면별 구분하여 표지,군발주사업,읍면발주사업순

바. 제 출 부 수 : 14부 (합철 3부, 분철 11부)

※ 기타 사업추진상황 설명에 필요한 자료 사업장별 첨부

2. 사업현황 설명 및 현지안내

가. 사업장별 현황 설명

○ 일 시 : 현지확인 당일

○ 장 소 : 읍면장실 또는 회의실(좌석배치도 별첨1)

○ 참석자 : 의원 및 사무보조직원, 사업주관 부서장

○ 보고자 : 읍·면장

※ 읍·면장 보고후 사업주관 실과소장 보충설명

○ 내 용 : 사업별 세부추진상황 설명 및 질의·답변

○ 진 행

- 개회선언 및 인사 (반장)

- 읍면장 인사 및 보고 (읍면장)

- 질의·답변(읍면장,사업주관부서장)

- 마무리 인사 및 종료선언 (반장)

나. 현지안내

- 사업장별 현지 안내 및 의문사항 질의, 답변
- 사업관련 설명자료 지참(설계도 및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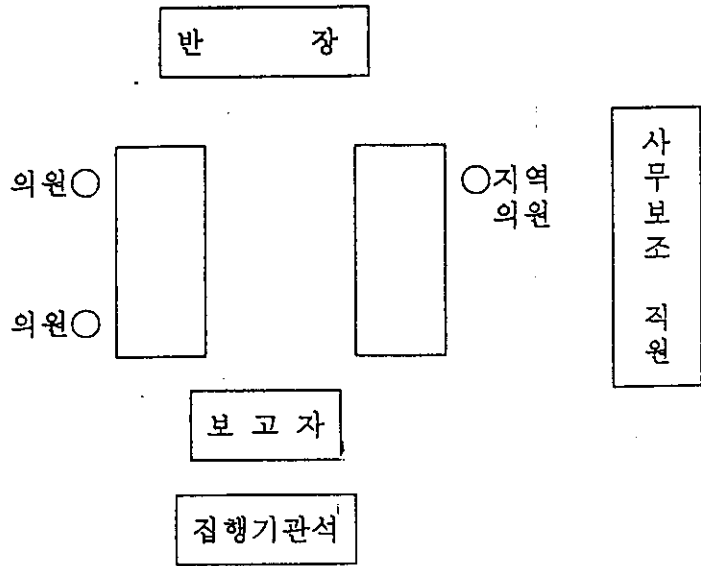
다. 기타사항

- 현지확인 일정시간표 제출 : 당해 읍면
- 타기관 시행사업 사전협조 : 자료제공, 현황설명, 질의·답변등
※ 관련부서 현지안내 협조
- 현지확인 기간동안 지프차 배차 협조 : 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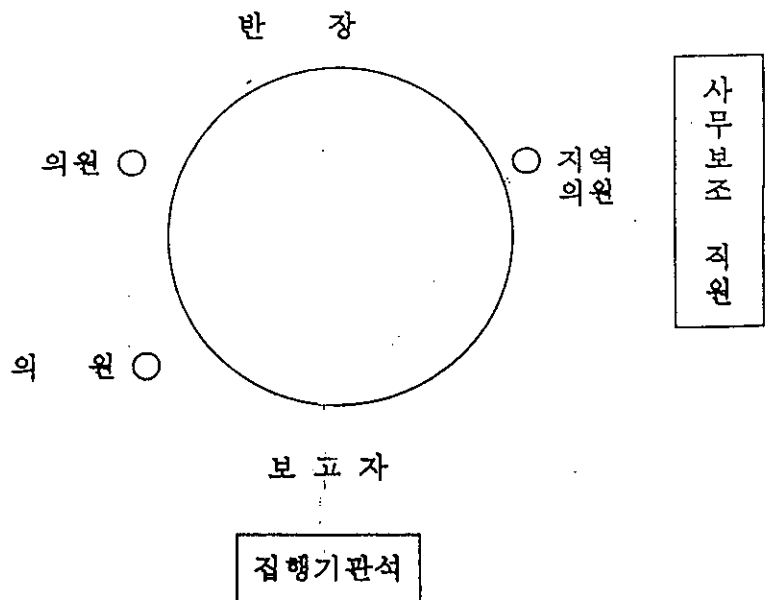
【 별첨 1 】

< 좌석배치도 >

[4각 배열]



[원 탁]



【별첨 2】

○○○ 사업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과 읍면
- 위 치 : 읍면 리
- 사업규모 :
- 사업비 : 천원(총사업비: 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부자담 :
- 시행기간 :
- 현 공 정 :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 설계변경사유:

문제점 및 대책

【 별첨 3 】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목록

□ 총 괄

읍 면 별	확인대상 건수	비 고
계	64	
평 창 읍	7	
미 탄 면	9	
방 립 면	8	
대 화 면	8	
봉 평 면	7	
용 평 면	7	
진 부 면	8	
도 암 면	7	
공 통	3	

□ 사업 목록

읍 면 별	사 업 목 록	비 고
평 창 읍	1.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2. 평창노성정 건립공사(궁도장) 3.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4. 달동네 정비사업 5. 여만리 농로 및 도수로 확·포장 사업(진정서) 6. 중리 내수 침수 해소사업 7. 평창우회도로 건설공사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도 시 과 사회진흥과 건 설 과 건 설 과
미 탄 면	1. '96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 평안2리 농업용 관정설치 3. 소규모 소각로 설치사업 4. 농촌오수처리 시설사업 5. 상수도 노후관 교체 6. 상수도 여과사 교체공사 7. 회동 2리 도로정비사업 8. 한탄리 농로포장사업 9. 창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산 업 과 건 설 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도 시 과 도 시 과 미 탄 면 미 탄 면 미 탄 면
방 립 면	1.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계촌1리) 2. 방림면 계촌천 수해복구사업(운교1리) 3. 계촌교 수해복구공사 4. 방림 ~ 둔내간 군도 수해복구공사 5. 계촌6리(셋말)수해복구공사 6. 방림3리 2번군도 낙석위험지구 7.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전사업) 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촌3리 교량)	건 설 과 건 설 과 건 설 과 건 설 과 사회진흥과 건 설 과 방 립 면 방 립 면

읍 면 별	사 업 목 록	비 고
대 화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화체육관 건립공사 2. 대화 문화마을 조성사업 3.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선애, 팜봉) 4. 군도 4호선 (대화3리~개수) 도로 5. 대화면 하수도 시설현황 6. 미날교량 공사 7. 대화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8. 대화산업 개발현장(신2리, 규석광산)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건 설 과 건 설 과 도 시 과 건 설 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 립 과
봉 평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안교 가설공사 2. 봉평 도움정비사업 3. 봉평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 (주)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5. 불법축사 시설 (곽회중) 6. 고래뱃속 식당 (문종옥) 7. 매지동천(소하천)정비사업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도 시 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축 산 과 사 회 과 건 설 과
용 평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5집단마을 조성사업 2. '96밭 기반정비 사업 3. 오지개발사업(저운저장고) 4. 군도 확·포장 공사(무이~상진부) 5.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6. 장평 오수처리장 시설 사업 7. 간이 상수도 신설(백옥포)공사 	건 설 과 건 설 과 사회진흥과 건 설 과 도 시 과 환경보호과 도 시 과

읍 면 별	사 업 목 록	비 고
진 부 면	1. 상월오개리 임도피해 복구공사 2. 다가구 주택 및 식당 건축(척천리) 3. 진부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4. '95수해복구 사업 - 마평1리, 거문리, 호명리, 상월오개리, 하진부3리	산 립 과 도 시 과 " 실 과 소 읍 · 면
도 암 면	1. 도암면 청사 신축공사 2. 국제트렌스 산림훼손 복구 추진상황 3. 황계 7리 교량가설사업(수해복구) 4. 황계 1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5. '95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용산1리) 6. '96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차항2리) 7. '95 소규모시설사업(용산1리)	재 무 과 산 립 과 도 시 과 도 시 과 산 업 과 산 업 과 도 암 면
공 통	1.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식 별첨) 2. '95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서식 별첨) 3. 관내기업 유치 및 착수 실태 (예) 이목정 생수개발 사업등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시행부서 :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비 :

○ 사업기간 :

처리결과

확인요지	처리계획	처리결과	비고

- 주) 1. 확인요지 : 군의회에서 현지확인 결과 통보내용 기재
 2. 처리계획 : 집행부에서 확인요지에 대한 처리계획 기재
 3. 처리결과 : 처리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 기재
 4. 비 고 : 완결, 추진중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95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읍면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위 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 약 방 법	사업비(천원)			추진 상황	비고
							계	도비	군비		

- 주) 1. '95수해복구 사업은 군 및 읍·면 발주사업 구분, 전사업에 대하여 작성
 2. 사 업 량 : 공사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석축, 용벽, 암거등)
 3. 발 주 처 : 군 부서 및 읍·면 구분
 4. 추진사항 : '96. 5. 20까지의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9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 지 확 인 결 과

□ 확 인 개 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96. 5. 27 ~ 5. 30 (4일간)
- 대상사업 : 군정 주요투자사업 64개소
- 확 인 반 : 2개반 12명(의원8, 사무보조4)

제 1 반				제 2 반			
반 장	반 원	사무보조	대상 지역	반 장	반 원	사무보조	대상 지역
부의장	이경진 의원 유돈문 의원 이수현 의원	신 교 선 변 상 득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의 장	김두경 의원 우강호 의원 김종영 의원	함 경 호 이 정 균	봉평, 용평 진부, 도암

○ 주요내용

-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및 관리상황
 -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분석
- '95 하반기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현지확인
- 지역주민의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의 정보 획득

가. 사업장 현황

○ 총 관

(단위 : 개소)

구 분 기관별	총 대상 사업장	확 인 사업장	개 선 보 완 사업장	확인일자	비 고
계	64	46	33	-	
평 창 읍	7	7	6	5. 28	
미 탄 면	9	4	2	5. 27	
방 립 면	8	6	3	5. 29	
대 화 면	8	4	5	5. 30	
봉 평 면	7	6	4	5. 27	
용 평 면	7	6	5	5. 30	
진 부 면	8	8	6	5. 29	
도 암 면	7	5	2	5. 28	
공 통	3	-	-	-	

나. 확인내용

<평창읍>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 평창군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p>가. 구조물등 기초시설 시공시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p> <p>나. 설계 변경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실정을 감안 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됨.</p>	
2. 평창 노성정 건립사업	<p>가.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유치, 평상시의 시설물 활용도등을 감안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와 향후 활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현 시설물에 전기, 수도, 화장실 시설이 미비되어 각종대회 개최시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바 이의 마무리 대책이 요구 됨.</p>	
3. 평창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	<p>가. 현 소각장 시설이 당초 지면보다 낮게 설치 시공 되어 시설물내로 오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p> <p>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가동에 따른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p>	
4. 달동네정비 사업	<p>가. 현 사업장 윗쪽에 위치한 10여가구에 대한 배수 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달동네 정비 사업과 연계 배수시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p>	
5. 평창 우회 도로개설 사업	<p>가. 우회도로 윗쪽의 농경지에 대한 진입로 시설이 미비 되어 있는바, 이의 해결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것임.</p>	
6.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p>가.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시공한 하1리~중2리,3리 구간의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p>	

< 미탄면 >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 미탄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가.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노면의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격하여 청소차량 운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바, 진입로 재정비가 요구됨.	
2.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가. 시설 노후로 누수율이 60%이상 되고 보수비가 매년 반복 투자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방림면 >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 군도2호선 낙석 위험 지구관리	<p>가. 우기철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낙석이 다량 발생하여 일부 구조물이 훼손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됨.</p> <p>나. 굴곡이 심한지역의 도로는 야간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함.</p>	
2. 수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p>가. 도수로 시설등 하자 보수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관리가 요구됨.</p> <p>나. 경지정리 지구내 객토에서 다량의 돌과 자갈등이 섞여 있어 농작물 경작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망됨.</p>	
3.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p>가. 수해복구사업 4건과, 주민숙원사업 1건은 공사 감독 공무원 결원을 이유로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공기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p>	

<대화면>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 평창군 문화체육관 건립	<p>가. '95년도 이월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기초 시설공사시 당해 감리회사의 책임 감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시공 명령을 받는데 부실 시공이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더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이 요구됨.</p> <p>나. 계속비 대상 사업으로 년차별 년부액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96년도는 1억4,000만원이 미부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향후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2. 선애지구 경지정리 사업	<p>가. 경지정리지구내 일부 농가가 기반시설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우기에 침수 우려가 있는바, 배수시설 설치로 농가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이 요구됨.</p> <p>나. 일부 도수로 시설이 현장 감독공무원의 부재로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 되는등 문제점이 다수 대두되고 있는바, 추후 사업시행에 보다 더 철저한 주의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p>	
3. 군도 4호선 (대화3리-개수리)확포장	<p>가. 인근지역과 연계된 중요도로로 군도 승격이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조속히 마무리 될수있는 특별대책이 요구됨</p>	
4. 미날교 가설공사	<p>가. 대형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년차별로 투자를 하기 보다는 집중투자 방식으로 조기에 완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5. 대화산업(주) 개발 현장	<p>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 골재로 무단반출이 되고 있는 바 관련법규의 철저한 준수로 군세추징, 관련허가사항 이행등 군의 관리·감독에 체계 정립이 요구됨.</p>	

< 봉평면 >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 봉평도읍 정비사업	<p>가. 철거대상 가구 철거를 조속히 실시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철거대상 가구의 보상과 관련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p>	
2.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p>가. 사업장 위치 선정은 행정기관이 주관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 지역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 조속히 결정 계획한 기간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p>	
3. (주)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 개발 및 오수처리 시설관리	<p>가. 우기시 사업장 법면의 토사유출로 하류 지역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 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p> <p>나.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점검 주기를 년 2회에서 월 1회로 회수를 늘리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 하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다. 수계의 환경영향평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통보 하기 바람.</p>	
4. 평촌1리 괄회중불법축사건축관련	<p>가. 불법축사건립은 건축주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및 지도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된 점을 고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람.</p>	

< 용평면 >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 재산지구발 기반정비사 업	가. 공기내 사업의 마무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배수관로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여 시공 우기시 토사유출등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저온저장 고사업	가. 관계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을 마련 운영위원회를 소집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제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 사전에 해결 대책을 마련 사후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농어촌 취 락구조 개 선지 기반 시설 확충 사업	가. 간이 오수처리장, 도로포장 및 사업장 입구의 석축등의 세심한 부분을 철저히 마무리 하여 민원을 사전방지 하기 바람. 나. 간이상수도설치(지하수개발)와 관련 저수조에 연결하는 수량 감지선 연결이 전주에서 약 50m 거리의 나무에 매어져 있어 위험 요인이 있는바 관련 기관과 협조 전주를 추가 설치하여 불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등 사업 뒷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장평농촌 오수처리 시설	가. 폭우시 유수량이 과다 유입될것으로 예상 오수 처리시설의 피해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여야 할것임.	

< 진부면 >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 상월오개리 임도피해 복구사업	<p>가. 일부 구간의 도로 윗부분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발생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현재 시공이 완료된 절개지의 측구 및 배수로 시설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잔디, 나무, 억제풀 등의 식재에 대해 우기전 시공자와 합동점검을 실시 부실시공 부분의 재정비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됨</p>	
2. 다가구주택 및식당건축 사업 (척천리)	<p>가. 현재 건축중인 분뇨정화조시설의 규모가 당초 설계와 비교하여 규격에 미달 되고 있어 배출량 처리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의 시정이 요구됨</p> <p>나. 사업장이 수원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갈수기시 오수가 하천에 유입될 경우 상수원 오염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는 장치가 요구됨.</p> <p>다. 상수원 상류지역 및 하천변에 건축되는 다세대 주택등에 대한 제반허가 및 오염원 처리기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개선 하는등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 규정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 받침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임.</p>	
3. 진부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p>가. 시공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일련의 공사가 지연 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4. 마평1리 수해복구 사업	<p>가. 현재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 시공자와 합동으로 재점검을 실시 미착공사업과 미진사항을 우기전 완료 될수 있도록 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이 요망됨.</p>	
5. 거문리·호 명리 수해 복구사업	<p>가. 석축공사 돌쌓기 밑의 기초콘크리트가 하상 위에 타설되어 있어 우기시 밀파임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있음.</p> <p>나. 향후 기초콘크리트 타설시는 하상면에서 밑으로 기초콘크리트 부분의 2/3가 묻일수 있도록하고 우기전 끝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 도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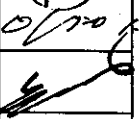

사 업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1.도암면청사 신축사업	<p>가.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하는 부분이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p> <p>나.감독공무원과 공사감리자를 주요공정별로 상주시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지연을 막을수 있는 특별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p>	
2.국제트렌스 산림훼손복 구추진상황	<p>가.토사면에 뿌린 풀씨가 삭이 트지 않고 결면에 드러나 있어 우기시 빗물에 쓸려 내려 갈 것으로 판단되는 바, 흙덮기 작업등을 실시 풀씨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임.</p>	

평 창 군

우편 232-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전화(0374)32-2011/담당 여 운 기

문서번호 기획 12600 - 435
 시행일자 1996. 6. 25 (년)

받음 평창군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선결	의장		지	
접	일자 시간	196. 6. 25.	결	후의장 
수	번호	335	재·공	과장 이기호
처리과		의회사무과	계장	
담당자		이기호 	람	

제목 현지확인결과 처리계획 통보

1. 평의회 제75호('96.6.12)와 관련입니다.
2. 제40회평창군의회(임사회)회기중 실시한 '96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처리계획 1부. 끝.

평 창 군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 지 확 인 결 과 처 리 계 획

- 총 대상 사업장 : 64건
- 현지 확인 사업장 : 46건
- 개선·보완사업장 : 31건

평 창 군

목 차

[평 창 읍] _____ 6건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문화공보실)
- 평창노성정건립사업 (사회진흥과)
- 평창쓰레기소각로설치사업 (환경보호과)
- 달동네 정비사업 (도 시 과)
- 평창우회도로개설사업 (도 시 과)
-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도 시 과)

[미 탄 면] _____ 2건

- 미탄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환경보호과)
-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도 시 과)

[방 립 면] _____ 3건

- 군도2호선 낙석위험지구 관리 (지역경제과, 건설과)
- 수동지구 경지정리사업 (건 설 과)
-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사회진흥과)

[대 화 면] _____ 5건

- 평창군 문화체육관건립 (사회진흥과)
- 선애지구경지정리사업 (건 설 과)
- 군도 4호선(대화3리~개수리)확포장 (건 설 과)
- 미날교 가설공사 (건 설 과)
- 대화산업(주)개발현장 (재무과, 산림과)

[봉 평 면] _____ 4건

- 봉평도읍정비사업 (사회진흥과)
- 봉평상수도시설확장사업 (도 시 과)
- (주)보광휘닉스파크골프장개발및오수처리시설관리(환경보호과)
- 평촌1리 광희중 불법축사건축관련 (축 산 과)

[용 평 면] _____ 4건

- 재산지구 발기반 정비사업 (건 설 과)
- 저온저장고 사업 (사회진흥과)
-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도 시 과)
- 장평 농촌오수처리시설 (환경보호과)

[진 부 면] _____ 5건

- 상월오개리 임도피해 복구사업 (산 립 과)
- 다가구주택 및 식당 건축사업 (환경보호과, 도시과)
-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도 시 과)
- 마평 1리 수해복구 사업 (사회진흥과)
- 거문리·호명리 수해복구사업 (사회진흥과)

[도 암 면] _____ 2건

- 도암면 청사 신축사업 (재 무 과)
- 국제트렌스 산림훼손 복구추진상황 (산 립 과)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처리계획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 평 창 읍 ></p> <p>○평창군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 립</p>	<p>가. 구조물등 기초시설 시공시 철저한 현 장지도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p> <p>나.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 사업비 증가가 예 상되는바,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실정 을 감안 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됨.</p>	<p>○정기적 현장지도감독확행 (매일)</p> <p>○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및 교육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 '96. 6월중(감리단 + 시공 회사)</p> <p>○97년도 국비계상 기신청 (500백만원)</p> <p>○문예진흥기금신청(50백만원) 및 도비 추가지원건의하겠음</p>
<p>○평창 노성정 건 립 사 업</p>	<p>가.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유치, 평상시의 시설물 활용도등을 감안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와 향후 활용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p> <p>나. 현 시설물에 전기, 수도, 화장실 시 설이 미비되어 각종대회 개최시 시설 물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바, 이의 마무리 대책이 요구됨.</p>	<p>○시설물의 특수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 위탁관 리운영 계획임.</p> <p>○현재 미비된 시설에 대하여 는 종합적인 검토후 시설물 마무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 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평창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p>	<p>가. 현소각장 시설이 당초 지면보다 낮게 설치 시공되어 시설물내로 오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p> <p>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관련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가동에 따른 민원발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p>	<p>○측구등을 설치하여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p> <p>○향후 직제개편시 정원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음</p>
<p>○달동네 정비 사업</p>	<p>가. 현사업장 윗쪽에 위치한 10여가구에 대한 배수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달동네 정비사업과 연계 배수시설이 추진되어야 할것임.</p>	<p>○달동네정비사업은 '96.7.24 준공 예정이므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p> <p>○향후 하수도정비사업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p>
<p>○평창우회도로 개설 사업</p>	<p>가. 우회도로 윗쪽의 농경지에 대한 진입로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바, 이의 해결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것임.</p>	<p>○평창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우회도로의 도로는 없음.</p> <p>따라서 과거 이용도로를 토지소유자간 협의하여 농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됨.</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소방도로개설 예 정 지</p>	<p>가.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시공한 하1리 ~중2·3리 구간의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 '92평창읍 도움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편입용지 8필지 505㎡중 4필지 341㎡와, 지장물 7건 3동중 4건 2동이 미협의를되어 시행이 취소된 사업으로 도움가꾸기사업으로 재추진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후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미 탄 면 ></p> <p>○미탄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p>	<p>가.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노면의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격하여 청소차량 운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바, 진입로 재정비가 요구됨.</p>	<p>○우선 노면을 정비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음</p> <p>○국토관리청에 진입로를 개설 할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임.</p>
<p>○상수도노후관 교체 사업</p>	<p>가. 시설 노후로 누수율이 60%이상 되고 보수비가 매년 반복 투자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연차별로 노후관을 선정하여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p> <p>- '96추진 : 3개소 100백만원</p> <p>.평창읍 : 1개소 40백만원</p> <p>.미탄면 : 1개소 30백만원</p> <p>.용평면 : 1개소 30백만원</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방 립 면 ></p> <p>○군도 2호선 낙석 위험 지구 관리</p>	<p>가. 우기철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낙석이 다량 발생하여 일부 구조물이 훼손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됨.</p> <p>나. 굴곡이 심한지역의 도로는 야간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함.</p>	<p>○매년 낙석발생량을 조사 정비하고 있으며, '96년에는 항구복구적인 차원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가비온을 설치토록 할 계획임('96.8 ~11.30)</p> <p>○교통안전위험지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조 경보기, 쏘라이트, 켓치아이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군도 2호선(운교⇒방림)구간의 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음</p>
<p>○수동지구경지 정리 사업</p>	<p>가. 도수로 시설등 하자 보수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관리가 요구됨.</p>	<p>○ 영농기전에 마무리 하여야 할 시한성 사업으로 동절기 시공에 따른 해빙기 지반침하로 부분적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상주감독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p>	<p>나. 경지정리 지구내 객토에서 다량의 돌과 자갈등이 섞여 있어 농작물 경작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망됨.</p> <p>가. 수해복구사업 4건과, 주민숙원사업 1건은 공사감독 공무원 결원을 이유로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공기내 추진 될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p>	<p>○ 주민들이 선정한 객토에서 돌, 자갈등이 섞여 있었는데, 채바가지 및 인력을 투입선별해 주므로서 민원을 해소하였음.</p> <p>○ 감독공무원의 지정으로 각종 사업이 공기내 완공될수 있도록 하였음.</p> <p>○ 감독공무원 지정 현황 - 일자 : '96. 5. 28 - 감독 : '미탄면 지방토목 서기 최준원</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 data-bbox="165 325 365 354">< 대 화 면 ></p> <p data-bbox="165 388 365 476">○ 평창군 문화 체육관 건립</p>	<p data-bbox="385 388 905 721">가. '95년도 이월사업임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초시설공사시 당해 감리 회사의 책임 감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재시공 명령을 받는등 부실시공이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더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이 요구됨.</p> <p data-bbox="385 809 905 1083">나.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년차별 년부액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96년도는 1억 4천만원이 미부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향후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 data-bbox="925 388 1313 662">○ 감리계약자 (이화건축사 사무소)로 하여금 주2회 이상 현장지도하고 주요공정시공 시에는 현장 상주 감리토록 하겠음.</p> <p data-bbox="925 809 1313 1083">○ 본사업은 '95 ~ '97년까지 3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p>
<p data-bbox="165 1211 365 1299">○ 선애지구경지 정리 사업</p>	<p data-bbox="385 1211 905 1475">가. 경지정리지구내 일부 농가가 기반 시설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우기에 침수 우려가 있는바, 배수시설 설치로 농가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이 요구됨.</p>	<p data-bbox="925 1211 1313 1475">○ 진입도로 입구 1가구가 우기시 토공수로의 매물로 배수불량이 예측되므로 정주권사업으로 도로포장시 구조물로 시공코자 함.</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군도4호선(대 화3리~개수리) 확·포장</p>	<p>나. 일부 도수로 시설이 현장 감독공무원 의 부재로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 되 는등 문제점이 다수 대두 되고 있는 바, 추후 사업시행에 보다 더 철저한 주의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 는 조치가 필요함.</p> <p>가. 인근지역과 연계된 중요도로로 군도 승격이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는 특별대 책이 요구됨.</p>	<p>○ 동절기 공사에 따른 지반침 하로 균열발생부분에 대하 여는 재시공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의 조기발주 및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민 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음.</p> <p>○ '99년까지는 군도정비계획 이 기확정되어 사업투자가 불가하나 '99년도에 재정비 계획수립시 노선별 우선순 위에 의거 년차적으로 사업 시행코자함.</p>
<p>○미날교 가설 공 사</p>	<p>가. 대형사고의 위협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년차별로 투자를 하기 보다는 집중투자 방식으로 조기 에 완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 예산부족으로 '96년도 1회 추경시 3억원을 확보 하였 기 전체분 용역설계후 하부 공사를 예산범위내에서 우 선 발주시행하고 '97당초예 산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 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대화산업(주) 개 발 현 장</p>	<p>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 골재로 무단반출이 되고 있는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로 군세추징, 관련 허가사항 이행등 군의 관리·감독에 체계정립이 요구됨.</p>	<p>○ 폐석사용수익에따른 지방세징수는 현행지방세법상 직접 징수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p> <p>국세징수법상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법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소득세 납부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하겠음.</p> <p>○ '96.6.11자로 사건처리 송치시 수사내용상 무단 방출량 22,021m³분에 대하여는 폐석대금을 추징하고자 함.</p> <p>- 토석채취허가 : '96.6.8</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봉 평 면 > ○봉평도읍정비 사 업</p>	<p>가. 철거대상가구 철거는 조속히 실시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철거대상 가구의 보상과 관련 주민 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임.</p>	<p>○ 봉평도읍정비 지구내 철거 대상 건물 철거계획 - 공사기간 : '96.11.15한 - 철거대상가구 : 16동 - 철거독려반 구성 . 군 : 1개반 3명 . 면 : 도읍추진위원회 (4개반 8명) - 방법 : 철거대상가구에 대한 책임자 지정 으로 '96.7월이전 까지 철거토록 추 진하겠음.</p>
<p>○봉평 상수도 시설확장사업</p>	<p>가. 사업장 위치 선정은 행정기관이 주관 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 지역 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 조속히 결정, 계획한 기간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 취수원선정과 관련하여 지 역주민의견 대립 (현취수장 ↔ 상류이전)으로 취수장에 대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취수원에 대한 댐 건설 요청등 주민의견을 최 대한 반영코자함. - 식수전용 댐 건설 입지 조사보고('96.6.7강원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주)보광휘닉스파크골프장 개발 및 오수 처리시설관리</p>	<p>가. 우기시 사업장 범면의 토사유출로 하류 지역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 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p> <p>나.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점검 주기를 년2회에서 월1회로 회수를 늘리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 하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 수시 방지시설 지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키장지구 : 침사지8개소 (15,024m³) - 골프장 : 침사지 6개소 (32,948m³) - 기타 : 탁류처리장 1개소 (50,000m³) - '96. 6. 30 완공예정임 <p>○ 동시설의 방류수점검 주기를 분기1회로 조정 방류수 수질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정상가동시 BOD 4ppm이하로 정화되어 방류되기 때문에 인근 하류수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p> <p>○ 기숙사등 오수정화 시설은 일반처리 시설로 하류수계 오염부하량이 크므로 부대 시설(여과시설), 오존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평촌1리 광회 중 불법축사 건축 관련</p>	<p>다. 수계의 환경영향평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통보하기 바람.</p> <p>가. 불법축사건립은 건축주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및 지도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된 점을 고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람.</p>	<p>○ (주)보광과 구체적 방안 협의하겠음</p> <p>○ 불법축사시설은 관련부서의 기처분지시에 따라 농가이행 지도</p> <p>○ 전업축산 규모임을 감안 '96 축산시책 사업중 젓소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사업 지원으로 환경오염예방 및 사양관리에 차질없도록 지도육성 계획임.</p> <p>- 지원규모 : 발효운동장 100평</p> <p>- 투 자 액 : 15,000천원 (지방비 : 9,000천원보조)</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용 평 면 ></p> <p>○ 재산지구발기 반 정비사업</p>	<p>가. 공기내 사업의 마무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배수관로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 내용을 제검토 하여 시공 우기시 토사 유출등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 빠른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코자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으며, 배수로 구조물을 보완설계에 반영 우기시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함.</p>
<p>○ 저온 저장고 사 업</p>	<p>가. 관계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 운영위원회를 소집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제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사전에 해결 대책을 마련 사후에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저온저장고 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마무리 : '96. 6월말 - 무상위탁계약 : '96.7월중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절차이행중 - 영농조합법인 소집 : '96. 7월중 - 위탁계약 : '96. 7월중 - 운영방법 : 마을대표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규정을 마련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농어촌 취락 구조 개선지 기반 시설 확충 사업</p>	<p>가. 간이 오수처리장, 도로포장 및 사업장 입구의 석축등의 세심한 부분을 철저히 마무리 하여 민원을 사전방지 하기 바람.</p> <p>나. 간이상수도설치(지하수개발)와 관련 저수조에 연결하는 수량 감지선 연결이 전주에서 약50m 거리의 나무에 매어져 있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바 관련기관과 협조 전주를 추가 설치하여 불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등 사업 뒷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 '96 제1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14,000천원)하였으며 철저히 추진하겠음</p> <p>○ 한전 강릉지사와 협의하여 전주 추가설치등 안전관리와 뒷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음.</p>
<p>○장평농촌오수 처리 시설</p>	<p>가. 폭우시 유수량이 과다 유입 될것으로 예상 오수처리시설의 피해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여야 할것임.</p>	<p>○ 폭우시 우수의 과유입량을 배출하기 위하여 중계펌프장 상단부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였으며,</p> <p>○ 적은우수유입시 오수량의 증가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일250 m³이상의 우수는 하천으로 직접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반영 추진토록 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 data-bbox="156 321 352 354">< 진 부 면 ></p> <p data-bbox="156 384 352 537">○상월 오개리 임도피해복구 사 업</p>	<p data-bbox="375 384 893 658">가. 일부 구간의 도로 윗부분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발생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 data-bbox="375 746 893 1085">나. 현재 시공이 완료된 절개지의 측구 및 배수로 시설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잔디, 나무, 억새풀등의 식재에 대해 우기전 시공자와 합동점검을 실시 부실시공 부분의 재정비와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됨.</p>	<p data-bbox="915 384 1293 658">○ '96. 6. 18부터 평창군임협 포크레인을 동원 산사태 우 려예상지 배수로 설치를 실 시하여 우기전에 예방조치 완료하고자 함.</p> <p data-bbox="915 746 1293 1266">○ 강원도환경연구소 과·계장 이 현지 지도감독 공무원 입회하여 현지점검을 기실 시 하였으며, 실시결과 묘 목일부 고사와 7급 줄떼가 부토에 일부 묻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지역 여건상 (마사토 경사지)불가피하므 로 향후 보수하겠다고함.</p>
<p data-bbox="156 1354 352 1501">○다가구 주택 및 식당건축 사업(척천리)</p>	<p data-bbox="375 1354 893 1618">가. 현재 건축중인 분노 정화조 시설의 규모가 당초설계와 비교하여 규격에 미달 되고 있어 배출량 처리가 어려 울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의 시정이 요구됨</p>	<p data-bbox="915 1354 1293 1560">○ 준공검사시 규격이 미달할 경우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출장 확인지도 하겠 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진부 상수도 시설확장사업</p>	<p>나. 사업장이 수원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갈수기시 오수가 하천에 유입 될 경우 상수원 오염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는 장치가 요구됨.</p> <p>다. 상수원 상류지역 및 하천변에 건축 되는 다세대 주택등에 대한 제반허가 및 오염원 처리기준의 문제점을 면밀 히 검토 분석하여 개선하는등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p> <p>가. 시공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일련의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p>	<p>○ 오수 및 발생된 분뇨에 대하여 1차로 정화조여과후 2차적으로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토록하여 오수무단 방류 및 고농도 분뇨의 하천유입을 차단할것임.</p> <p>○ 상수원 상류지역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철저히 검토 후 간이정화시설을 설치 토록 유도할 것이며,</p> <p>○ 기타 관련규정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개선 및 개선건의 토록 하겠음.</p> <p>○ 시공회사의 부도로 일시 작업중단등 일련의 작업이 지연되었으나 시공회사(명일종합건설)의 점차적인 정상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중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건 및 계 획
<p>○마평1리 수해 복구 사업</p>	<p>가. 현재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 시공자와 합동으로 재점검을 실시 미착공 사업과 미진사항을 우기전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이 요망됨.</p>	<p>○ 현재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 시공자와 합동으로 재점검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구간은 추가시공하여 우기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p> <p>○ 재점검일자 : '96. 6. 3</p> <p>○ 조치 : 2개구간 35m(석축) 추가시공</p>
<p>○거문리, 호명리 수해복구 사업</p>	<p>가. 석축공사 돌쌓기 밑의 기초 콘크리트가 하상 위에 타설되어 있어 우기시 밀파임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있음</p> <p>나. 향후 기초콘크리트 타설시는 하상면에서 밑으로 기초콘크리트 부분의 2/3가 묻일수 있도록하고 우기전 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p>	<p>○ 실제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수해전보다 깊게 땅을 파고 타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하상위로 타설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하상정비를 철저히 시켜 기초콘크리트에 쇄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음.</p> <p>○ 향후 현장지도(하상정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가 지반에 묻히도록 지도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의 견 및 계 획
<p data-bbox="179 315 375 348">< 도 압 면 ></p> <p data-bbox="183 380 375 472">○도암면 청사 신축 사업</p> <p data-bbox="183 1079 375 1230">○국제 트랜스 산림훼손복구 추진 상황</p>	<p data-bbox="400 380 908 589">가. 부설시공으로 재 시공하는 부분이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p> <p data-bbox="400 648 908 864">나. 감독공무원과 공사감리 자를 주요 공정별로 상주시켜 부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지연을 막을수 있는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 data-bbox="400 1079 908 1348">가. 토사면에 뿌린 풀씨가 삭이트지 않고 걸면에 드러나 있어 우기시 빗물에 쓸려 내려갈 것으로 판단되는바, 흙덮기 작업등을 실시 풀씨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임</p>	<p data-bbox="936 380 1310 531">○ 기초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설부분 파쇄시 작은기계를 사용하였으며,</p> <p data-bbox="936 648 1310 981">○ 공사감독공무원은 도암면의 건축직 및 토목직으로 임명하여 항시 감독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감리는 수시로 현지 감리에 임하도록 하겠음.</p> <p data-bbox="936 1079 1310 1407">○ 일부평탄 지역에 접착제를 혼용하여 풀씨를 파종한바, (씨드스프레이공법) 발아가 양호하지 않을시는 추가로 파종하고 흙덮기를 추진 완료하겠음.</p>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평 창 군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평 창 읍

목 차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문화공보실
- 평창노성정(궁도장) 건립 ————— 사회진흥과
-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 환경보호과
- 달동네 정비사업 ————— 도 시 과
- 여만리농로 및 도수로 확포장 ————— 건 설 과
- 중리 내수침수 해소사업 ————— 건 설 과
- 평창 우회도로 개설사업 ————— 도 시 과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문화공보실
 - 달동네 정비사업 ————— 도 시 과
 - 평창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 환경보호과
 - 노후 분뇨처리시설 수리 및 보수 ————— 위생환경사업소
 - 1군 1명품사업(개량산머루재배) ————— 산 업 과
 - 평창상수도 취수보 설치공사 ————— 도 시 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문화공보실
- 위 치 : 평창읍 종부리 산66-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8,650평, 건축1,208평(지하1, 지상2층)
- 사업비 : 4,150,000천원(총사업비 : 6,655,000천원)
 - 도비 : 2,300,000 군비 : 1,400,000 문예기금 : 450,000
- 시행기간 : '94 ~ '98
- 현 공 정 : 25%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4. 10. 13	94.11.30	94.12. 9	도급계약	3,311,880(건축·기계 토목)
		95. 7. 6	"	231,781(전기)
		95.11. 9	"	26,183(통신)
		95.12. 9	"	449,000(무대기계)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4.12.13	98.12.31	95. 8. 2	191,923	5,722,127	(주)대양	전면책임 감리 (주)한석 영역
		96. 5. 9	1,075,856	6,797,983	(주)우보 ENG	

※ 설계변경사유 : 물가인상을 적용, 건물위치 이동에 따른 토목시설 재배치, 무대확장 및 오케스트라 피트 설치, 운동장 순환도로 개설, 건물공간 조정, 당초 설계누락시설 보완 (옹벽, 핸드레일 등)

□ 문제점 및 대책

- 물가상승, 교량, 건물외장(뿔칠 ⇒ 석재타일) 설계변경 등 추가부담요인 발생으로 사업비 계속 증가 전망 - 당초 6,655 ⇒ 8,000백만원 전망(증 20%)
-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실정을 감안, 국·도비 추가확보대책 계속 추진
 - '97년도 국비 신청 500백만원, 문예진흥기금 50백만원 추가 확보
 - 도비 보조 증액지원 건의 등

평창노성정건립(공도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치 : 평창읍 하리
- 사업규모 : 공도장 1식 (연면적 493㎡)
- 사업비 : 235,000 천원
 - 국비 : 도비 : 30,000 군비 : 205,000
- 시행기간 : '94. 11 ~ '95. 10
- 현공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4. 9. 6	'94. 10. 26	'94. 10. 31	경쟁입찰	211,950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4. 11. 5	'95. 10. 31	'95. 10	증 11,982	223,932	유성종합건설(주)	이병식

※ 설계변경사유 : 건축물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실용성 도모

□ 문제점 및 대책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

사업개요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평창읍

○위 치 : 평창읍 종부1리

○사업규모 : 소각로 1기(195kg/hr)

○사 업 비 : 200,000천원(총사업비 200,000천원)

- 국비 : 도비 : 80,000 군비 : 120,000

○시행기간 : '95. 10. 10 ~ '96. 4. 7

○현 공 정 : 100%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9. 1	'95.10.10	'95.10.10	제한경쟁	170,0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 감액	변경금액		
'95.10.10	'96.5.23	-	-	-	현암물산 (주)	지방행정 주사 지형근

※설계변경사유

문제점 및 대책

달 동 네 정 비 사 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하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655m, B = 6 ~ 8m
- 사 업 비 : 440,000천원(총사업비 : 888,000천원)
 - 국 비 : 200,000 군 비 : 240,000
- 시행기간 : '95. 6. 10 ~ '96. 7. 24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5. 4. 30	'95. 5. 25	'95. 6. 5	일반 경쟁	175,444

착 공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 무 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6.10	96. 7.24	'95. 11.6	106956	282,400	유성건설 최상길	토목 7급 임현수

※ '95년말 특별교부세 200,000천원 교부로 신라연립 ~ 군수관사앞 도로 추가 확포장 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용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차질 우려
- 지속적인 협의 설득, 보상불가시 사업제외등 검토

여만리 농로 및 도수로 확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평창읍·면 여만리
 - 사업규모 : 도수로 350m(105,000천원), 농로 500m(75,000천원)
 - 사업비 : 180,000천원
 - 건의내용 : 도수로 옹벽설치 및 농로 확포장
 - 회신내용 : 농어촌도로 평창 농로 301호선으로 정비계획상 '97까지 확포장이 어려우며 '97이후 노선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도수로는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계획임.
 - 향후처리계획 : '97이후 노선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 확포장 계획임
- ※ 우선시급한 도수로 병행구간 350m는 '97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하여 경지정리내 농로는 '97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계획중임.

중리내수침수해소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평창읍·면 중리
- 사업규모 : 767㎡ 토지매입, 3동 가옥매입, 배수로 L = 45m (2.0X3.0m)
- 사업비 : 185,000천원(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185,000천원
- 시행기간 : '96. 3. 1 ~ 6. 30.
- 현공정 : 70% (보상비 지급완료)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지급결의	보상비지급일	산출방법	보상금액(천원)
'96. 3. 8 (감정의뢰)	'96.4.1	'96. 5.3	2개 감정평가 기관 감정후 산술평균	145,807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 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기본계획상의 하수구조물 미설치로 우수 배수불가
 우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불편 초래
- 대책 : 우수 및 오수가 원활히 소통 되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구조물
 (Box)시공 → '96 확보사업비 잔액사용 사업시행 계획임.

평창 우회도로 개설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하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1.5Km, B = 20.5m
- 사업비 : 6,659,000천원(총사업비 : 8,159,000천원)
- 국 비 : 8,159,000

○시행기간 : '94. 6. 20 ~ '96. 12. 31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4. 4.	'94. 5. 27	'94. 6. 15	일반 경쟁	6,615,000

착공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4.6.20	96.12.31	-	-	-	동화건설 (주)대양	토목7급 김우식

□ 문제점 및 대책

○없음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시행부서 : 문화공보실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읍 중부리 산66-6번지 일원
 - 사업비 : 6,655백만원(기확보 4,150백만원)
 - 사업기간 : '94~'98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가.건축면적(대·소공연석704석)에 비해 주차장시설(83대) 협소로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당초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건축면적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토록 할 계획임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연계 활용 - 운동장 순환도로 개설로 접근성 확보	완 결
나.공사감독공무원의 상근으로 시공업체,발주처,공사감리업체 등과 상호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는 공무원 감독근무체제를 강화시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보실에 기술직 공무원 미배치로 사업추진이 지난하므로 공사감독공무원(토목 또는 건축)을 공보실에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음	○'95. 11. 14 토목8급 1명 파견 배치 - '96. 4. 8 결원 과다로 건설과 복귀	추진중
다.'98년까지의 공사진행 중 총 공사비 증가액(물가연동제)에 대한 재원대책 및 향후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비, 도비, 문예진흥기금 추가확보를 위하여 중앙단위 관련부서에 다각도로 건의중에 있음 -기확보 : 2,300백만원 (도비1,700 문예기금 200 군비400)	○'97국비지원신청 - 500백만원 ○국·도비, 문예기금 추가확보 계속 추진	추진중
라.금년 예산에 계상된 총 공사비의 미집행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할수 있는 특별대책이 요구됨	○총확보예산 23억중 집행한 17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선설착공이 시급한 무대설비공사(기계,조명,음향공사 등)에 대하여 11월중 발주할 예정임	○건축골조 완공 후 발주 예정	완 결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달동네 정비사업

□ 시행부서 : 도시과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읍 하리

○사업비 : 888,000천원

○사업기간 : '95. 6. 10 ~ '96. 7. 24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달동네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의 도시계획 불합리성에 대한 현지검토없이 시행하므로 도로개설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확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폭이 학교운동장을 통과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평창 도시계획변경시 현재 개설 도로와 연결되도록 심층검토하여 조치할 계획	도시계획 변경시 검토 처리 계획	추진중
도로개설구간 총연장 405m중 중간연결도로개설이 없는 관계로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간도로개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차량이 통과하는 중간연결도로는 없으나 주민통행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므로 불편사항 없음 초등학교앞으로 도로연결시 학교주변 차량통제구역에 저속되므로 현 개설 도로에서 학교앞으로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함	도시계획변경시 검토 처리 계획	추진중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평창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매입 또는 성토나 토양개량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읍 중부리 985번지 일대의 침출수로 피해가 우려되는지역(12필지15,907m²)을 '96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임. ◦ 현매립장에 소각시설을 발주 중이며 동시설이 완료되면 쓰레기량의 감소로 오염을 줄일 수 있음. -소각시설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평창읍 중부리 985 · 용량:소각로1기(195kg/hr) · 사업비:195백만원 · 사업기간:'95.10.10~'96.5.23 ◦ 현매립장 포화상태전 신규 매립장조성 및 확장사용 방안을 충분히 사전검토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출수 피해지역 토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2필지 15,907m² - 사업비 : 177,984천원 - 매입일자 : '96. 4. 1 ◦ 소각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평창읍 중부리 985 - 용량:소각로1기(195kg/hr) - 사업비:195백만원 - 사업기간:'95.10.10~'96.5.23 ◦ 위생매립장 후보지 선정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 : 평창읍 마지2리 다래골

'95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노후분뇨 처리시설 수리 및 보수

시행부서 :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의 4필지

○ 사업비 : 1,205백만원(국비 855, 군비 350)

○ 사업기간 : '91. 11. 27 ~ '92. 11. 15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 분뇨 처리 시설의 암모니아 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각종 기기의 부식으로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수시점검 및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 각종 기계부품류 및 모터용량에 따른 종류별 예비조를 96 당초예산에 확보 구입 비치토록 할 계획이며, 암모니아 가스 및 각종 유해 가스 탈취 장치의 점차적인 개선과 함께 수시 정비 및 도색등으로 기계 부품의 부식 방지에 노력 하겠음	- 당초예산 확보로 일부품목 예비조 비치 - 수시정비 및 도색 작업 실시(80%) - 탈취장치 전문업체와 협의중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1군 1명품사업 (개량산머루재배)

□ 시행부서 :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읍 여만리

○ 사업비 : 321백만원 (국 100, 도 50, 군 50, 자담 121)

○ 사업기간 : '95. 1. ~ 12. 20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시설물(저온저장고, 작업창고, 포장시설 등) 설치지역의 인근 하천부지및 폐천부지를 매립하여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점용받은 하천부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향후 사업장 확장의 필요성이 발생시 활용방안을 검토 하겠음	현재까지 추가시설 계획이 없으며 향후 사업장 확장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음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평창상수도 취수보설치공사

□ 시행부서 : 도시과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읍 하리

○사업비 : 342,000천원

○사업기간 : '95. 5. 18 ~ '95. 12. 16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관문정비로 도로가 1m높아졌다고 하나 취수보설치 및 집수정3기의 설치로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홍수시 하천범람의 위험요인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 지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취수보 계획단면은 평창강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통수단면 결정 및 수리계산 결과에 의거 결정하였음	평창강정비 기본계획 검토결과에 의한 설계 시공 추진으로 완공	완료
취수장 상류지역 400m지점에 후평리 농경지 23만평에서 배출되는 농용수가 취수원으로 방류되어 오염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수로를 취수원 하류 쪽 까지 연결 상수원 보호대책 요망	상수도 수원은 원수 및 정수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은 하절기 2급수 그외에는 1급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수질측정으로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평창상수도 취수원 이전(여만리과수원앞)에 산반영(1회추경)	추진중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미 탄 면

목 차

- '96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 산 업 과
- 평안2리 농업용 관정설치 ————— 건 설 과
-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 환경보호과
- 농촌오수처리 시설사업 ————— 환경보호과
-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 도 시 과
- 상수도 여과사 교체사업 ————— 도 시 과
- 회동2리 도로정비사업 ————— 미 탄 면
- 한탄리 농로포장 사업 ————— 미 탄 면
- 창1리(돈너미) 마을길포장 ————— 미 탄 면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한탄 ~ 마하 군도확포장 ————— 건 설 과
 - 뒷별지구 받기반정비 사업 ————— 건 설 과
 - 백운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 도 시 과
 - 미탄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 환경보호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96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 업 과
- 위 치 : 미탄면 창 1리
- 사업규모 : 비가림시설 1ha
- 사 업 비 : 120,000천원 (총사업비 : 120,000천원)
 - 도비 24,096, 군비 35,904, 자부담 60,000
- 시행기간 : '96. 3. 1 ~ 7. 30
- 현 공 정 : 60%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 약 방 법	계약금액 (천원)
'96. 4. 29		'96. 3. 1	김형복, 조영환 자력설치	비가림시설 120,0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9	'96. 7. 30					지방행정서기보 김 종 근

□ 문제점 및 대책

없 음

평안 2리 농업용 관정 설치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미탄읍·면 평안2리
- 사업규모 : 착정(심도 150m, 채수량 250ml/day), 이용시설 1식
- 사업비 : 27,600천원(총사업비 : 50,000천원)

(※ 총사업비중 현재는 관정개발 사업만 발주)

- 국비 : . 도비 : 군비 : 27,600천원

- 시행기간 : '96. 4 ~ 11월
- 현공정 : 40%(공사중지)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2	-	'96. 4. 28	수의계약	24,30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9		-	-	-	두산엔지니어링	기능 10 김선정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채수량의 부족으로 2공을 시추 조사하였으나 채수가 안됨.
- 대책 : 정밀 재탐사(전기비저항탐사)후 개발여부 결정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

사업개요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미탄면

○위 치 : 미탄면 백운리 산 1-1

○사업규모 : 소각로 1기(95kg/hr)

○사 업 비 : 50,000천원(총사업비 50,000천원)

- 국비 : 15,000 도비 : 15,000 준비 : 20,000

○시행기간 : '95. 10. 10 ~ '96. 4. 7

○현 공 정 : 100%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8. 16	'95.10.10	'95.10.10	제한경쟁	44,0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 감액	변경금액		
'95.10.10	'96.2.7	-	-	-	현암물산 (주)	지방행정 주사 지 형 근

※설계변경사유

문제점 및 대책

농촌오수처리시설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미탄면
- 위 치 : 미탄면 창리
- 사업규모 : 오수처리시설 1식(250m³/일)
- 사 업 비 : 285,000천원(총사업비 285,000천원)
 - 국비 : 도비 : 142.5 군비 : 142.5
- 시행기간 : '95. 10. 7 ~ '96. 6. 16
- 현 공 정 : 90%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8. 30	'95. 9.29	'95.10. 6	제한경쟁	182,818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 감액	변경금액		
'95.10. 7	'96.6.16	'96.5.13	△6,418	196,667	그린종합 환경(주)	지방토목 서기 최 준 원

※설계변경사유 : 관로매설 토지소유자 사용승락 불가 및 민원발생으로
차집관로 변경

□ 문제점 및 대책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창1리
- 사업규모 : 노후관 교체 L = 300m
- 사업비 : 30,000천원(총사업비 : 30,000천원)
 - 군비 : 30,000
- 시행기간 : '96. 6. 3 ~ '96. 8. 3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6. 5. 28		'96. 5. 28	수 의	

착공 (예 일 자	준공 (예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6. 3	96. 8. 3					토목 8급 최준원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상수도여과사교체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미탄면)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 사업규모 : 여과사 교체 105㎡(2지)
- 사업비 : 18,533천원(총사업비 : 18,533천원)
 - 군비 : 18,533
- 시행기간 : '95. 6. 29 ~ '95. 7. 28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5. 6. 12	'95. 6. 29	'95. 6. 29	수 의	18,533

착공 일자	준공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6.29	95. 7.28				한국환경 공업(주)	토목 7급 고준태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회 동 2 리 도 로 정 비 사 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사무소
- 위 치 : 미탄면 회동2리(앞골)
- 사업규모 : L 273.5 M , B 3.5 M
- 사 업 비 : 12,990천원 (총사업비21,950천원. 순공사비12,990천원. 관급자재대8,960천원)
 - 국비 : 도비 : 3,897 군비 : 9,093 자부담 :
- 시행기간 : '96. 4. 26 ~ 6. 24
- 현 공 정 : 20 %
- 사업추진현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4		'96. 4. 26	수의	12,99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26	'96. 6. 24	-	-	-	삼광(주) (배선국)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한 탄 리 농 로 포 장 사 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사무소
- 위 치 : 미탄면 한탄리(고마루)
- 사업규모 : L 320 M , B 3.5 M , 홍배수관 1석
- 사 업 비 : 13,925천원 (총사업비25,000천원. 순공사비15,113천원. 관급자재대9,887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13,925천원 자부담 :
- 시행기간 : '96. 4. 26 ~ 6. 29
- 현 공 정 : 40 %
- 사업추진현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4. 24		'96. 4. 26	수의	13,925

착 공 (에 정) 일 자	준 공 (에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5. 1	'96. 6. 29	-	-	-	태창(합) (유인섭)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창1리 (돈너미) 마을안길포장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미탄면사무소

○ 위 치 : 미탄면 창1리(돈너미)

○ 사업규모 : L 340 M , B 3.5 M

○ 사업비 : 13,442천원 (총사업비25,000천원. 순공사비14,524천원. 관급자재대10,476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13,442천원 자부담 :

○ 시행기간 : '96. 5. 21 ~ 7. 20

○ 현 공 정 : 15 %

○ 사업추진현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5. 14		'96. 5. 16	수의	13,442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5. 21	'96. 7. 20	-	-	-	용평기업 (전도호)	최준원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한탄 - 마하간 군도 확포장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한탄리
- 사업비 : 404,400천원
- 사업기간 : '95. 5. 11 ~ '96.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입구 농가피해 대책마련 · 하천변 급경사해소 대책마련 · 터널구간 아스콘 포장 · 노후교량 양면에 중량제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 지장물 2등 보상처리계획 · 하천변 수해위험 예상구간은 석축 찰쌓기 보강 · 터널의 전면적인 낙석방지 대책은 어려우나 일부 불량구간 아스콘 소파보수계획 · 설계하중이 DB18T으로 통과하중 32.4톤 이상 통과치 못하도록 제한표지판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 2등 보상완료 후 노선조정 · 하천변 석축찰쌓기 시공완료(A = 49m) · 터널구간은 아스콘 소파보수 실시 · 노후교량에 대하여는 통과제한 표지판 설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뒷별지구 받 기반정비 사업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미탄면 창리
- 사업비 : 1,058백만원
- 사업기간 : '94. 11 ~ '95. 7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사업장 배수도가 낮고 좁아 우기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보완대 책 강구	'96경작 시기전 까지 구역내 배수로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시공 보완할 계획임.	○ 사업비 : 24,100천원 ○ 사업량 : 932m (수로관 시공) ○ 준 공 : '96. 5. 14 ※ 수해복구사업으로 조치완료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백운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시행부서 : 도시과

사업개요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사업비 : 50,000천원

○사업기간 : '95. 10. 18 ~ '95. 12. 31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총공사비 5,800만원중 주민이 부담토록된 800만원은 소수 오지가구에게 큰부담을 주고 있음 금후 간이상수도 설치시 주민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평창군 재정형편상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일시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주민자부담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평창군 공동급수시설 관리조례상 자부담 비율은 50%임)	자부담 주민협의 결과 부담토록 협의됨에 따라 자부담 결정 추진	추진중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미탄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 사업개요

○ 위 치 : 미탄면 백운리 산 1-1번지

○ 사 업 비 : 230,000천원

○ 사업기간 : '96. 4. 1 ~ '96. 9. 30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가. 우수와 침출수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류지역 오염을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요철 이 심해 동절기 운행이 지 난 것으로 사료 되는바 현 도 도에서 최단거리 진입로 개설 을 검토하고 노면을 포장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p>	<p>○ 현재 추진중인 미탄쓰레기 매립장조성시 우수 및 침출수 의 분리배출로 하류지역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극반영 중임</p> <p>○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신규 진입도로 개설은 불가 의견을 표명하여 현재의 도로 를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p>	<p>○ 미탄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p> <p>- 규 모 : 6,088m²</p> <p>- 매립방법 : 준호기성위생 매립시설</p> <p>- 사업내용 : 매립장조성1식 침출수집수정1식 소각로1기</p> <p>- 입 찰 : '96. 3. 1</p> <p>- 계 약 : '96. 3.29</p> <p>- 착 공 : '96. 4. 1</p> <p>- 진 도 : 기초토공 작업중</p>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방 립 면

목 차

- 수동지구 경지정리사업 _____ 건 설 과
- 계촌천 수해복구 사업 _____ 건 설 과
- 계촌교 수해복구 사업 _____ 건 설 과
- 방림~계촌~둔내간 군도수해복구공사 _____ 건 설 과
- 계촌6리 수해복구공사 _____ 사회진흥과
- 방림3리 2번국도 낙석위험지구 _____ 건 설 과
-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_____ 방 립 면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계촌3리) _____ 방 립 면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평창군시범공설묘지 조성 _____ 가정복지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계촌3리) _____ 방 립 면
 - 운교1~3리간 농촌도로 확포장 _____ 건 설 과
 - 계촌4,6리 간이상수도시설공사 _____ 도 시 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수동지구경지정리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방림읍·면·계촌1리
- 사업규모 : 14.39ha
- 사업비 : 473,203천원(총사업비 : 473,203천원)
 - 국비 : 266,476 도비 : 103,363 군비 : 103,364
- 시행기간 : '95. 11. 15 ~ '96. 7. 3
- 현공정 : 98%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0. 20	'95. 11. 10	'95. 11. 15	공개경쟁	303,643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1. 21	'96. 7. 18	-	-	-	(주)우일	농조연 감리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계촌천수해복구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방림읍·면 운교리
- 사업규모 : 축제·호안 L = 795 m
- 사업비 : 142,000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102,240 도비 : 군비 : 39,760
- 시행기간 : '96. 3. 20 ~ '96. 8. 16.
- 현공정 : 4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천원)
'96. 1. 26	'96. 3. 27	'96. 3. 14	일반경쟁	103,048

착공 일자	준공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 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3.20	'96.8.16				구산건영(주)	한두정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집중 호우로 유실된 부분만 피해복구비가 확정되었는바 현지 시공측량 검토한바 부분 복구보다는 홍수량 계산에 의한 항구복구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체구간 측량설계한바 복구연장이 1,200m이나 책정된 사업비 예산으로는 800m정도만 복구가능하며 미복구 물량 400m는 금번 축제만 시공되어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 발생 우려
- 대책 : 하천수해복구 입찰잔액을 사용 잔여물량 시공계획이며 부족사업비* 예산은 추후 예산확보후 사업추진 계획임.

계촌교수해복구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방림읍·면계촌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 = 43m(B = 9.0m), 진입로 확포장 L = 47m
호안공 A = 378m
- 사업비 : 420,000 천원(총사업비 : 420,000 천원)
- 국비 : 310,800 도비 : 군비 : 109,200
- 시행기간 : '96. 3. 18 ~ '96. 9. 13
- 현공정 : 3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천원)
'95. 11. 30	'96. 2	'96. 3. 15	경쟁 입찰	294,71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3. 18	'96. 9. 13	-	-	-	삼진종합건설 (주)	김찬수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방림-계촌-둔내간 군도 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방림 읍·면 방림 - 계촌 리
- 사업규모 : 도로복구 L = 460m, 석축 A = 699㎡, 옹벽(H = 2 ~ 4m) L = 90m
암거(1.5 × 1.5) L = 15m
- 사업비 : 120,458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91,548 도 비 : . 군 비 : 28,910
- 시행기간 : '95. 12. 21 ~ '96. 9. 5
- 현 공 정 : 6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천원)
'95. 11. 30	-	'95. 12. 21	수의 계약	90,40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12. 21	'96. 9. 5	-	-	-	드림랜드(주)	김 찬 수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계촌6리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 위 치 : 방림면 계촌 6리
- . 사업규모 : 석축 L = 310m
- . 사업비 : 41,900 천원
 - 국비 : 20,112 도비 : 4,190 군비 : 17,598
- . 시행기간 : '96. 3. 29 ~ 6. 29
- . 현 공 정 : 85%
- . 사업추진현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5		'96. 3. 29	수의계약	35,240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내역		
'96. 4. 1	'96. 6. 29	-	-	-	일광건설	김 만 중

□. 문제점 및 대책

방림 3리 2번군도 낙석위험지구

□ 현 황

- 노 선 명 : 운교 - 방림(군도 2호선)
- 노선연장 : L = 13.8Km(B = 7.5 ~ 8.0m)
- 노선 지정일 : '94. 7. 30
- 낙석발생구간 : 2개소 L = 250m

□ 기 추진사항

- 매년 낙석발생되는 양을 조사하여 낙석제거 및 낙석방지망 설치 및 보수하고 있음
- '95년도 정비실적

— 사업량 : 2개소 L = 150m
— 사업비 : 8,000천원
— 사업기간 : '95. 6. 23 ~ '95. 8. 9

□ 금후 정비계획

- 금후 발생하는 낙석에 대하여는 방지망 보수외에 가비온 설치 또는 사면정리를 '97년도에 군도유지관리 양여금으로 정비할 계획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운교1리 (목넘어)
- 사업규모 : 석축 94m , 옹벽 20m , 세월교 1식 , 소교량 1식 (8m)
- 사업비 : 38,800 천원 (총사업비: 38,800 천원)
 - 국비 : 18,624천원 도비 : 3,880천원 군비 : 16,296천원 자부담 : 0
- 시행기간 : '95. 12. 1 ~ '96. 6. 30
- 현 공 정 : 2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5	'95. 12. 1	'95. 12. 1	수의계약	28,158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2. 2	'96. 6. 30	-	-	-	태창건설 (합) 유인섭	조현희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공사감독 결원으로 '96. 4. 26 부터 공사 중지 상태임.
- 대책 : 인근 읍면 및 군청에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의뢰 중.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방림1리, 방림5리, 계촌4리
- 사업규모 : 방림1리 ┌ 석축 47m 방림5리 : 석축 50m 계촌4리 : 석축 58m
└ 옹벽 10m
- 사업비 : 25,600 천원 (총사업비: 25,600 천원)
 - 국비 : 12,288천원 도비 : 2,560천원 군비 : 10,752천원 자부담 : 0
- 시행기간 : '95. 12. 1 ~ '96. 6. 30
- 현 공 정 : 3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5	'95. 12. 1	'95. 12. 1	수의계약	21,298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2. 2	'96. 6. 30	-	-	-	선우건설 (주) 김정규	조현희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공사감독 결원으로 '96. 4. 26 부터 공사 중지 상태임.
- 대책 : 인근 읍면 및 군청에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의뢰 중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운교2리, 운교3리
- 사업규모 :

운교2리	석축 137m	운교3리	석축 40m
	옹벽 12m		옹벽 20m
	압거 1기		
- 사업비 : 39,100 천원 (총사업비: 39,100 천원)
 - 국비 : 18,768천원 도비 : 3,910천원 군비 : 16,422천원 자부담 : 0
- 시행기간 : '95. 12. 1 ~ '96. 6. 30
- 현 공 정 : 3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5	'95. 12. 1	'95. 12. 1	수의계약	31,063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2. 2	'96. 6. 30	-	-	-	선우건설 (주) 김정규	조현희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공사감독 결원으로 '96. 4. 26 부터 공사 중지 상태임.
- 대책 : 인근 읍면 및 군청에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의뢰 중.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운교리 (비네스골)
- 사업규모 : 석축 163m , 응벽 10m , 포장 68m
- 사업비 : 30,900 천원 (총사업비: 30,900 천원)
 - 국비 : 14,832천원 도비 : 3,090천원 군비 : 12,978천원 자부담 : 0\
- 시행기간 : '95. 12. 1 ~ '96. 6. 30
- 현 공 정 : 2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5	'95. 12. 1	'95. 12. 1	수익계약	23,81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2. 2	'96. 6. 30	-	-	-	태창건설 (합) 유인섭	조현희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공사감독 결원으로 '96. 4. 26 부터 공사 중지 상태임.
- 대책 : 인근 읍면 및 군청에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의뢰 중.

소규모숙원사업 (소교량)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계촌3리
- 사업규모 : 상판1기 (20m) , 날개벽 4식 , 진입로 1식
- 사업비 : 75,000 천원 (총사업비: 75,000 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75,000천원 자부담 :
- 시행기간 : '95. 12. 1 ~ '96. 6. 30
- 현 공 정 : 0 % (설계심사의뢰 중)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	-	-	-	-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	-	-	-	-	선우건설 (주) 김정규	-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감독 공무원 결원으로 공사 미착공.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평창군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

□ 시행부서 : 가정복지과

□ 사업개요

○ 위치 : 방림면 방림리 산 702번지 일원

○ 사업비 : 10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95. 9. 27 ~ '96. 6. 8 ('95이월)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고
인근지역주민의 편의를최대보 고충으로재원 이충투자도 느려가없도 하에시공이 루어져야할것 임.	· 인근지역(배골) 마을 길포장 완료 : 600m · 공설묘지 실시설계에 마을주민 식수이용 반영 : 실시설계 완료 ('95.12.30) · 마을길 포장 추가분 추진 : L=40m	· 방림2리 배골 마을 안길 포장 추진 -기간:96.5.20~10.30 -사업비: 8,000천원 -사업량: L=40m -재원:군수포괄사업비 -시행부서:방림면 · 공설묘지실시설계 강원도지방건설심의 위원회 심의중(5월) -배골주민 식수량 확 보 반영	추진중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교량가설)

시행부서 : 방 립 면

사업개요

○ 위 치 : 방림면 계촌3리

○ 사업비 : 35,000천원

○ 사업기간 : '95. 4. 12 ~ '96. 6. 9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p>가. '95당초예산에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중 3,500만원을 계상 교각만 설치한 상태이므로 잔여 부분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수립 관련 주민에 홍보하여 선심성, 선거성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여야 할것임.</p> <p>나. 총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사업자에게 연계 사업을 시킴으로 특혜 시비가 대두하며, 특히 향후 사업이 불분명함에도 총가입찰 한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회계관리자 지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p>	<p>가.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96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p> <p>나. 회계관계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p>	<p>'96 당초예산확보 75,000천원. 금년 마무리 예정.</p>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운교 1 - 3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 사업비 : 759,536천원
- 사업기간 : '95. 5. 9 ~ '95. 12. 20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 예산집행 잔액이 동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 및 설계와 현지 상이한 사항중 추가시 공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후 예산을 증액 투자할 계획임.	· 시공중 발생한 민원 및 설계변경 요인을 포함 예산잔액을 재투자 설계변경 시공완료 하였음. - 설계변경일 ⇒ '95. 11. 22 - 변경증액금액 ⇒ 98,821천원 - 준 공 일 ⇒ '95. 12. 20	· 완결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계촌4,6리 간이상수도시설공사

□ 시행부서 : 도시과(방림면)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 4, 6리

○사업비 : 32,000천원

○사업기간 : '95. 8. ~ '95. 11.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개인별 급수희망가구에 대한 지선의 관로재료가 K.S규격 품이 아닌 제품으로 매설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 관련주민의 의 독 해소가 필요함	시공업체(평창수도공무소)와 매설된 자재 현지확인 실시	지선급수공사에 사용 PE관은 강원산업 제품으로 KS규격품임(제작 회사별로 색깔 상이)	완료
급수가구별로 설치한 계량기는 사업완료 후 설치하여도 늦지 않으나 급수전 설치하므로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자부담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바 관련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가 필요함	수도계량기 설치하는 간이상 수도의 주민차율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계량기검침에 의한 관리요금 징수로 전기료납부등 효율을 기하고자 시설하는 것임	수도계량기의 전가구 설치완료 : 64가구	완료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대 화 면

목 차

- 평창군문화체육관 건립 _____ 사회진흥과
- 대화문화마을 조성사업 _____ 건설과
- 선애지구 경지정리사업 _____ 건설과
- 땀봉지구 경지정리사업 _____ 건설과
- 군도4호선(대화3~개수리)도로 _____ 건설과
- 대화면 하수도시설현황 _____ 도시과
- 미날교 가설공사 _____ 건설과
-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 _____ 환경보호과
- 대화산업(주) 현황(신2리) _____ 지역경제과
산 립 과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대화문화마을 조성사업 _____ 건설과
 -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사업 _____ 건설과
 - 대화쓰레기소각로 운영실태 _____ 환경보호과
 - 대화4~7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_____ 건설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평창군문화체육관건립사업

□ 사업개요

- 시 행 부 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대화면 대화리
- 사 업 규 모 : 체육관 1식 (연면적 2,737㎡)
- 사 업 비 : 600,000 천원
 - 국비 : 도비 : 300,000 군비 : 300,000 자부담 :
- 시 행 기 간 : '95 ~ '97
- 현 공 정 : 1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 약 금 액 (천원)
'95. 8. 30	'95. 10. 25	'95. 11. 3	경쟁입찰	1,538,663 (건축, 전기, 소방, 감리)

착 공 (예 일) 일 자	준 공 (예 일)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1. 9	'97. 12. 31				유성종합건설(주)	신 승 호

□ 문제점 및 대책

대화문화마을조성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대화읍·면 대화5리
- 사업규모 : 부지조성 17,000평
- 사업비 : 3,732,000 천원(총사업비 :3,732,000 천원)
 - 국비 : 1,400,000 도비 : 300,000 군비 : 300,000 용자 : 1,732,000
- 시행기간 : '95. 7. 6~'96. 7. 6
- 현공정 : 7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천원)
'94. 8. 11	'95. 6. 23	'95. 6. 30	위탁 계약	684,717 ('96년분)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7. 6	'96. 7. 6	-	-	-	두일종합건설	농진공 위탁시행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선 애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 설 과
- 위 치 : 대화 읍 · 면 상안미2 리
- 사업규모 : 15.38ha
- 사 업 비 : 446,120 천원 (총사업비 : 446,120 천원)
 - 국 비 : 272,057 도 비 : 87,031 군 비 : 87,032천원
- 시행기간 : '95. 11. 22 ~ '96. 7. 18
- 현 공 정 : 98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 약 금 액(천원)
'95. 10. 20	'95. 11. 9	'95. 11. 17	공개경쟁	255,83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11. 22	'96. 7. 18	-	-	-	대흥건설(합)	농조연 감 리

※ 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땀 봉 지구 경지 정리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대화읍·면 신리
- 사업규모 : 38.92ha
- 사업비 : 1,390,751천원 (총사업비 : 1,390,751천원)
 - 국비 : 723,199 도비 : 333,776 군비 : 333,776
- 시행기간 : '95. 11. 17 ~ '96. 7. 13
- 현공경 : 98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천원)
'95. 10. 20	'95. 11. 10	'95. 11. 15	공개경쟁	892,882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1. 17	'96. 7. 13	-	-	-	(주) 태 립	농조연 감리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군도 4호선 (대화3리 ~ 개수리)

□ 현 황

- 노 선 명 : 계촌 - 대화 (군도 4호선)
- 노선연장 : L = 27.4Km
- 노선 지정일 : '94. 7. 30
- 구 간 : 방림면 계촌리 ~ 대화면 대화 3리

□ 금후 정비계획

- '99년도까지는 군도증기 정비계획 미포함
- '99년도 이후 정비계획 재수립후 년차적으로 확포장 계획임.

대화면 하수도 시설현황

□ 일반현황

- 도시계획구역 면적 : 3.297km
- 하수처리계획 면적 : 5.0943km
- 하수처리계획 인구 : 5,800명
- 계획 하수량(2011년 기준) : 2,500m³/일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수립구역 : 대화도시계획구역 및 유입구역
- 수립면적 : 5.0924km²
- 기본계획수립승인일시 : '96. 1. 25(환경부 수도 6712 - 49)

□ 대화면 하수도 시설현황

○기존시설	—————	8.8Km
┌		
└ 암 거	—————	1.9Km
┌ 관 거	—————	4.4Km
└ 개 거	—————	1.0Km
└ U형측구	—————	1.5Km

○신설 및 확장 하수관거 계획

- 계획연장	—————	34Km
┌		
└ 암 거	—————	2.6Km
└ 관 거	—————	31.4Km

- 소요사업비 : 3,031백만원

미 날 교 가 설 공 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 설 과
- 위 차 : 대 화 읍 · 면 상 안 미 리
- 사업규모 : 교 량 가 설 L = 120m(B = 7.0m)
- 사 업 비 : 300,000 천 원 (총 사업비 : 1,152,000 천 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300,000
- 시행기간 : '96. 9. 1 ~ '97. 12. 31
- 현 공 정 : -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 약 금 액(천원)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6. 9. 1	'97. 12. 31	-	-	-	-	-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군비 재원부족으로 미가설중에 있는 교량으로 '96년 1회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전체분 설계후 분할 발주할 계획임.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

사업개요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대화면

○위 치 : 대화면 대화8리

○사업규모 : 위생매립장조성 1식(32,244m²)

- '96이전시설 : 소각시설 1기(300kg/hr), 재활용선별창고 1동

- '96시설 : 매립장진입로 및 매립장조성(토공)

- '96이후시설 : 매립장조성(16,000m²), 침출수처리시설 1식

○사 업 비 : 440,000천원(총사업비 2,417,00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440,000

○시행기간 : '96. 8. ~ '97. 12

○사업추진상황 : 입지여건 등 환경성검토 의뢰
원주지방환경청('96. 5. 18 ~ 6. 18)

문제점 및 대책

대화산업개발(주) 현황

□ 일반현황

- 광업권등록번호 : 제58213호(창동지적 27호)
- 광종명 : 규 석
- 광업권자 : 장평광업(주) <대표 : 김기주>
- 소재지 : 대화면 신2리 산214번지
- 조광권자 : 대화산업개발(주) <대표 : 이명우>
- 조광권등록번호 : 제2398호 ('94.11.15 ~ '99.10.31)

□ 민원발생현황

- 대화면 신2리 주민 민원제기 ('95. 12. 5)
- 민원요지
 - 농지정리 및 객토사업 지원요구
 - 발파소음 대책강구
 - 진,출입 도로포장 등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 주민 민원제기에 따른 광산업체와 협의서 작성 ('95. 12. 11 대책협의회 개최)
- 협의서 내용
 - 농지정리 및 객토사업 지원 : 농지정리시 중장비 무상지원 및 객토지원
 - 발파소음 대책강구 : 발파 1일전 사전통보 및 발파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실시
 - 진,출입 도로포장 등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 광산 진,출입 도로포장 실시 (광산업체 자부담)

□ 추진상황

- 광산 진,출입 도로포장 실시
 - 착공일 : '96. 5. 1
 - 준공일 : '96. 5. 13
 - 사업량 : L= 470m B= 4m
 - 사업비 : 46,000천원(광산업체 자부담)

대화산업개발(주) 산림분야 허가 현황

□ 균유림 사용 허가

허가구분	허가 일자	허가면적	수 허가 자		비 고
			주 소	성 명	
당 초	' 90. 12. 15	10,992㎡	대화면 신리 255	김 기 주	
추 가	' 91. 7. 19	7,356㎡	"	"	
"	' 92. 2. 29	5,125㎡	"	"	
명의변경	' 94. 12. 14	23,473㎡	대화면 신리 255	이 명 우	
재 계약	' 96. 2. 16	38,043㎡	대화면 대화리 1179 - 1 대화산업개발(주)	이 명 우	

□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

허가구분	허가일자	허가 기간	허가면적	수 허가 자		비고
				주 소	성 명	
신 규	' 91. 3. 5	' 91. 3. 30 ~ ' 91. 12. 31	10,992㎡	대화면 신리 255	김 기 주	
연기 및 추가	' 92. 1. 8	' 92. 1. 21 ~ ' 92. 12. 31	23,478㎡	"	"	
연 기	' 92. 12. 30	' 93. 1. 1 ~ ' 95. 12. 31	23,478㎡	"	"	
지위승계	' 94. 12. 16	' 94. 12. 16 ~ ' 95. 12. 31	23,473㎡	대화면 신리 255	이 명 우	
재 허가	' 96. 3. 5	' 91. 3. 5 ~ ' 96. 12. 31	38,043㎡	대화면 대화리 1179 - 1 대화산업개발(주)	이 명 우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대화 문화마을 조성사업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차 : 대화면 대화5리
- 사업비 : 3,732백만원
- 사업기간 : '95. 7 ~ '96. 7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사항을 시행청과 협의, 수시 관련지역 주민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구 ◦ 택지분양 공고이전 우선순위 결정방법등 면밀히 검토후 지역주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사업시행과 관련 읍면과 균간 유기적인 공조체제 연대 강구 	<p>'93. 2. 23일 대화면 사무소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기본구상 설명회를 비롯 2차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95. 11월 중순경 현장사무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임(공청회시 추진 계획, 분양계획 방법, 용자계획등 모든 제반 사항 설명)</p>	<p>○ '95. 11. 14일 현장 사무실에서 공청회 개최 - 분양방법 및 용자계획등 설명</p>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신리
- 사업비 : 908,222천원
- 사업기간 : '95. 5. 15 ~ '96. 8. 22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으로 발생한 일부피해 사례에 대한 완벽한 대책강구. · 지역발전 대책도출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공구 지장물 소유자에게 본 사업취지 설명및 다방면 설득하고 계획수립시는 지역주민 공동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코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공구 지장물 소유자인 전재선씨와 지속적인 협의로 보상철거 계획중에 있음. · 공사구간내 발생하는 민원은 사전설명및 이해 설득등으로 해결 완료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대화 쓰레기소각로 운영실태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가. 쓰레기소각장의 진입로가 급경사로 결빙시에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동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p>	<p>○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의 결빙이 우려되는 동절기 동안 가동중지를 검토중이며 진입 도로를 현재 보수하여 사용중임. 진입도로 포장사업비를 '96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p>	<p>○ 대화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 규 모 : 32,244㎡ - 매립방법 : 준호기성위생 매립시설 - 사 업 비 : 440백만원 - 사업내용 : 매립장조성1식 침출수집수정1식 진입로포장(1,088㎡) - 추진상황 : 설계완료 입지여건등 환경성검토의회 원주지방환경청('96.5.18~6.18)</p>
<p>나. 기기 가동에 필요한 물유입으로 발생하는 많은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p>	<p>○ 소각로 가동에 필요한 물은 1일 12.5톤으로 3톤은 수중기로 9.5톤은 폐수로 발생되며 발생된 폐수는 약품처리하여 1톤은 방류하고 8.5톤은 재이용하고 있으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할 계획임.</p>	
<p>다. 쓰레기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열관리 요원, 약품처리요원 등) 및 제반시설 운전, 유지(유류비, 인력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p>	<p>○ 쓰레기 소각을 위한 기술인력 1명(보일러공)을 '95. 11월 중 확보하여 가동하고 쓰레기 봉투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구분 제작, 배부 하였으며 철저한 분리수거로 소각효율을 높여 유지비를 절감토록 할 계획임.</p>	<p>○ 보일러공 1명 확보로 정상 운영 가동중 임.</p>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라. 압축진개 청소차 운행중 도로에 흐르는 오수로 시가지에 악취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운영하기 바람.</p>	<p>○ 압축진개 청소차에 오수배출구를 별도로 만들어 시가지 운행시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p>	<p>○ 압축진개 청소차에 오수배출구 제작으로 오수로 인한 악취발생은 전혀 안되고 있음</p>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대화4 ~ 7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4리
- 사업비 : 381,612천원
- 사업기간 : '95. 6. 5 ~ '96. 9. 18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 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이전 완공 될수 있도록 대책마련	·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11월중으로 구조물 시공완료할 계획임	·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후 시공중에 있으며 구조물 시공은 동절기 이전인 11월중으로 완료하였음. 절대공기 부족으로 96사 고이월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음.	· 완결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봉 평 면

목 차

- 남안교 가설공사 _____ 사회진흥과
- 봉평도읍정비사업 _____ 사회진흥과
- 봉평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_____ 도 시 과
- (주)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사업 _____ 사회진흥과
- (주)보광 휘닉스파크 오.폐수시설 _____ 환경보호과
- 불법 축사시설(곽희중) _____ 봉 평 면
- 고래뱃속 식당(문종욱) _____ 봉 평 면
- 메지동천(소하천) 정비사업 _____ 건 설 과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봉평도읍 정비사업 _____ 사회진흥과
 - 금산교 가설공사 _____ 건 설 과
 - 보광 관광시설에 대한대책 _____ 환경보호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남안교가설공사

□. 사업개요

-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 위 치 : 봉평면 창동리
- . 사업규모 : 교량 L = 145m, B = 9m , 접속도로 L = 221m, B = 8m
- . 사업비 : 458,891 천원 (총사업비 : 1,093,875 천원)
 - 국비 : 264,951 도비: 56,775 군비: 137,165
- . 시행기간 : '95. 12. ~ '97. 12. 31
- . 현 공 정 : 25 %
- . 사업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3	'95. 12. 15	'95. 12. 22	일반경쟁 도급계약	749,876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내역		
'95.12.26	'97.12.31	-	-	-	부영산업(주) 김 기 현	임 광 수

□. 문제점 및 대책

봉평도읍정비사업

□. 사업개요

-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 위 치 : 봉평면 창동리
-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1,661m, 상수관부설 1,881m, 하수도시설 2,249m
용수로 132m, 암거 3개소 39m
- . 사업비 : 553,000천원 (총사업비 : 4,228,000천원)
- 국비 : 453,500 도비 : 610,500 군비 : 3,164,000
- . 시행기간 : '93. 10. ~ '96. 11. 15
- . 현 공 정 : 35 %
- . 사업추진현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3. 8. 6		'93. 10. 11	일반경쟁 도급계약	418,308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내역		
'93. 10. 13	'96. 11. 15	95. 12. 11	146,743	565,051	부영산업(주) 김 기 현	임 광 수

※ 설계변경사유 : 불량변동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 문제점 및 대책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일원
- 사업규모 : 상수도시설확장 Q = 8,700T/D
- 사 업 비 : 1,250,000천원(총사업비 : 7,600,000천원)
 - 군 비 : 1,250,000
- 시행기간 : '95. 11. 23 ~ '97. 12. 30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5. 11. 15	'95. 12. 8	'95.12. 15	일반경쟁	1,248,443

착공 일자	준공 (예 일)자	실제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12.19	96.12. 5				경산건설 김종남	토목 7급 고준태

□ 문제점 및 대책

- 취수원 선정에 따른 주민의견 대립(현 취수원 ↔ 홍정천 상류)으로
취수원 위치선정 지연
- 취수원 위치의 주민합의 도출시까지 송·배수관로 및 정수시설을 우
선시공하고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취수원 확정

(주)보광 휘닉스파크골프장사업

□ 사업개요

- 사업 시행자 : 보광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준시)
- 위치 : 봉평면 면온리 산249번지 일원
- 사업 규모
 - 부지 면적 : 1,040,691m²
 - 코스 (홀) : 18홀 72과 321,510m²
 - 건축 시설 : 클럽하우스 외 6종 4,955m²
- 사업비 : 민자 300억원
- 사업기간 : '95. 2 ~ '98. 2
- 현공정 : 35%
- 주요추진상황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강원도)	환경영향평가협의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사업계획승인 (강원도)	착공계획 서 제출
'93. 3. 30	'93. 10. 23	'94. 12. 5	'95.2.24

□ 문제점 및 대책

- 개발에 따른 흙탕물 하천유입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
⇒ (주)보광의 탁류방지시설 설치(32,000m²) : 현공정 15%
- 맹독성 농약사용을 우려한 하류지역주민 집단시위발생 예상
⇒ 골프장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감독 강화

□ 오. 폐수처리시설 현황

○ 종합오수처리시설

- 소재지 : 봉평면 면온리 852 번지
- 처리대상인원 : 4,000명
- 처리 용량 : 5,000m³/일
- 처리 방법 : 장기폭기 + 화학적처리 + 가압부상 + 여과시설
- 준공 일자 : '95. 1. 28 ,

○ 여자기숙사 오수처리시설

- 소재지 : 봉평면 무이리 814-2번지
- 처리대상인원 : 500명
- 처리 용량 : 90m³/일
- 처리 방법 : 접촉산화법
- 준공 일자 : '95. 11. 11

○ 남자기숙사 오수처리시설

- 소재지 : 봉평면 무이리 1044-2번지
- 처리대상인원 : 900명
- 처리 용량 : 190m³/일
- 처리 방법 : 접촉산화법
- 준공 일자 : '95. 12. 7

불법축사 건축물

□ 사업개요

- 사업부서 : 봉평면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29번지
- 사 업 비 : 40,000,000원(용:26,891,000원 자:13,109,000원)
- 사업기간 : '95. 10. 23 ~ '95. 12. 31('96. 5. 27일까지 연기)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고
불법건축물확인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자진철거 ('96.5.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2.9일 축사신고 접수 · '95.12.28일 불법축사 공사중지및 원상 복구 지시 · '96.2.26일불법축사 적발보고 · '96.2.29일불법축사 조치사항 통보 · '96.3.30일까지원상 복구지시(건설과) · '96.4.30일까지원상 복구1차지시(건설과) · '96.5.31일까지원상 복구2차지시(건설과) 	추진중

불법증축 건축물

사업개요

○ 사업부서 : 봉평면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창동1리 286-5번지(문중옥)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불법건축물확인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자진철거 ('96.5.31일까지)	. '95.6.29일 건축물 불법증축 중지통보 . '95. 7.19일 건축물 불법증축 사항보고 (사회과에미조치사항 보고) . '96.3.14일불법건축 물 자진철거 및 원 상복구 지시 ('96.5.31일까지)	추진중

매지동천(소하천)정비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봉평 읍 · 면 덕거2 리
- 사업규모 : 축계 · 호안 840m, 주차장 1개소 (A = 820㎡), 파고라 1개소, 기타 1식
- 사업비 : 147,000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147,000 천원
- 시행기간 : '95. 8.19 ~ '96. 5.29.
- 현 공 정 : 100 % (주차선 미도색)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 약 금 액(천원)
'95. 7. 6	'95. 8. 8	'95. 8.17	공개경쟁	110,50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금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8.19	'96.5.29	'96. 5. 5	5,200	115,700	유성종합건설(주)	한두정

※ 설계변경사유 : 주민건의로 토사유출방지 목적으로 줄폐시공 및 주차장과의 연결 진입로 con,c 포장
 면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조성한 공원지구의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줄폐시공 및 주차장과 연결되는 진입로 포장 추가 시공

□ 문제점 및 대책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봉평도읍 정비사업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사업개요

○ 위치 : 봉평면 창동리

○ 사업비 : 4,228백만원(국비 453,500천원, 도비 610,500천원, 군비 3,164,000천원)

○ 사업기간 : '93. 10 ~ '96. 11. 15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p>가. 봉평도읍정비는 '93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으로 현재 재개발 토지 및 건물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행정기관과 보상추진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의로 보상문제가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 사업시행과 병행 보상협의 및 철거추진중에 있음.</p> <p>-사업착수일:95.10.13 -보상협의 대상: 22명 -지장물철거대상:16명 -협의반 운영: 2개반</p> <p>· 군 : 1개반 · 면, 추진위원회합동 : 1개반</p>	<p>· 협의반 운영 : 2개반 - 군 : 1개반 - 면, 추진위원회 합동 : 1개반</p> <p>-실적 - 건물철거 4 동 - 토지협의 11 필</p>	추진중
<p>나. 도읍정비 추진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군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울러</p>	<p>· '96군비부담 553백만원으로 사업마무리 하겠음.</p>	<p>· 봉평도읍 마누리 사업비 553백만원 '96당초예산 확보</p>	추진중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p>구되어야 할 것임.</p> <p>다. 도읍정비로 철거 농가에 대한 택지분 양(12농가)의 조기 발주로 도읍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p>	<p>.택지예정지 분양완료 - 분양: '95. 9. 29</p>	<p>. 택지예정지분양추첨완료 : '95. 9. 29 .분양지계약완료 : '95. 12. 16 .분양규모 : 11농가 11필지</p>	<p>완 료</p>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금산교 가설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 사업비 : 238,560천원
- 사업기간 : '95. 6. 26 ~ '96. 4. 12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진입 접속도로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대책검토. · 교량가설의 타당성 문제는 관계부서의 설득력있는 홍보로 해결하고 동절기 시공이 되지않도록 조기 마무리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설계시 교량가설 타당성및 진입도로 확보를 충분히 검토 하였으며 착공후 동절기 이전 완료토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도로는 충분히 확보하여 시공 완료하였으며 '96년도 사고이월하여 교면포장및 부대공시공후 준공완료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보광 관광시설에 대한 대책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가.개발을 전후하여 수시 생태계 조사를 실시, 기록을 유지하므로 향후 군민의 피해의식 해소와 시행업체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p> <p>나.개발 시기와 관련 우기를 피하는 등 시공업체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선 수시 확인·지도점검을 실시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연대관리 체계구축이 필요 함.</p>	<p>○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평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주)보광으로 하여금 생태계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의뢰 협의 검토 중임.</p> <p>○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조(저류조)를 수시 확인·점검으로 흙탕물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p> <p>○ 흙탕물방지 대책으로 면은천 탁도를 1일 2회 측정하여 철저한 수질감시로 탁도 상승시 방류지점 확인후 침사조(저류조)로 유입 무단방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음.</p>	<p>○ 스키장지구 토사유출방지 시설 · 침사지:4개소(9,739m²) · 부유물질 침전을 위한 약품(응집제)투입시설 : 4개소(4,286m²)</p> <p>○ 골프장지구 토사유출방지 시설 · 침사지:5개소(41,036m²)</p> <p>○ 면은천 1일 2회 탁도측정으로 토사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질감시를 하고있으며, 수시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침사지 및 침전지의 지도·관리로 탁류방류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p> <p>※탁류정화시설 설치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 착 공 : '96. 4. 15 - 완 공 : '96. 6. 20경 - 용 량 : 50,000m³ - 사업비 : 1,000백만원</p>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용 평 면

목 차

- 재산지구 받기반정비사업 ————— 건설과
- 저온저장고 사업 ————— 사회진흥과
- 무이~상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 건설과
-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지구 기반시설 ————— 도시과
확충사업
- 농촌오수처리 시설사업 ————— 환경보호과
- 백오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도시과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오지개발사업(용평지구)저온저장시설 — 사회진흥과
 - 1읍면1특화사업(메주가공공장) ————— 산업과
 - 무이~상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 건설과
 -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지구 기반시설 ————— 도시과
확충사업
 - 장평오수처리장 시설사업 ————— 환경보호과
 - 이승복 청소년야영장 ————— 사회진흥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재 산 지 구 받 기 반 정 비 사 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 설 과
- 위 치 : 용 평 읍 · 면 재 산 리
- 사업규모 : 45ha
- 사 업 비 : 930,000 천원 (총사업비 : 930,000 천원)
 - 국 비 : 613,000 도 비 : 158,500 군 비 : 158,500
- 시행기간 : '95. 11. 6 ~ '96. 7. 3
- 현 공 정 : 6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 약 금 액(천원)
'95. 10. 10	'95. 10. 24	'95. 10. 31	공개경쟁	526,297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11. 6	'96. 7. 3	-	-	-	(주) 영 진	농진공리 감리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동절기 공사기간을 포함 하였으나 결빙으로 공사가 불가 하였으며 급경사 지역은 3 m이상의 레미콘 운반이 불가한바 공사기간 부족 —공사기간 판단후 연기 검토계획

저온저장고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 속사리
- 사업규모 : 저온저장고 2동 200 평
- 사업비 : 443,356 천원
 - 국비 : 264,951 도비 : 56,775 군비 : 33,586 자부담 : 88,044
- 시행기간 : '96. 11. ~ '96. 3. 31
- 현 공 정 : 95%
- 사업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0. 31	-	'95. 10. 31	위탁사업시행	355,312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내역		
'95.11.1	'96. 3. 31	-	-	-	계방산영농조합법인 중무산영농조합법인	임 광 수

□ 문제점 및 대책

- 전기시설공사부분이 시공상 설계도와 시공 불일치 ⇒ 보완시공 지시 ('96. 5. 8)

무이 - 상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치 : 진부면 척천리 ~ 용평면 도사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1.3Km(B = 8.0m), 교량가설 L = 27m(B = 9.0m)
- 사업비 : 1,031,305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721,914 도비 : 군비 : 309,391
- 시행기간 : '96. 5 ~ '96. 12. 31
- 현공정 : -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천원)
'96. 4. 15	'96. 5. 22	-	공개 경쟁	-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5. 25	'96. 12. 31	-	-	-	-	-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 습 -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물안골)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655m, B = 6 ~ 8m
- 사 업 비 : 178,000천원(총사업비 : 191,709천원)
 - 국 비 : 178,000 군 비 : 13,709
- 시행기간 : '95. 10. 4 ~ '96. 5. 27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5. 9.	'95. 10. 6	'95.10.14	일반 경쟁	138,247

착공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10.15	96. 5.27	'96. 5.7	14,089	152,336	신진건설	토목 7급 고준태

※설계변경사유 : 당초 '95 개량건축 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상·하수도) 계획이었으나 인근 기존주택에 대하여도 시설 확대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농촌오수처리시설사업

사업개요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용평면
- 위 치 : 용평면 장평리
- 사업규모 : 오수처리시설 1식(250m³/일)
- 사업비 : 297,500천원(총사업비 297,500천원)
 - 국비 : 도비 : 135 군비 : 162.5
- 시행기간 : '95. 6. 8 ~ '95. 11. 30
- 현 공 정 : 100%(완료)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5. 12	'95. 5.26	'95. 6. 3	제한경쟁	190,784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 감액	변경금액		
'95. 6. 8	'95.11.30	'95.9.30	38,729	229,514	장풍건설 (주) 권태진	지방토목 주사보 남궁경

※설계변경사유 : 판로매설지역의 암석제거 및 판로재질 변경

문제점 및 대책

- 오수와 우수의 분리차집시설이 없으므로 우기시 우수다량유입으로 처리능력 저하
- 향후 우수와 오수 분리 차집시설 설치계획

백옥포 간이상수도 신설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 2리
- 사업규모 : 배수지 1지(40T/D), 송배수관로 L = 2.06Km
- 사 업 비 : 76,400천원(총사업비 : 76,400천원)
 - 균 비 : 76,400
- 시행기간 : '96. 5. 13 ~ '96. 8. 11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6. 4. 2	'96. 5. 1	'96. 5. 8	일반경쟁	54,576

착공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5.13	'96.8.11				원웅건설 김홍주	토목 7급 고준태

□ 문제점 및 대책

- 관로매설구간내 농작물 파종으로 배수지 및 관로일부를 시설하고 공사 중지
- 농작물 수확(10월경)후 재착수하여 완공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오지개발사업(용평지구)저온저장고 시설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사업개요

○ 위치 : 용평면 백옥포, 속사리

○ 사업비 : 335,312천원(국비 264,951, 도비 56,775, 군비 33,586)

○ 사업기간 : '95. 11 ~ '96. 3. 31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산권문제(소유권) 등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요구됨.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물 소유는 군수, 관리 운영은 부영농조합법인에 위탁 · 상임대표록 위탁 관리 협약체결	· 현재 건축물대장기록 등재 신청중으로 건축물대장등재완료후 부동산보존등기 신청중	추진중
나. 시설소유권 및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인해 건물의 하자발생에 대한 피해배상책임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운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공정 95%로 공사 완료후 준공처리시 하자 보증금 예치		추진중
다. 향후 동시설과 같은 생산기반시설의 관리권이 지역농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행은 방안이 필요 있음.	· 시설완료후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관리 운영 계약체결하여 사용및 관리시설 소유권은 군수명의로 유지 추진중		추진중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1읍면 1특화사업 (메주가공공장)

□ 시행부서 :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 사업개요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 1리

○ 사업비 : 83백만원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43)

○ 사업기간 : '96. 11. 6 ~ '95. 12. 15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동절기 이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 지역내서 생산된 원료 전량이 매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 소득기반시설의 기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강구 필요</p>	<p>농지전용에 따른 도로 점용협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전량 매입하여 가공처리를 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계획임</p>	<p>· 준공일:95. 12. 15 · 메주생산량:7 M/T</p>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무이 ~ 상진부간 군도 확·포장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 사업비 : 1,947,661천원

○ 사업기간 : '95. 6. 15 ~ '96. 9. 28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p>·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미약한바 내년 마무리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강구 시행</p>	<p>· 년내에 교량가설및 도로구간 선택층까지 포설하여 공정을 높일 계획이며 절대공기가 360일로 '96이월하여 상반기 이전 준공할 계획임.</p>	<p>· 사업관련 각종허가및 '95년도에 구조물 시공 완료후 96년도 사고이월하여 교량및 도로시공중에 있음</p> <p>· 계약상 절대공기부족으로 상반기 이전에는 준공이 어려우나 시공의 완박을 기하여 95. 8월 이전 준공할 계획임.</p>	<p>· 완결</p>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지구 기반시설확충사업

□ 시행부서 : 도시과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물안골)

○사업비 : 191,709천원

○사업기간 : '95. 10 4 ~ '96. 5. 27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현재까지 사업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내년사업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조기착공으로 내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대책이 필요함	원주소재 신진건설과 '95. 12월 8일 계약하여 12월말 까지 60%의 공정에서 사고이월후 '96.4.22 재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음	○준공예정: '96.5.27	추진중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장평오수처리장시설 사업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 사업개요

○ 위 치 : 용평면 장평리 322-1번지

○ 사업비 : 297,500천원

○ 사업기간 : '95. 6. 8 ~ '95. 11. 30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가. 오수처리장의 위치가 하천변으로 장마시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마무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임.</p>	<p>○ 오수처리장이 위치한 하천변에 '95수해복구제방공사 시행으로 장마시 수해피해를 방지함.</p> <p>- 위 치 : 장평리(준용하천)</p> <p>- 예산액 : 30백만원</p> <p>- 사업량 : 돌망태(150M)</p>	<p>○ 수해복구제방공사</p> <p>- 위 치 : 장평리(준용하천)</p> <p>- 예산액 : 30백만원</p> <p>- 사업량 : 돌망태(150M)</p> <p>- 사업기간 : '96.4.8~7.6</p> <p>- 진 도 : 성토완료 공정45%</p>
<p>나. 금후 오수처리장 설치시 오염발생이 높은 지역을 다각도로 조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후 년차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하여 지역편중 의식 해소와 계획성 있는 사업시행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p>	<p>○ 평창강 발원지인 오염원인 '96창동지구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를 강원도와 협의 중이나 차집관로의 미설치로 사업확정 불투명, 향후 하수도 및 오수차집 관로가 완벽한 지구 우선 선정 시행계획임.</p>	<p>○ '96선정 시행사업</p> <p>- 봉평오수처리시설</p> <p>· 규모 : 300m³/일</p> <p>· 예산액 : 300백만원</p> <p>· 추진공정 : 설계의뢰중</p> <p>- 동산리오수처리시설</p> <p>· 규모 : 200m³/일</p> <p>· 예산액 : 300백만원</p> <p>· 추진공정 : 설계의뢰중</p>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이승복청소년야영장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사업개요

○ 위치 : 용평면 노동리 75번지 일원

○ 사업비 : 189백만원 (도비)

○ 사업기간 : '83. 11. 9 ~ 84. 7. 30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이승복청소년야영장의 관리대책이 군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강원도에 건의하여 마을 주민간에 야영장 관리 위탁계약을 '96년도에 체결하여, 마을에서 이용자에게 일정금액의 청소비등 징수 운영할 계획	· 군에서는 강원도에 야영장관리에 대하여 마을에 위탁관리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현재 사업중인 야영장시설공사 완료('96. 6. 5 준공예정) 후 강원도교육청과 위탁 관리 계약체결예정임.	추진 중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진 부 면

목 차

- 상월오개리임도피해복구공사 ————— 산 립 과
- 다가구주택 및 식당건축(척천리)사업 ——— 도 시 과
- 진부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 도 시 과
- 마평1리 수해복구공사 ————— 사회진흥과
- 거문리 수해복구사업 ————— 사회진흥과
- 호명리 수해복구사업 ————— 사회진흥과
- 상월오개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 진 부 면
- 하진부3리지구 수해복구사업 ————— 건 설 과
- 오대개발(토석채취)사업 현황 ————— 산 립 과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오대산관광호텔 신축공사 ————— 환경보호과
도 시 과
 - 석미A.P.T관련 주민여론대책 ————— 도 시 과
 - 평창연립주택신축공사(오폐수처리문제) 환경보호과
재 무 과
 - 송정택지 분양추진(문제점중심) ————— 도 시 과
 - 상월오개리 임도수해복구대책 ————— 산 립 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상월오개리임도피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시행 부서 : 산림과
- 위 치 : 진부면 상월오개리
- 사업 규모 : 산사태 - 3.94 ha , 임도유실 - 0.58 km
- 사업비 : 162,736 천원
 - ┌ 산사태 복구 : 134,281 천원 (국110,880 . 도53,202 . 군78,579)
 - └ 임도유실 복구 : 28,455 천원 (국33,851 . 도41,700)
- 시행 기간 :
 - ┌ 산사태 — '96. 5. 1. ~ 5. 20.
 - └ 임도유실 — '96. 6. 1. ~ 8. 20.
- 현공정 :
 - ┌ 산사태 100 %
 - └ 임도유실 설계중
- 사업 추진 상황

공정별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산사태	'96. 2.	-	-	강원도 환경연구 소 직접 실행	134,281
임도유실	-	-	-	경 장 군	

작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 변경 내역 (천원)			도급 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 금액		
'96. 5. 1.	'96. 5. 20	-	-	-	강원도 환경연구 소 직접 실행	-
'96. 6. 1.	'96. 8. 20	-	-	-	-	-

다가구주택 및 식당건축(천천리)사업

□ 건축허가 개요

○ 건축 주 :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김석봉, 영화동 조효철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87 - 10, 87 - 3

○ 건축규모

- ┌ 87 - 10번지 : 음식점, 다가구주택 — 3층 493㎡(7가구)
- └ 87 - 3번지 : 음식점, 다가구주택 — 3층 494㎡(8가구)

○ 허가 일

- 농지전용허가 : '95. 8. 11, '95. 9. 6
- 건축허가 : '95. 9. 12, '96. 2. 27

○ 건축기간 : '95. 9. 15 ~ '96. 9. 30

진부상수도 시설확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일원
- 사업규모 : 상수도시설확장 Q = 4,000T/D(총규모 Q = 9,500T/D)
- 사 업 비 : 2,500,000천원(총사업비 : 7,230,000천원)
 - 국 비 : 1,250,000 도 비 : 1,250,000
- 시행기간 : '95. 6. 21 ~ '96. 6. 23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5. 5. 8	'95. 6. 16	'95. 6. 21	일반경쟁	1,641,612

착 공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 무 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26	96. 6.23	'95. 12. 15	182388	1,824000	명일건설 이 숙 자	토목 7급 고 준 태

※설계변경사유 : 사업비 부족으로 미계상된 송·배수관로에 대하여
설계변경 추가시행 및 입찰차액(국비)의 전액사용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마평1리 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 위 치 : 진부면 마평1리
- . 사업규모 : 석축 204m, 돌망태 64m
- . 사업비 : 47,2626 천원
 - 국비 : 22,6851 도비: 4,726 군비: 19,851
- . 시행기간 : '96. 4. 2 ~ '96. 7. 3
- . 현 공 정 : 90%
- . 사업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5	-	'96. 4. 2	수의계약	37,760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내역		
'96. 4. 5	'96. 7. 3	-	-	-	석청건설	김 만 중

□. 문제점 및 대책

거문리 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 위 치 : 진부면 거문리
- . 사업규모 : 석축 711m , 배수관 12.5m
- . 사업비 : 122,718 천원
 - 국비 : 58,904 도비 : 12,271 군비 : 51,543
- . 시행기간 : '96. 3. 12 ~ '96. 7. 18
- . 현 공 정 : 20%
- . 사업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1. 8	'96. 3. 6	'96. 3. 12	입찰	93,755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내역		
'96. 3. 21	'96. 7. 18	-	-	-	보명건설	김만중

□. 문제점 및 대책

호명리 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 위 치 : 진부면 호명리
- . 사업규모 : 석축 1,239m , 돌망태 678m , 압거 2개소
- . 사업비 : 212,189 천원
 - 국비 : 101,850 도비: 21,218 군비: 89,121
- . 시행기간 : '96. 3. 12 ~ '96. 7. 18
- . 현 공 정 : 20%
- . 사업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6. 1. 8	'96. 3. 5	'96. 3. 12	입찰	156,405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내역		
'96. 3. 21	'96. 7. 18	-	-	-	강원종합건설	김 만 중

□. 문제점 및 대책

상월오개2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진부면
- 위치 : 진부면 상월오개2리
- 사업규모 : 찰쌀기 L=720M (A=1,040㎡) , 돌망태 L=735M (A=2,205㎡)
 옹벽 L=10M, H=5.0M , 암거 (3.0×1.5×1련) L=5.0M
 농로포장 L=100M, B=4.0M
- 사업비 : 199,658천원
 - 국비 : 95,835,840원 도비 : 21,962,380원 군비 : 81,859,780원 자부담 :
- 시행기간 : 150일
- 현공정 : 60%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11. 27	95. 12. 6	95. 12. 12	경쟁입찰	159,110

작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3. 20	96. 8. 12				원주 일산264-5 구산건영(주) 정영귀	김태남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하진부3지구수해복구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진부읍·면 하진부3리
- 사업규모 : 취입보 71.8m, 도수로 80m, 어도 22m, 옹벽 13m
- 사업비 : 152,797 천원 (총사업비 : 152,797 천원)
 - 국 비 : 111,542 지방비 : 41,255
- 시행기간 : '95. 12. 23 ~ '96. 9. 27
- 현 공 정 : 6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천원)
'95. 12. 2	'95. 12. 17	'95. 12. 20	공개경쟁	99,392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입 채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12. 23	'96. 9. 27	-	-	-	동해산업건설 (주)	토목서기 최창정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오대 개발(토석채취)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림과

○ 위치 : 진부면 하진부리 산 478번지외 5필지

○ 허가사항

토석종류	--	화강암
면적	--	54,357㎡
수량	--	1,325,640㎥

○ 허가기간 : '95. 2. 11 ~ '97. 12. 31

○ 사업추진현황

-- 현재 레미콘용 채석 작업중으로 추후 중간복구 대상지를 조사하여
중간복구 명령 계획임.

□ 문제점 및 대책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사업명 : 오대산관광호텔 신축공사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가. 오대산관광호텔 신축후 호텔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처리문제는 주민들의 큰관심 사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필요 함.</p>	<p>○ 오수정화시설 준공까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을 완벽하게 시공 토록하여 오수처리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p>	<p>○ 동 지역은 상수원상류지역 으로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시 일반적 처리시설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여과시설 설치 를 하기로 하였는바, 현재까지 점검결과 신고 사항대로 설치 중에 있음.</p>
<p>나. 현재 설계상 오·폐수방류 지점이 광역상수도 취수지점 5.5km상류에 위치하여 갈수기 시 상수도 집수장에 많은 오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 류지점을 취수지점 하류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기업체와 협의 시행할 필요가 있음.</p>	<p>○ 현재 오수방류 지점이 광역 상수도 취수지점 상류에 위치 할 계획이나 방류지점을 취수 지점 하류까지 연결하는 방 안을 기업체와 적극 협의 검토 계획임.</p>	<p>· 처리방법 : 접촉산화 + 활성탄 및 모래여과 · 처리대상인원 : 4,000인 · 처리용량 : 850m³</p>
<p>다 오·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지역 주민에게 경미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특약 조건을 붙이는 등 관련 부서간 종합적인 방지 대책 강구가 필요함.</p>	<p>○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것“ 을 조건으로 제시 할 계획임.</p>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오대산 관광호텔 신축공사

□ 사업자 : 시대종합건설(주) 이장섭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21 - 1외 8필지

○사업비 : 33,000,000천원

○사업기간 : '94. 7. 1 ~ '95. 11. 25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현재 설계상 오·폐수 방류 지점이 광역상수도 취수지점 약 5.5Km상류에 위치하여 갈수기시 상수도집수정에 많은 오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류지점을 취수지점 하류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기업체와 협의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갈수기시 상수도 집수장에 많은 오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류수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기업체와 협의시행	오대산 관광호텔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방류기준(30PPM)보다 처리시설을 보강하여 BOD를 8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토록 환경지도감독 계획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석미아파트관련 주민 여론에 대한 대책

□ 사업자 : 세경개발(주) 심 광 일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사업비 : 7,669,429천원

○사업기간 : '94. 4 ~ '95. 11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사용검사('95.9. 30)일 전인 '95.9.23 설계를 변경, 당초 용벽으로 계획된 25m 구간을 잔디로 사면처리하여 사용검사를 필하므로써 우기시 벽면 붕괴 및 토사유출로 지반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임대아파트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석미건설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사면처리된 25m 구간을 비롯한 타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할시 시설의 보완등 조치계획	'95. 9 준공후 현재 까지 특이사항 없음	추진중
놀이터시설 앞면 사면처리 대책강구가 필요함	사업주체로 하여금 안전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계획	'95. 9 준공후 현재 까지 특이사항 없음	추진중
건물하자보수와 관련 다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파악 지역주민 대표와 행정기관이 협의회를 개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여주기 바람	사업주체인 석미건설에서 아파트관리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며 입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계획	'95. 9 준공후 현재 까지 특이사항 없음	추진중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평창연립주택 신축공사(오·폐수처리문제)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가. 오·폐수 방류지점이 상수원 상류인점을 고려 처리시설의 설치 및 방류수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됨.</p> <p>나. 동 시설의 규모 형태를 면밀히 검토 세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인근 지역의 훼손사항을 파악 환경훼손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음. (오·폐수 정화시설, 산림훼손 등)</p>	<p>○ 오수정화시설 방류지점이 상수원 상류인 지점을 감안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고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 임.</p>	<p>○ 동 지역은 상수원상류지역으로 현재의 오수정화시설 설치 신고된 사항으로는 현격한 오염물질 처리가 불확실할 것으로 감안되어, 동시설의 준공검사시 부대시설인 활성탄 및 모래여과시설을 추가설치 토록 협의할 계획임.</p> <p>· 처리방법 : 접촉산화법 · 처리대상인원 : 100인 · 처리용량 : 20m³</p>

'95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처리결과

사업명 : 평창연립주택 신축공사 오·폐수처리 문제

시행부서 : 재무과(부과계)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비 :

○ 사업기간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가.동시설의 규모형태 를 면밀히 검토 세 원조사에 철저를 기할것	○연립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세에 대 한 지방세 부과누락이 없도록 '96법인세무조 사계획에 포함시켜 면 밀히 조사토록 할 예 정임.	○건물 미준공으로 준공시 까지 조사유예 중 ○건물 준공후 공사도급 계약서등 징구하여 과세 누락이 없도록 조치예정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송정택지분양 추진(문제점 중심)

□ 시행부서 : 도시과

□ 사업개요

○위 치 : 진부면 송정리

○사업비 : 5,422,000천원

○사업기간 : '91 ~ '94. 12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95 당초 송정택지개발 분양 수익금을 1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현재 5억원 미만의 수입으로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분양대책 강구가 요구됨	진부우회도로 보상과 관련하여 이주민이 송정택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 계획	604,458,489원을 징수 결정하여 583,258,604원 징수	추진중
송정택지 분양자(라석준외8)에 대한 등기절차를 지연 재산권행사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95.11월 부터 개별 등기 실시하여 민원 해소	○개별등기 완료	완 료
향후 잔여토지의 매각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분양대책을 수립 관, 민이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음	관내 각기관 및 서울 재평향우회등에 분양홍보 팸플렛 발송 및 지속적인 홍보 계획	반상회보게재 2회 및 홍보전단 발송(500매)	추진중

'95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처리결과

□ 사업명 : 상월오개리 임도 수해복구 대책

□ 시행부서 : 산림과

□ 사업개요

- 위치 :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 사업비 :
- 가업기간 :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고
<p>가. '93년 수해복구 후 '95년 또다시 수해피해가 발생된것은 수해복구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재복구 시에는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수립 재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바람.</p>	<p>'93년도 수해복구지가 또 다시 피해 발생된 곳은 '95년도 피해지 18개소중 2개소가 있으며 이곳은 복구지 인근에 피해가 생기면서 연이어 발생된 것이며, 금년도 복구계획은 임도 부분은 산림과에서 산사태 주관 복구하게되며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있음 피해발생지외에 피해예상 위험지구에도 예방을 위하여 '95. 7. 11.사방대상지면적 13.5ha를 강원도에 보고하여 도에서 '96 예산계획 반영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상월오개리 임도 수해복구 상황 - 규모 : 산사태 3.94ha 임도유실 0.58km - 사업비 : 66,300 천원 - 추진 상황 · 산사태 수해복구 완료 · 임도유실은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현재 복구설계서 검토중. 	<p>완료</p> <p>추진중</p>
<p>나. 금년 발생된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금후 인재로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피해지 복구 사업비는 모두 책정되어 설계중으로 전면복구 완료 되겠으나 농작물 피해지 보상에 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상 보상지급 규정이 없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상 보상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불가하며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p>다. 임도 대부분 구간의 지반이 처저 붕괴위험에 있는바 관내 전임도에 대한 위험지구를 일제조사 산사태등 위험지구 경비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p> <p>라. 측구 및 배수로 관리 소홀로 인해 우수가 노면을 범람 도로지반이 붕괴되므로 전임도에 대해 일제히 측구 및 배수로 정비, 도로 침수로 인한 붕괴 및 산사태를 방지하고 경사지에는 목초 또는 나무를 식재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일제 보수가 필요</p>	<p>보상 불가하며 피해 주민(이장)들에게 국가상대 보상청구소송 방법외에 대책이 없음을 의견 전달 하였음.</p> <p>'85 ~ '93 까지 임도시설지 총 57.5km중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는 조사 결과 13.5ha로 '95. 7. 11 강원도에 보고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96 예산 반영 추진중에 있음.</p> <p>매년 임도시설 보수비가 배정되고 있으나 시설량에 비하여 매년 2 ~ 3 km정도 임도로 우선 보수지역부터 정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수 물량 증배 요청하고 있음.</p>	<p>- 국도비 포함 223,071천원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야개사방 2km를 추가에 실행토록 계획되어 있음</p> <p>○ 피해예산 위험지구에 대한 '97 기설임도 집중 보수계획 수립도 보고</p> <p>- 공정 : 석축 3,100m 외 4종</p> <p>- 금액 : 1,241,074 천원</p> <p>* '97 사업추진 예정</p> <p>○ '96 임도 보수 물량</p> <p>- 사업량 : 10 km</p> <p>- 사업비 : 39,040 천원</p> <p>* 우선실행 대상지 조사중에 있음.</p> <p>* 당초 7 km 였으나 사업 물량 증가 하였으며 '97년부터는 임도보수에 집중 치중코자 함.</p>	

— 96 년 도 상 반 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도 암 면

목 차

- 도암면청사 신축사업 ————— 재 무 과
- 국제트렌스 산림훼손 복구추진상황 ——— 산 립 과
- 황계7리 수해복구 교량가설사업 ————— 도 시 과
- 황계11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 도 시 과
- '96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 산 업 과
- '95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 산 업 과
- '95 소규모 시설사업(용산1리) ————— 도 암 면
-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추진사항
 - 도암면 청사신축공사 ————— 재 무 과
 - 판두교 가설공사 ————— 건 설 과
 - 차항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건 설 과
 - 황계수해주택 이주 기반조성사업 ——— 도 시 과
 - 병내리 유리온실 운영실태 ————— 산 업 과
 - 수하리 군도정비실태 ————— 건 설 과
 - 국제트렌스 산림훼손 복구 ————— 산 립 과
- '95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 관내기업유치 실태

도암면청사 신축사업

□ 사업개요

- 이행부서 : 재 무 과
- 위 치 : 도암면 횡계리 335번지
- 사업규모 : 2,028 m² (613평 : 지하 1층, 지상 2층)
- 사 업 비 : 1,884,000 천원
 — 국비 : — 도비 : — 군비 : 1,884,000천원 — 자부담 :
- 시행기간 : '95. ~ '96.
- 현 공 경 : 3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4. 3	'95. 6. 15	'95. 6. 21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1,512,950 ○ 전기: 72,905 ○ 통신: 30,00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 계 변 경 내 역 (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6. 26	96. 11. 16	'96. 4. 23	158,760	2042,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소방 토목: 한광 ○ 전기 : 강원전기 ○ 통신 : 제일통신 	이병식 김남규 박상호 최현일

※ 설계변경사유

- 도암소방관파출소 신설계획으로 지하층 소방차고 및 사무실을 복지회관식당 및 다용도 창고로 변경
- 지하 용출수 과다 및 결빙이 심한지역임을 감안 지하층 옹벽 두께 20cm를 30cm로 변경
- 1층민원실의 A, B구분된 것을 통합, 2층 대회의실 민직 54명을 76명으로 변경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96. 5. 14일 지하층의 96년도 콘크리트 타설 대부분이 부실공사로 조사 판정 되었음
- 대 책 : '96. 5. 15일자로 '96콘크리트 타설부분 전체의 부실부분 철거후 재시공 지시 조치 함.

국제 트랜스 산림 훼손 복구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림과
- 위치 : 도암면 횡계리 산 453번지의외 1필지
- 사업규모 : 27,826㎡
- 사업비 : 270,707천원 (총사업비: 천원)
 —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270,707천원
- 시행기간 : '95. 10. 25 ~ '96. .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95. 10. 19			춘천지점 영월지청	보증처리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10. 25	'95. 11. 30				동인건설 대표 소민석	지방임업주사 최혜규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횡계7리수해복구교량가설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도암면 횡계7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 = 43m, B = 9.5m
- 사업비 : 300,000천원(총사업비 : 300,000천원)
 - 국비 : 43,070 도비 : 10,132 군비 : 246,798
- 시행기간 : '96. 3. 28 ~ '96. 9. 23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6. 2. 13	'96. 3. 15	'96. 3. 22	일반 경쟁	232,097

착공 일자	준공 (예)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3.28	96. 9.23	-	-	-	유성건설 최상길	토목7급 임현수

□ 문제점 및 대책

- 접속도로개설 필요
 - 상지학원 편입토지 협의중이나 보상비와 접속도로사업비 전무
- 사업비(토지보상 5억, 사업비 2억)2회추경 확보계획

횡계11리 진입도로확포장사업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
- 위 치 :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 = 515m, B = 12m
- 사업비 : 374,674천원(총사업비 : 500,000천원)
 - 도비 : 200,000 균비 : 300,000
- 시행기간 : '96. 4. 3 ~ '96. 10. 5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96. 2. 12	'96. 3. 18	'96. 4. 3	일반경쟁	317,997

착공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6.4. 9	'96.10.5	-	-	-	신화건설 권은동	토목7급 임현수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96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 업 과
- 위 치 : 도암면 용산 1리
- 사업규모 : 밭정지작업 8.79ha, 관수시설 2.1ha, 반출도로개설 0.13Km, 비가림재배시설 2.1ha, 망사육묘장 1개소
- 사 업 비 : 415,000천원 (총사업비 : 415,000천원)
 - 국 103,750, 도 31,125, 군 72,625, 자담 83,000, 융 124,500
- 시행기간 : '96. 3. 1 ~ 12. 20
- 현 공 정 : 35%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 약 방 법	세부사업금액 (천원)
'96. 3. 4		'96. 5. 3	큰터영농조합 법인 자력사업	밭정지작업 263,800, 비가림 시설 115,500, 망사육묘장 3,000, 관수시설 21,000 반출도로개설 11,7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3. 4	'96.11. 20					지방행정서기보 김 종 근

□ 문제점 및 대책

없 음

'95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 업 과
- 위 치 : 도암면 차항리
- 사업규모 : 유리온실 1,200평, 비닐파이프온실 10,830평,
암반관정 2공
- 사 업 비 : 1,572,000천원 (총사업비 : 1,572,000천원)
- 국비 393,000, 도비 117,900, 군비 275,100, 자부담 786,000
- 시행기간 : '95. 12 ~ '96. 12. 30
- 현 공 정 : 60%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 약 방 법	계약금액 (천원)
'95. 11. 24		'96. 3. 14	영농법인대표 수의계약	비닐온실 및 관정 1,092,000 천원 ※유리온실 480,000천원업체 선정중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실계변경내역 (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6. 4. 1	'96. 12. 30				비닐온실:두성농 건재 유리온실:미정	지방농업주사 전 오 규

□ 문제점 및 대책

없 음

'95 소규모시설사업(용산1) 현황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평창군 도암면
- 위치 : 도암면 용산 1리
- 사업규모 : 콘크리트포장 L = 600m, B = 5.0, T = 0.2
- 사업비 : 45,700천원 (총사업비 : 80,000천원) ※관급자재 - 34,30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80,000자부담 :
- 시행기간 : '95. 6. 20 ~ 9. 17
- 현공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95. 6. 2	'95. 6. 13	'95. 6. 20	경재입찰	38,72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실계변경내역(천원)			도금 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20	'95. 9. 17				진흥기 업 박보현	김남규

※ 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없음.

'95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처리결과

□ 사업명 : 도암면청사 신축공사

□ 시행부서 : 재무과(관재계)

□ 사업개요

○ 위치 : 도암면 황계리 335번지

○ 사업비 : 1,884,000천원

○ 사업기간 : '95. ~ '96.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가.공사현장 주변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민원인 및인근주민 안전사고가 우려되며,동절기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안전사고 표지판 설치 확충 -면사무소 진입로 입구 2개 -공사장 주변 4개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대책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11월말 이후 공사중지 명령조치 후 96년도 3월경공사재개	○안전사고 표지판 설치 확충 -면사무소 진입로 입구 2개 -공사장 주변 4개 ○'95.12.16일 공사중지 지시 ○'96.4.23일 공사재시공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판두교 가설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치 : 평창군 도암면 유천1리
- 사업비 : 199,672천원
- 사업기간 : '95. 6. 9 ~ '95. 11. 30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 지방도 및 고속도로 BOX구간까지 교량과 도로를 조정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	· 지방도에서 교량까지는 확·포장 시공계획이며 교량에서 BOX까지는 구배가 있으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처리계획에 의거 진입로는 아스콘으로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교량 이후 구간은 콘크리트로 확·포장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음. ○ 준공일 : '95. 11. 30	· 완결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차항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 사업비 : 562,262천원
- 사업기간 : '95. 5. 29 ~ '96. 6. 2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내 준공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동결기 이전 완료토록 특별대책이 요구됨. · 기초다짐등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지도 철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공기 240일로 공기상 '95년도에 준공이 어려우나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임. · 도로시공 단계별로 다짐장비로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에는 도로노상, 선택층, 보조가층에 대한 철저한 다짐후 아스콘 포장 완료하였음. · 현재 '96년도로 사고이월하여 부대공 시공중에 있으며 6. 2일까지 준공예정코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횡계수해주택이주 기반조성사업

□ 시행부서 : 도시과

□ 사업개요

○위 치 :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사업비 : 200,000천원

○사업기간 : '94. 9. 10 ~ '94. 12. 29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수해침수지역 거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관련 주민의 여론(이주에 따른 손실)을 적극수렴 반영하여 당해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않도록 하기바람 택지분양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주대상 주민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하는 홍보대책이 필요함 이주대상 가구에 대한 현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 이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주민홍보 사업추진세부계획 수립시 수해대책 강구 - 주택입주권 우선부여 - 기존 주택철거 보상	주민홍보실시 - '95. 11.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입주주민 부담경감을 위한 도시계획용도 지역 변경중(자연녹지→주거지역)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병내리 유리온실 운영실태

□ 시행부서 : 산업과 농산물유통계

□ 사업개요

○ 위치 : 도암면 병내리의 1개소 (유리온실 6,850평)

○ 사업비 : 3,862백만원 (국 965.5, 도 386.2, 군 579.3, 용 1,158.6, 자담 772.4)

○ 사업기간 : '94. 4. ~ '95. 12.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p>시설유지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를 관련자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 동절기 돌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등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원 체제를 강구하기 바람</p>	<p>월동기 온실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주 행정, 지도소 합동으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인 "지성"으로부터 전문기술인력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유리온실 8동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돌발사고 처리계획에 의거 시설물 수시 점검 결과 큰 문제점은 발생치 않았음 · 시설물중 취약부분인 스크린에 대하여 계속보완 및 수선을 하였음 · 백합, 장미를 동절기에 재배한 결과 작물피해는 없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시키고 있음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 사업명 : 수하리 군도정비 실태

□ 시행부서 : 건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 사업비 : 23,597천원
- 사업기간 : '95. 5. 20 ~ '96. 11. 23

□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 고
<p>· 수하리군도에 해빙기 낙석이 많이 발생되는바 조속한대책이 요구되며 수로원증원 배치 검토.</p>	<p>· 매년 낙석지역을 현지조사하여 낙석방지책 설치및 보수, 낙석제거등 정비하고 있으며 '95. 11월에는 방지망을 위험구간에 설치할 계획임.</p> <p>· 수로원 증원배치는 14개 전군도상에 배치가 안된 상태에서 본 구간에만 증원배치는 어려움이 있음.</p>	<p>· '95군도정비공사에 수하리 낙석위험구간 A = 2,492㎡를 시공하였음.</p> <p>· 매년 발생하는 낙석에 대하여는 수로원 및 군보유 종합장비로 제거하고 있으며 다량의 발생구간은 보수비를 특별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음</p>	<p>· 완결</p>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 결과

□사업명 : 국제트랜스 산림훼손 복구

□사업부서: 산림과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456번지의외 1필지
- 사업비 : 270,707천원
- 사업기간: '95. 10. 25 ~ '96. 5. 30.

□처리결과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처 리 결 과	비고
<p>수해복구 이후 복구기간이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현재까지 복구상태가 미흡,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년내 완벽히 마무리할수 있는 특별대책이 요망됨</p>	<p>○ '95. 10. 25 복구착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정리 : 18,000㎡ - 수로설치 : 250M - 기슭메기 : 73M - 풀씨파종 : 15,000㎡ - 코아넷트 : 1,100㎡ - 폐불임 : 1,500㎡ 완료 <p>○ '95. 11. 28 등질기로 공사중단</p> <p>○ '96. 4. 20 복구제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불임 : 1,500㎡ - 나무심기: 12,000본 - 기슭메기 : 12M - 풀씨파종 : 3,000㎡ <p>○ '96. 5. 4. 복구완료</p>	<p>○. '96. 5. 30일한 복구 준공검사 완료예정</p>	

'95수해복구공사추진현황

경 창 준

'95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군발주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발주처	시공사	계약 방법	사 업 비 (천 원)				추진 상황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1건				1,001,526	480,728	100,148	420,650	
· 방림 계촌6리 (수해복구공사) ('96. 3. 29 ~ '96. 6. 29)	석축 L=310m	사 회 진흥과	일광 건설	수의	41,900	20,112	4,190	17,598	85%
· 대화 대화6리 ('96. 4. 2 ~ '96. 7. 6)	석축 L=276m		(주)삼중	"	54,800	26,304	5,480	23,016	25%
· 대화 산2리 ('96. 3. 12 ~ '96. 7. 15)	석축 L=510m		정림 산업	입찰	122,542	58,820	12,254	51,468	25%
· 봉평 유포1,3리 ('96. 4. 3 ~ '96. 7. 3)	배수로 L=160m 포장 L= 40m 석축 L= 97m		동서 개발	수의	62,487	29,993	6,248	26,246	30%
· 용평 장평2리 ('96. 3. 13 ~ '96. 7. 15)	석축 L=650m		한동 건설	입찰	101,309	48,628	10,130	42,551	85%
· 용평 도사리 ('96. 3. 4 ~ '96. 7. 20)	석축 L=1,580m		신명 종합 건설	"	124,584	59,800	12,458	52,326	50%
· 진부 거문 상월 오개1리 ('96. 4. 3 ~ '96. 7. 2)	석축 L=211m 암거1 개소		석청 건설	수의	58,335	28,000	5,833	24,502	15%
· 진부 송정2리 ('96. 4. 8 ~ '96. 7. 8)	석축 L=359m		일광 건설	수의	53,400	25,632	5,340	22,428	100%
· 진부 마평1리 ('96. 4. 2 ~ '96. 7. 3)	돌망태 L=64m 석축 L=204m		석청 건설	"	47,262	22,685	4,726	19,851	90%
· 진부 호명리 ('96. 3. 12 ~ '96. 7. 18)	석축 L=1,239 돌망태 L=678m 암거 2개소		강원 종합 건설	입찰	212,189	101,850	21,218	89,121	20%
· 진부 거문리 ('96. 3. 12 ~ '96. 7. 18)	석축 L=711m 배수관 12.5m		보명 건설	입찰	122,718	58,904	12,271	51,543	20%

(음면발주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 업 비 (천 원)				추진 상황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40 건				1,933,519	928,083	193,345	812,091	
원당 본동 수해복구공사 (95.12.18 ~ 96. 6. 1)	옹벽 L = 7M 석축 L = 67M	평창읍	창영 건설	수의	15,800	7,584	1,580	6,636	95%
대상 음고거리 수해복구공사 (95.12. 8 ~ 96. 5.24)	포장 L = 35M 석축 L = 80M		선우 건설	수의	14,600	7,008	1,460	6,132	40%
조둔 고길 뒷덕 수해복구공사 (95.12. 8 ~ 96. 5.24)	옹벽 L = 15.5M 석축 L = 60M 흡관 20 본		삼광 건설	수의	20,100	9,648	2,010	8,442	95%
종부3리 새말촌 수해복구공사 (95.12.11 ~ 96. 5.26)	옹벽 L = 25M 석축 L = 46M 암거 L = 3M		창하 건설	수의	16,800	8,064	1,680	7,056	100%
뇌운 어두우니 수해복구공사 (95.12.18 ~ 96. 8.29)	옹벽 L = 170M		천우 산업	입찰	108,192	51,932	10,819	45,441	45%
회동1리 본동 수해복구공사 (95.12. 8 ~ 96. 6.14)	배수로 L = 80M	미탄면	매일 건설	수의	45,067	21,632	4,506	18,929	92%
청3리 회동1리 수해복구공사 (95.12. 7 ~ 96. 5.25)	옹벽 L = 24M 석축 L = 100M		(주) 신화	"	32,160	15,436	3,216	13,508	92%
방림 1.5리 수해복구공사 (95.12. 8 ~ 96. 6.10)	옹벽 L = 10M 석축 L = 145M	방림면	선우 건설	수의	25,600	12,288	2,560	10,752	30%
운교1리 목넘어 수해복구공사 (95.12. 8 ~ 96. 6.10)	옹벽 L = 20M 석축 L = 94M, 세일교 1식 소교량 (L=8M)		태창 건설	"	38,800	18,624	3,880	16,296	2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 (천원)				추진 상황
					계	국비	도비	군비	
· 운교 1리 ('95. 12. 8 ~ '96. 6. 10)	석축 L=163m 옹벽 L= 10m 포장 L= 68m	방림면	태창 건설	수의	30,900	14,832	3,090	12,978	20%
· 운교2리 가두둑 · 운교3리 사그네 ('96. 12. 8 ~ '96. 6. 10)	석축 L=177m 옹벽 L= 32m		선우 건설	수의	39,100	18,768	3,910	16,422	30%
· 하안미 1,2,6리 ('96. 4. 13 ~ '96. 6. 1)	석축 L=258m 옹벽 L= 16m	대화면	선우 건설	수의	48,900	23,472	4,890	20,538	50%
· 신 1,4리 대4리 ('96. 4. 13 ~ '96. 6. 1)	석축 L=208m 포장 L=100m 옹벽 L= 23m		신학 건설	"	49,300	23,664	4,930	20,706	45%
· 개수 1리 ('95. 12. 21 ~ '96. 5. 24)	석축 L=125m 옹벽 L= 15m 흡관 8본		남학 건설	"	37,320	17,913	3,732	15,675	50%
· 개수 1,2리 ('95. 12. 21 ~ '96. 5. 24)	암거 2개소 석축 L=125m		남학 건설	"	26,600	12,768	2,660	11,172	40%
· 평촌 1리 · 창동 1,4리 ('95. 12. 26 ~ '96. 5. 27)	옹벽 L=25m 석축 L=353m	봉평면	신아 건설	수의	59,027	28,332	5,902	24,793	50%
· 부이 1리 ('95. 12. 26 ~ '96. 5. 27)	암거 1 개소 옹벽 L= 35m 석축 L=261m		국천 건설	"	47,667	22,880	4,766	20,021	5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발주처	시공사	계약 방법	사업비 (천원)				추진 상황
					계	국비	도비	군비	
면은1,2리 ('95.12.26~ '96.5.27)	옹벽 L=20m 석축 L=188m		옥천 건설	수의	39,987	19,193	3,998	16,796	30%
속사 1,2리 수해복구공사 (95.12.13~ 96.5.30)	교각보수 2기 석축 L=127M	용평면	동서 개발	"	30,600	14,688	3,060	12,852	80%
이북정 1리 수해복구공사 (95.12.14~ 96.5.29)	옹벽 L=5M 석축 L=160M		신한 개발	"	29,200	14,016	2,920	12,264	50%
이북정 2리 수해복구공사 (95.12.13~ 96.5.30)	포장 L=60M 석축 L=130M 암거2개 옹벽 L=17M		광성 건설	"	69,000	33,120	6,900	28,980	80%
용전리 방덕골 수해복구공사 (95.12.12~ 96.7.30)	옹벽 L=60M 석축 L=478M		영동 종합 건설	"	73,600	35,328	7,360	30,912	70%
재산1리 참새골 수해복구공사 (95.12.11~ 96.7.25)	옹벽 L=40M 석축 L=84M 암거1개		동진 명실 건설	입찰	96,900	46,512	9,690	40,698	25%
재산3리 합복이 수해복구공사 (95.12.13~ 96.5.17)	석축 L=84M		창하 건설	수의	17,400	8,352	1,740	7,308	100%
백옥포1,2리 수해복구공사 (95.12.14~ 96.5.30)	암거 2개 석축 L=184M		영동 종합 건설	"	46,300	22,224	4,630	19,446	50%
상진부 1리 수해복구공사 (95.12.12~ 96.5.31)	암거 2개 석축 L=140M	진부면	백마 건설	수의	34,600	16,608	3,460	14,532	90%
수하마평 수해복구공사 (95.12.22~ 96.5.31)	암거 1개 석축 L=166M		백마 건설	"	41,333	19,839	4,133	17,361	7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 (천원)				추진 상황
					계	국비	도비	군비	
하진부 5리 수해복구공사 (95.12.20 ~ 96. 5.31)	암거 1개 돌망태 L = 80M		동양 건설	수의	29,098	13,967	2,909	12,222	100%
송정 2리 수해복구공사 (95.12.20 ~ 96. 5.31)	암거 1개 석축 L = 214M		동양 건설	"	38,719	18,585	3,871	16,263	90%
간평 1.2리 수해복구공사 (95.12.26 ~ 96. 5.31)	석축 L = 281M		석청 건설	"	36,353	17,449	3,635	15,269	100%
하진부 2,3리 수해복구공사 (95.12.26 ~ 96. 5.31)	석축 L = 237M		신라 건설	"	37,148	17,831	3,714	15,603	60%
상월 오개 2리 수해복구공사 (95.12. 6 ~ 96. 5.31)	옹벽 L = 10M 석축 L = 720M 암거 1개 돌망태 L = 735M 포장 L = 100M		구산 건설	입찰	199,658	95,835	19,965	83,858	60%
송정 1리 수해복구공사 (95.12. 6 ~ 96. 5.31)	포장 L = 43M 석축 L = 905M		덕영 건설	입찰	141,400	67,872	14,140	59,388	100%
수하리 수해복구공사 (95.12.12 ~ 96. 6.10)	돌망태 L = 33M 석축 L = 29M	도암면	신한 건설	수의	7,300	3,504	730	3,066	10%
차항 1리 수해복구공사 (95.12.11 ~ 96. 8. 9)	암거 4개 석축 L = 748M,		부원 건설	입찰	118,540	56,899	11,854	49,787	3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 (천원)				추진 상황
					계	국비	도비	군비	
· 차항2리 ('95. 12.12 ~ '96. 6.10)	세월교 1개소		신한 건설	수의	9,500	4,560	950	3,990	100%
· 용산1리 ('95. 12.11 ~ '96. 8.10)	석축 L=748m 암거 6개소		목원 건설	입찰	121,300	58,224	12,130	50,946	70%
· 용산2리 ('95.12.12 ~ '96.6.10)	석축 L=80m 암거 1개소		신한 건설	수의	14,850	7,128	1,485	6,237	40%
· 유천1,2,3리 ('95, 12.12 ~ '96.7.12)	석축 L=164m 암거 2개소		일산 건설	"	35,000	16,800	3,500	14,700	20%
· 병내리 병안 ('95. 12.12 ~ '96.6.12)	석축 L= 55m		일산 건설	"	9,800	4,704	980	4,116	10%

'95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읍면 별	사 입 명 (사업기간)	위 치	사업 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 (천원)				추진 상황
							계	국비	도비	군비	
봉평 읍 진부	산사태 수해 복구 ('96. 5. 1. ~ 5. 20.)	봉평 평촌	ha 0. 25	강원도 환경연 구소	강원도 환경연 구소	직영	242, 161	110, 880	53, 202	78, 579	완료
		봉평 장평	0. 33								
		봉평 도사	1. 49								
		진부 마평	0. 52								
		진부 상월오개	3. 94								
계	6. 53										
봉평 읍 진부	임도 호우피 해 복구	봉평떡거 평촌	km 0. 20	평창군	-	-	75, 551	33, 851	41, 700	현재 설계 중	
		봉평장평	0. 20								
		봉평도사	0. 35								
		진부 상월오개	0. 58								
		진부마평	0. 67								
계	2. 00										

'95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읍면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계	국비	지방비	
	계						394471	284019	110452	
방림면	계촌천수해복구 ('96. 3.20 ~ 8.16)	운교리	L = 795m 돌망태	방재계	구산건설영(주)	일반경쟁	142000	102240	39760	축제성토및조약돌채집
	계촌6리수해복구 ('96. 4. 6 ~ 6. 5)	계촌6리	L = 35m 옹벽	방재계	(합)태창	수의	21600	15552	6048	거푸집설치
	방림구포계수해복구 ('96. 4. 8 ~ 6. 6)	방림4리	L = 22m 옹벽	방재계	(합)태창	수의	18500	13320	5180	기초 con.c 타설완료
대화면	대화면수해복구 ('96. 4. 6 ~ 7. 5)	상안미3 하안미1	L = 153m 돌망태 축	방재계	(합)태창	수의	50100	36072	14028	물막이 및 토공축제조약돌채집운반
	대화6리수해복구 ('96. 4. 8 ~ 5.27)	대화6리	L = 110m 돌망태	방재계	창하건설	수의	17200	12384	4816	완공
용평면	용평면수해복구 ('96. 4. 8 ~ 7. 6)	장평리 백옥포리	L = 290m 돌망태	방재계	(주)삼중	수의	59500	42840	16680	제방축조및돌망태조립설치
진부면	진부면수해복구 ('96. 4. 8 ~ 6. 6)	송정1, 2 마평2	L = 95m 석축	방재계	(주)대양	수의	39200	28224	10976	석축시공
도암면	도암면수해복구 ('96. 4. 4 ~ 6.12)	유천2 황계2리	L = 277m 돌망태	방재계	(주)오성종합건설	수의	46371	33387	12984	성토 및 제방축조조약돌채집운반

'95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읍면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계	국비	지방비	
미탄	덧밭지구수해복구 (4. 8-5. 14)	창리	배수로 L=932m	건설과	(주)대광	수의	27,511	20,083	7,428	배수로완료 (100%)
방림	점말보수해복구 (3. 18~ 6. 15)	계촌 1	취입보 L=22m	건설과	화진 신설	수의	19,240	14,045	5,195	물받이큰크리트타설 (60%)
	계촌지구수해복구 (5. 14 ~ 8. 13)	계촌 6	도수로 L=	건설과	태건 창설	수의	13,217	9,648	3,569	덧자리정리 (95%)
대화	안미지구수해복구 (3. 23 ~ 6. 20)	상안미 3 하안 미5	도수로 L=31m 취입보 L=82m	건설과	창진 하설	수의	50,411	36,800	13,611	백일도수로미날보완료 구포신보 기초공사중 (70%)
	대화6리지구수해복구 (3. 22~ 6. 20)	대화 6	취입보 L=27m 도수로 L=13m 옹벽 L=15m	건설과	선건 우설	수의	32,532	23,748	8,784	완료 (100%)
	신리본동보수해복구 (3. 23~ 6. 20)	신리 1	취입보 L=27m 도수로 L=17m 옹벽 L=7m	건설과	태건 창설	수의	57,741	42,150	15,591	옹벽,도수로완료, 취입보 기초공사중 (60%)
용평	재산보수해복구(3. 23 ~ 6. 20)	재산리	취입보 L=59m	건설과	창진 하설	수의	51,581	37,654	13,927	덧자리정리 (95%)
	백옥포지구도수로수해복구 (3. 23~ 6. 20)	백옥포 1, 평 촌1리	평촌도수로 L=97m 새터도수로	건설과	선건 우설	수의	31,571	23,046	8,525	덧자리정리 (95%)
북평	평촌도수로	평촌 1	도수로 L=251m	건설과	화진 신설	수의	48,685	35,540	13,145	덧자리정리 (95%)

'95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읍면	사 업 명 (사업기간)	위 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 업 비(천원)			추진상황
							계	국 비	지방비	
봉평	원길지구수 해복구 (4. 3-7. 2)	원길 2 면은	도수로 L=250m 취입보 L=7m	건설과	석 건 청 설	수의	41,140	30,032	11,108	콘크리트타 설중 (80%)
진부	간평도수로 수해복구 (3. 25~ 6. 23)	간평 1	도수로 L=280m	건설과	신 건 한 설	수의	58,092	42,407	15,685	준 공 (100%)
	송정1지구 수해복구 (3. 25 ~ 6. 23)	송정 1 하진부 5리	도수로 L=92m 취입보 L=16m	건설과	선 건 우 설	수의	25,488	18,606	6,882	거푸집해제 (90%)
	송정2보 수 해복구 ('95. 12. 26 - '96. 9. 30)	송정 2	도수로 L=30m 취입보 L=100. 8m 어 도 L=22m	건설과	청 건 호 설	공개 경쟁	162601	118698	43,903	우안물받이 공사중 (70%)
	하진부3 지 구수해복구 ('95. 12. 23 - '96. 9. 27)	하진부 3리	취입보 L=71.8 m 도수로 L=80m 옹 벽 L=13m 어 도 L=22m	건설과	동해산 업건설	공개 경쟁	152797	111542	41,255	우안콘크리 트 타설중 (60%)
도암	유천도수로 수해복구 (3. 25~ 6. 23)	유천 1	도수로 L=105m	건설과	석 건 청 설	수의	56,186	41,015	15,171	뒀자리정리 (95%)

'95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읍면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계	도비	군비	
방림	방림-계촌- 둔내 ('95. 12. 21 - '96. 9. 5)	방림면 계촌리 일원	L=460m 석축 A=699㎡ 옹벽 L=90m 압거 L=15m	평창군	드림렌 드(주)	수의 계약	120458	91548	28910	석축 및 옹 벽시공
	계촌교 ('96. 3. 18- 9. 13)	계촌리	L=43m B=9. 0m 진입로 L=47m 호안공 A=378㎡	"	삼진중 합건설	경쟁 입찰	420000	310800	109200	교각설치및 호안공설치
대화	하안미-백 옥포 ('96. 4. 4- 8. 1)	대화면 봉평면 일원	L=132m 석축 A=185㎡ 옹벽 L=24m	"	선우건 설	수의 계약	45033	34225	10808	옹벽및석축 시공
	신5리 ('96. 4. 8- 8. 5)	대화면 신리	L=311m 석축 A=586㎡ 압거 L=7. 0m	"	태창건 설	"	53073	40335	12738	석축및압거 설치
	대화4리 ('96. 4. 8- 7. 6)	대화면 대화4 리	L=139m 석축 A=185㎡	"	화신건 설	"	10274	7808	2466	석축쌓기
봉평	유포-면은 ('96. 4. 6- 7. 4)	봉평면 유포리	L=50m 석축 A=320㎡ 옹벽 L=20m 횡배수 관 L=7. 5m	"	태창건 설	"	20982	15946	5036	석축및옹벽 쌓기
용평	도사리 ('96. 4. 15- 7. 13)	용평면 도사리	L=118m 석축 A=320㎡ 압거 L=6. 0m	"	태창건 설	"	34722	26389	8333	석축쌓기및 압거설치

읍면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계	도비	군비	
용평	금당-궁항	용평면 재산리	L=26m 석축 A=68㎡ 가비온 쌓기 =25㎡	평창군	선우건 설	수의 계약	27180	20657	6523	석축 및 가 비온쌓기
진부	거문-하진 부 ('96. 4. 6- 7. 4)	진부면 거문리 상월오 개리	L=155m 석축 A=384㎡	평창군	신라건 설	수의 계약	35779	27192	8587	석축시공중
	송정-호명 ('96. 4. 3- 7. 31)	진부면 송정리	L=142m 석축 A=442㎡ 옹벽 L=29m 암거 L=6. 0m	"	신한건 설	"	43258	32876	10382	석축및옹벽 설치
도암	유천-수하 ('95. 12. 21 '96. 8. 6)	도암면 유천리 일원	L=351m 석축 A=495㎡ 암거 L=9. 0m	"	성산건 설	경쟁 입찰	61032	46384	14648	석축및암거 설치
	차항리 ('96. 4. 3- 7. 2)	도암면 차항리 일원	L=52m 석축 A=69㎡	"	석청건 설	"	15980	12145	3835	석축설치중

'95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

읍면별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발주처	시공자	계약 방법	사업비 (천원)			추진 상황
							계	도비	군비	
봉평 용평 진부	산사태 수해 복구 ('96. 5. 1. ~ 5. 20.)	봉평평촌	0.25 ^{ha}	강원도 환경연구소	강원도 환경연구소	직영	78,579	-	78,579	완료
		용평장평	0.33							
		용평도사	1.49							
		진부마평	0.52							
		진부상월오개	3.94							
		계	6.53							
봉평	임도호우피해 복구	봉평떡거리평촌	0.20	평창군	-	-	75,551	-	75,551	현재 설계 중
		용평장평	0.20							
		용평도사	0.35							
		진부상월오개	0.58							
		진부마평	0.67							
		계	2.00							

관내기업유치실태

경 창 준

관내 기업유치 및 착수실태

총괄

(단위 : 업체)

업체수	업종별						공장설립상태	
	석재	토목	비료	플라스틱	생수	전자	사업개시	추진중
9	1	1	3	2	1	1	1	8

업체별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공장소재지 (건축면적)	공장 설립 고	공장등록 (사업개시)
		품목			
(주)석경플름	최문석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평창읍 마지리 416번지	'95. 7. 20	'96. 5.17
		수도관, 벤치 ·유형 플름	건축면적 1,160㎡		
	김재근	유기질비료 제조업	대화면 하안미리 1388번지	'95. 9. 21	추진중
		유기질비료	건축면적 1,650㎡		
(주)신호테크	이순욱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평창읍 주진리 516-2번지	'95. 10. 23	추진중
		공중전화, 은행신용카드	건축면적 1,402㎡		
동원산업(주)	오동빈	탄산음료 제조업	용평면 이목정리 553번지	'95. 10. 31	추진중
		생수	건축면적25,758㎡		
재산영농조합 법인	김영학	유기질비료 제조업	용평면 재산리 1443-1	'95. 11. 17	추진중
		유기질퇴비	건축면적 1,650㎡		

업 체 명	대표자	업 종	공장소재지 (건축면적)	공 설 장 신 고	공장등록 (사업개시)
		품 목			
대일수지	이대호	페플라스틱, 고무재생가공 처 리 업	진부면 송정리 1174번지	'95. 12. 4	추 진 중
		페비닐재생 원료	건축면적 233m'		
부림광진산업 (주)	강부필	석제품제조, 석회제조업	평창읍 입탄리 84번지	'95. 12. 18	추 진 중
		벌채,기둥,계 단용 대리석, 석산골재	건축면적 2,867m'		
(주)삼양사	김상용	플라스틱성형 용기제조업	봉평면 진조리 산139번지	'96. 2. 16	추 진 중
		P.E.T 병			
상월유기농업 작 목 반	이석래	유기질비료제 조업	진부면 상월오개 495번지	'96. 2. 21	추 진 중
		유기질 퇴비			